

☐ 09-2008-04

중 국 농 업 동 향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2008 겨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농업동향』은 중국 농업정책,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 등 중국농업 전반에 관한 최신 동향을 수집·분석하여 일반인, 농업종사자, 정책담당자 및 중국 농업 연구자들이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기별로 작성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동향자료는 1년에 4회, 봄, 여름, 가을, 겨울호로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동향자료는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중국농업정보”

담당자 및 내용문의: 전형진 hjchon@krei.re.kr

TEL 02-3299-4324 / FAX 02-959-6110

남민지 mj0801@krei.re.kr

TEL 02-3299-4359

목 차

I. 농업정책 브리핑

- 1. 4/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1
- 2. 농촌 토지제도 개혁 논의와 전망 16
- 3. 중국의 식량수급 동향과 식량안보 중장기 계획 34

II. 농업·농촌경제 동향

- 1. 가격 동향 49
- 2. 소득 동향 61
- 3. 향진기업 동향 63
- 4. 고추 및 마늘시장 동향 65
- 5. 중국의 쇠고기·닭고기 수급 및 가격 동향 71

III. 농정연구 이슈

- 농촌개혁 30년 회고와 전망 77

IV. 정책자료

- 1. 《국가 식량안보 중장기계획 요강(2008~2020)》 91
- 2. 《농촌개혁 발전 추진에 관한 몇 가지 중대 문제의 결정》 115

V. 농업통계 133

I. 농업정책 브리핑

1. 4/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1.1. 2009년도 농업·농촌정책 방향과 과제 제시

□ 중앙농촌공작회의(中央農村工作會議)¹

- 2008년 12월 27~28일 북경에서 개최된 중앙농촌공작회의에서 2009년도 농정방향과 중점 과제를 제시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공동명의로 “2009년 농업의 안정적 발전과 농민소득 증대를 촉진하기 위한 약간의 의견(中共中央, 國務院關於2009年促進農業穩定發展農民持續增收的若干意見(討論稿))”이 토론을 거쳐 확정되었음.
- 2007년 12월 개최된 중앙농촌공작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확정된 문건이 2008년 중앙1호문건으로 발표된 예가 있어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문건이 2009년도 중앙 1호문건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음.
- 2009년에도 삼농문제를 주제로 한 중앙1호문건이 발표되면 역사상 처음으로 6년 연속(2004~2009) 삼농문제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하는 것임.
- 회의에서는 2008년 식량 생산량이 역사상 최고치인 5억 2,850만 톤에 도달하여 지난 40년 동안 최초로 5년 연속(2004~2008) 증산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였음. 또한 농민 1인당 평균 소득은 4,700위안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함으로써 지난 20년 동안 최초로 5년 연속(2004~2008) 6% 이상의 실질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하였음.
- 회의에서는 ‘농업의 안정적 발전’과 ‘농민소득의 지속 증대’를 핵심 주제로 한 2009년도 4대 농정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¹ 중앙농촌공작회의는 매년 연말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최고위급이 참여하여 당해 연도 농업부문의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해의 농업정책 방향과 세부 실천 과제를 토의하고 확정하는 정책 논의 기구임.

 농업의 기초 강화, 농업 생산의 안정

- 각 지역의 식량안보 책임 강화, 주산지와 식량재배 농민의 생산적극성 유인, 식량 생산 증대를 위한 전략사업 추진
- 농업구조 조정 및 중요 작물의 비교우위지역 배치: 장강(長江) 유역 및 황회해(黃淮海)지역의 면화, 동북지역의 고품질 대두, 장강 유역의 유채 등
- 원예작물 생산의 집약화, 목축업과 수산업의 규모화 경영, 농업산업화 경영 촉진
- 농산물 품질안전 업무 강화, 농산물 생산의 표준화, 식품 가공유통기업의 품질안전 책임 강화,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 확립
- 농업인프라 건설 확대: 농지 조성, 수리시설 건설, 유통시설 건설, 생태환경 보호 시설 건설
- 농업현대화 촉진: 농업기계화 촉진, 농기계공업 육성 및 국내 수요 확대
- 농업기술 개발능력 제고, 현대적인 농산업 기술체계 구축, 농업기술 보급체계 구축, 농민들의 재배기술 및 사양(飼養)기술 수준 제고

 농민소득 증대

- 식량 최저수매가격 인상, 주요 농산물의 비축 확대, 농산물 수출입구조 조정, 농산물의 구매·판매·운송 업무 보장, 농산물 시장가격 안정
- 농업보조 규모 확대 및 개선: 식량직불제, 우량종자 보조, 농기구구입보조, 농자재 종합보조 규모 확대, 보조 방법의 개선
- 농외취업 기회 확대, 농민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실시,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 강화, 농촌 기초시설 건설 및 농촌 2, 3차 산업 발전을 통한 취업 확대
- 농민공 '판상차오'(返鄉潮, 귀향 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일 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도시와 농촌의 기초시설 건설 및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여 농민공들의 취업기회 확대. 대출 확대, 세비 감면, 컨설팅 등을 통해 고향으로 돌아 온 농민공들의 창업 지원
- 현(縣)급 지역 경제의 발전 지원 및 자주권 확대, 과학적인 산업발전 계획 수립, 향진기업 발전 촉진, 소성진(小城鎮, 소도시) 발전 촉진

 농촌 공공사업 확대, 농촌의 민주적 권리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

- 농촌 공공투자 사업 확대, 농촌 공공서비스체계 구축, 농촌 교육 및 의료·위생사업 강화, 농촌 사회보장체계 완성
- 물, 전기, 도로, 가스, 주택 등 5대 농촌 기초시설 건설 강화: 6,000만 농민의 식수문제 해결, 도시와 농촌의 전기 보급망 일체화, 중서부지역 도로 건설에 중앙 재정투자 확대, 농촌 메탄가스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농부산물의 활용 범위 확대, 농촌 정주시설 건설 촉진
- 농민 소비수준 제고: 전국 범위에서 농민들의 컬러TV, 냉장고, 핸드폰, 세탁기 등 지정된 가전 제품 구매시 보조를 실시하는 "가전하향(家電下鄉)"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보조 품목 확대, 기업의 농촌시장 개척 지원 및 농촌 소비환경 개선
- 농촌 빈곤퇴치사업 추진: 새로운 빈곤퇴치 표준 제정, 국가빈곤퇴치 전략 및 정책 집행체계 완성, 농촌지역의 빈곤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빈곤퇴치프로그램 실시

 농촌개혁 심화, 발전 잠재력 강화

- 토지도급경영제도의 안정 및 혁신: 토지도급 관계의 안정, 집단토지소유권의 권리 확정 및 등록, 증서 발급 업무 강화, 토지도급경영권 등록제도 시범 실시
- 토지도급경영권의 유동과 관련한 각각의 사항을 엄격히 집행하고, 건전한 토지도급경영권 유동시장 형성
- 엄격한 경지보호제도 및 절약용지제도(節約用地制度)를 제정하여 도시와 농촌의 건설용지 총면적을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최소 목표인 1억 2,000만 ha의 경지면적 유지
- 집단임지(林地)재산권제도 개혁의 전면적 추진, 농촌 종합개혁 심화
- 3년 내에 전국적으로 향(진) 단위 또는 지역성 농업기술 보급체계 완성, 동식물 전염병 예방 및 감시, 농산물 품질 관리감독 등 공공서비스기관의 역할 제고
- 농촌 금융개혁 추진: 농촌 투자자금 유입을 위한 인센티브 메카니즘 구축, 농업관련 대출의 세금 감면 및 비용 보조, 농촌 금융시장 진입장벽 완화, 신형 농촌금융기관 및 지역성 중소형은행 발전 촉진, 소액 신용대출 및 금융서비스 발전 촉진, 민간 금융의 규범화와 건강한 발전 유도

□ 전국농업공작회의(全國農業工作會議)²

○ 2008년 12월 27일 북경에서 개최된 전국농업공작회의(全國農業工作會議)에서는 2008년 농업부문 사업을 평가하고 11개의 2009년도 중점 추진업무를 제시하였음.

○ 2008년 농업부문의 성과

- 식량생산량이 5억 2,850만 톤으로 전년 대비 27만 톤 증가하여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40년 동안 최초로 5년 연속 증산 달성
- 식량작물의 ha 당 단수가 4.93톤으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7년에 비해 13.4kg 증가
- 유지작물의 생산 회복, 8년 연속 하락했던 식용 식물유의 자급률이 하락 추세에서 증가 추세로 전환
- 돼지고기 생산 회복 및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 채람자(菜籃子) 품목의 공급 안정
- 농업기계화 진전, 농업개발기업 및 향진기업의 발전, 동물 전염병 방역체계 개선, 농작물 병충해 발생 억제, 농산물 품질안전 수준 제고
- 농민 1인당 평균 소득이 전년 대비 8% 증가하여 5년 연속 증가 추세

○ 2009년도 중점 추진 업무

☞ **농업지원 정책(強農惠農政策) 지속 추진, 농민의 생산적극성 유인**

- 농업부문에 대한 중앙 재정투자 확대, 파종기 이전까지 100억 위안 규모의 농기구구입보조금 집행

☞ **농업인프라 건설 확대, 농업생산력 증대**

- 2009년 3월 이전까지 신규 농업투자 항목의 집행 완료
- 표준농지 건설, 신규 채람자(菜籃子)공정 실시, 초지 조성 및 보호, 농부산물의 활용범위 확대, 농촌 공공투자사업 확대 등 5대 항목에 집중 투자

2 전국농업공작회의는 매년 연말 농업부 주최로 당해 연도 농업부문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해의 농업정책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를 논의하는 회의임.

 식량생산의 안정적 발전, 국가 식량안보 보장

- 경지면적 유지·보호, 1억 720만 ha 수준의 식량 재배면적 유지, 단수 증대, 전국적으로 식량 5천만 톤 증산 계획 실시
- 고품질 식량산업프로젝트, 식물보호사업, 우량종자사업의 지속적 추진

 농업부문간 협조체계 구축, 농업발전 수준 향상

- 재배업: 대두 재배면적 안정, 67만 ha 수준의 유지작물 재배면적 유지, 면화 재배면적 안정, 채소과일차화훼 등 원예농산물의 시장 개척 및 생산구조조정, 품목별 생산의 지역 간 비교우위 실현
- 축산업: 표준화 및 규모화 사육 촉진, 우량종 육종 및 번식체계 구축, 낙농업의 규모화 생산 및 관리체계 구축, 초지 생태환경 보호 강화
- 대규모 국유 상품식량 생산기지 조성, 농업현대화 시범지역 및 농업기계화 시범 지역 조성 및 시범사업 실시

 농산물 품질안전 수준 제고

- 전국적으로 농산물 품질안전 정비 행동계획 실시, 농업표준화사업 적극 추진, 품질안전 관리감독 강화

 동물 전염병 예방감시, 농작물 병충해 방제 및 농업재해 예방 업무 강화

- 면역과 도살을 결합한 전염병 예방 및 감시체계 구축,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 업무 강화
- 밀, 쌀 등 주요 농작물의 병충해 방제 및 농업재해 예방 업무 강화

 농업기술 보급체계 개선

- 50개 품목에 대한 산업기술체계 구축, GMO농작물의 신품종 육종사업 전개
- 농업기술의 농가보급 업무 강화, 대농민 기술교육훈련 강화, 농업기술 인재 양성
-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 및 환경오염 방지

 농업정보화 및 시장서비스체계 구축, 생산과 유통 연계, 시장 개척

 농가토지도급경영체의 안정 및 혁신

 농업법제화 수준 제고

 농민소득원 개발 및 소득 증대

- 농산물 가격 안정, 농민 취업기회 확대, 농촌노동력의 도시 유출 촉진

- 농민공의 취업기회 확대 및 창업 지원, 주요 농가소득원인 향진기업과 농산물가공업의 발전 촉진, 농촌서비스업의 발전 촉진
- 내수확대 사업과 농민 소득증대 사업의 연계 강화

□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³

- 2008년 12월 8~10일 북경에서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에서는 5개 2009년도 경제정책 과제를 확정하였음. 이 중 ‘농업·농촌경제의 양호한 발전 추세 공고화, 농산물의 공급 보장, 농민소득 증대 촉진’을 두 번째 중요 과제로 제시하였음.⁴
 - 식량생산 증대 및 주요 농산물의 공급 보장,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 농가토지도급제의 안정 및 장기 불변, 토지도급경영권의 유동 시 토지집단소유의 성질 및 토지 용도 변경 금지, 토지도급경영권의 권리 침해 금지
 - 농민공 취업기회 확대, 농민소득 증대, 농촌노동력의 취업 경로 확대 및 농촌 내부 소득증대 공간 확대

1.2. 농촌개혁 30주년, 새로운 정책과제 제시

- 2008년은 중국이 1978년 중국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978.12.18~22)를 통해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한지 30주년이 되는 해임.
 -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지난 30년 동안의 개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개혁 방향을 재설정한다는 의미에서 2008년 10월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08.10.9~13; 이하 제17기 3중전회라 칭함)의 의의를 크게 부각하였음.

3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매년 연말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최고위급이 참여하여 당해 연도 경제전반의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해의 거시경제정책 방향을 토의하고 확정하는 논의 기구임.

4 5개 주요 과제는 ①거시경제 조정 강화, 재정정책과 화폐정책의 연계 ②농업·농촌경제의 양호한 발전 추세 공고화, 농산물의 공급 보장, 농민소득 증대 촉진, ③경제성장 방식의 전환,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 추진, ④개혁개방 심화, 과학발전체계 구축, ⑤사회안정 등임.

- 제17기 3중전회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여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그 해결을 중시하고 있는 삼농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명의를 ‘농촌개혁 발전 추진에 관한 몇 가지 중대 문제 결정(中共中央關於推進農村改革發展若干重大問題的決定)’⁵를 심의, 채택하였음.
- 중국의 경제발전과 성장은 농촌개혁이 시발점이었음. 개혁개방 이후 30년이 흐른 시점에서 다시금 농촌개혁을 중요 화두로 설정한 것은 사회문제로 부상한 삼농문제의 해결을 통한 재도약의 의지를 표방한 것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

◆ 《농촌개혁 발전 추진에 관한 몇 가지 중대 문제 결정》 주요 내용

□ 6대 기본 목표와 임무(2020년)

- 농촌 경제체제 발전 및 도농 경제사회 통합발전 체제 구축(도농 일체화)
- 농업현대화 촉진, 농업 생산능력 제고로 국가 식량안보 및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보장
- 2008년 대비 농민소득 2배 제고, 소비수준 향상, 절대빈곤 해소
- 농촌 기층조직 건설 강화, 촌민 자치제도 발전, 농민들의 민주적 권리 보장
- 도시와 농촌의 공공서비스 균등화, 농촌 문화사업 확대 및 농민들의 문화적 권리 향상, 교육기회 확대, 기본생활 보장 및 기본 의료·위생제도 개선, 농촌사회 관리 체계 완비
- 자원절약형, 환경친화형 농업생산체계 구축, 농촌 거주 및 생태 환경 개선, 지속 가능한 발전 추진

□ 농업제도 확립 6대 과제

- 농가토지도급경영제에 기반한 쌍층경영시스템의 안정 및 혁신
 - 토지도급경영권의 권리 보장 강화, 현행 토지도급제의 안정 및 장기 불변
- 농촌 토지관리제도의 규범화
 - 토지도급경영권 유동 관련 관리 및 서비스 강화, 토지도급경영권 유동시장 건립
 - 의법(依法)·자원(自願)·유상(有償)의 원칙에 의거하여 전환도급, 임대, 교환, 양도, 주식합작 등의 방법을 통한 토지도급경영권의 유동을 허용하고 다양한 방식의 규모화 경영 촉진

5 문건의 전문은 'IV. 정책자료 2' 참조

- 농업지원 및 보호제도 완성
 - 농촌 인프라 건설 및 공공사업에 대한 국가의 투자 확대, 경지점용세 수입의 농업부문 투자 비율 확대, 중서부지역 농촌 공공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 현대적인 농촌금융제도 확립
 - 농촌금융에 대한 정책 지원 강화, 자금원 확대, 재정 및 화폐정책의 종합적 운용
 - 세수감면, 비용보조 등으로 더욱 많은 신용대출 자금, 사회적 자금의 농촌 투입 유인
 - 조건을 갖춘 농민전업합작사의 신용업무 허용, 민간 금융의 규범화 및 발전 촉진
- 도농 경제사회 통합발전체제 구축(도농 일체화)
 - 농민공 권익 보호, 도시 거주 농민공의 임금, 자녀교육, 공공위생, 주택문제 등에서 도시민들과 동등하게 대우, 농민공의 노동조건 개선, 농민공의 상해·의료·양로 보험 등 사회보장 범위 확대
 - 호적제도 개혁 추진, 농민들의 중소 도시 정착 조건 완화하여 도시 취업 및 거주 농민들의 도시주민화 제약 요건 완화
- 농촌지역의 민주관리제도 완비
 - 농촌 종합개혁의 지속 추진, 2012년 까지 향진 조직개혁 완료하여 향진 정부의 사회관리 및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

□ 농업현대화, 농업 생산능력 제고 7대 과제

- 국가 식량안보 보장
- 농업구조 조정: 품목별 지역배치 계획 수립, 지역농업 발전 계획 수립, 비교우위에 입각한 농산업벨트 형성, 가공유통·저장·운송 시설 건설 및 비교우위산업 클러스터 형성
- 농업과학기술 개발 및 보급
- 농업인프라 건설 강화
- 신형 농업사회화 서비스체계 구축
-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 농산물 시장의 대외개방 확대

□ 농촌사회 발전 8대 과제

- 농촌 문화의 발전 촉진

- 농촌 교육사업의 발전 촉진
- 농촌 의료·위생사업의 발전 촉진
- 농촌 사회보장체계 완비
- 농촌 기초시설 건설 및 생태환경 보호 강화
- 농촌 빈곤퇴치사업 전개
- 농촌 재해예방 및 복구 능력 제고
- 농촌사회 관리 강화

1.3. 농촌소비 촉진, 가전하향(家電下鄉) 사업 확대 추진

- 중국은 2008년 12월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에서 세계경제 위기와 급속한 국내 경기 침체에 직면하여 2009년도 경제정책 목표를 ‘성장유지, 내수확대’로 설정하고 재정확대와 통화확대의 정책 기조를 채택하였음.
- 중국은 최근 까지도 경기과열 억제가 주요한 거시경제정책 기조였으나 2008년 하반기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세계경제 침체의 여파로 국내 경기가 위축되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추세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내수확대 중심의 경제성장 모델로 전환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2008년 12월 개최된 농촌공작회의에서 밝히고 있듯이 중국 정부는 내수확대의 가장 큰 잠재력이 농촌에 있다는 인식하에 농촌소비 확대를 위한 주요한 정책사업의 하나로 가전하향(家電下鄉)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가전하향 정책은 농민들의 구매력을 향상시키고 농촌지역의 소비확대를 통해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농민들이 정해진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일정 비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임.
- 중국 정부는 가전하향 정책의 전면적인 실시에 앞서 산둥성, 하남성, 사천성, 산둥성 청도시 등 4개 성 1개 시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2007.12.1~2008.12.31일 까지 시범 실시하였음.

- 시범사업 실시 결과 상품 판매량 350만 대, 판매액 50억 위안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전년 동기대비 가전제품 판매량이 40% 증가하였음.

◆ 가전하향(家電下鄉) 시범사업 개요

□ 사업 근거

- 《財政部關於開展家電下鄉試點工作的通知》(財建[2007]710號, 2007.11.15)
- 《財政部關於開展家電下鄉試點工作的通知》附件: 家電下鄉補貼資金管理暫行辦法
- 《商務部,財政部關於印發《家電下鄉試點工作實施方案》的通知》(商綜發[2007]472號, 2007.11.26)
- 《商務部,財政部關於印發《家電下鄉試點工作實施方案》的通知》附件: 家電下鄉試點工作實施方案
- 《商務部,財政部關於家電下鄉試點工作有關問題的通知》(商綜發[2008]27號, 2008.2.2)
- 《商務部,財政部關於繼續實施家電下鄉政策的通知》(財建[2008]325號, 2008.5.26)
- 《商務部,財政部關於印發《家電下鄉推廣工作方案》的通知》(財建[2008]680號, 2008.10.13)
- 《商務部,財政部關於印發《家電下鄉推廣工作方案》的通知》附件: 家電下鄉推廣工作方案
- 《商務部,財政部關於做好家電下鄉推廣工作有關問題的通知》(商綜發[2008]426號, 2008.10.23)
- 《財政部,商務部,工業和信息化部關於全國推廣家電下鄉工作的通知》(財建[2008]862號, 2008.11.28)
- 《商務部,財政部關於請推薦家電下鄉銷售企業的通知》(商綜發[2008]502號, 2008.12.16)

□ 대상 지역 및 사업 기간

- 산둥성, 하남성, 사천성, 산둥성 청도시
- 2007년 12월 1일~2008년 12월 31일(당초 사업기간은 2008년 5월 31일 까지였으나 《商務部,財政部關於繼續實施家電下鄉政策的通知》(財建[2008]325號, 2008.5.26)에 의거하여 연장)

□ 시범사업 내용

- 농민들의 구매력 향상과 농촌지역의 소비확대를 통한 내수 촉진을 위해 농민들이 정해진 가전제품을 구매 시 일정 비율의 보조금 지급

- 보조 방식 및 기준: 판매가격의 13% 직접 보조
- 재원: 중앙정부 재정 80%, 지방정부 재정 20%
- 보조 대상: 모든 농업호적 소유자. 단, 각 농가당 구매가능 수량은 2대 이하
- 보조 품목: 컬러TV(1,500위안 이하), 냉장고(2,000위안 이하), 핸드폰(1,000위안 이하)
- 판매 및 유통기업 자격 조건
 - 각 성에서 연간 가전제품 매출액이 5억 위안 이상
 - 자금과 신용 상태 양호
 - 각 성의 모든 현(시)까지 배송이 가능한 기업, 각 성의 모든 모든 현(시)까지 애프터서비스가 가능한 기업

- 시범지역에서 시범 실시 결과를 토대로 중국 정부는 시범지역을 포함하여 2008년 12월 1일부터 가전하향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음.

◆ 가전하향(家電下鄉) 사업 확대 실시 내용

□ 사업 근거

- 《商務部,財政部關於印發《家電下鄉推廣工作方案》的通知》(財建[2008]680號, 2008.10.13)
- 《商務部,財政部關於印發《家電下鄉推廣工作方案》的通知》附件: 家電下鄉推廣工作方案
- 《商務部,財政部關於做好家電下鄉推廣工作有關問題的通知》(商綜發[2008]426號, 2008.10.23)
- 《財政部,商務部,工業和信息化部關於全國推廣家電下鄉工作的通知》(財建[2008]862號, 2008.11.28)
- 《商務部,財政部關於請推薦家電下鄉銷售企業的通知》(商綜發[2008]502號, 2008.12.16)

□ 사업 내용의 변화

- 대상지역 및 기간(4년 통일)
 - 시범지역: 산둥성, 하남성, 사천성, 산둥성 청도시; 2007.12.1.~2011.11.30.

- 신규지역
 - 내몽고자치구, 요녕성, 요녕성 대련시, 흑룡강성, 안휘성, 호북성, 호남성, 광서장족 자치구, 중경시, 섬서성; 2008.12.1.~2012.11.30.
 - 길림성, 신강위그루자치구, 감숙성, 청해성, 영하회족자치구, 서장자치구, 북경시, 천진시, 하북성, 산서성, 상해시, 절강성, 강소성, 영파시, 북건성, 하문시, 해남성, 신강생산건설병단; 2009.2.1.~2013.1.31.
- 보조 대상: 모든 농업호적 소유자. 단, 각 농가당 구매가능 수량은 1대로 제한
- 보조 품목
 - 컬러TV(2,000위안 이하), 냉장고(2,500위안 이하), 핸드폰(1,000위안 이하), 세탁기 (2,000위안 이하)
 - 향후 농민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재정부, 상무부의 책임하에 상품의 종류 조정 가능
- 판매 및 유통기업 자격 조건
 - 각 성(자치구, 시)에서 연간 가전제품 매출액이 3억 위안 이상. 단, 서부지역은 3 억 위안 이하 가능
 - 원칙적으로 각 성(자치구, 시)의 모든 현(시)까지 배송이 가능한 기업, 각 성의 모 든 모든 현(시)까지 애프터서비스가 가능한 기업. 단, 신강위그루자치구, 청해성, 서장자치구는 50% 이상 가능)
- 가전하향 품목 및 판매점 표지



<가전하향 품목 표지>



<가전하향 품목 판매점 표지>

1.4. 4/4분기 주요 농업 법규 및 규칙(規章)⁶

□ 법규

- 《당면 농민공 업무를 잘할 데 대한 통지(國務院辦公廳關於切實做好當前農民工工作的通知)》; 국판발 國辦發[2008]130호; 2008.12.20.
- 《초지방화조례(草原防火條例)》; 국무원령 제542호; 2008.11.29.
- 《삼림방화조례(森林防火條例)》; 국무원령 제541호; 2008.12.1.
- 《낙농업 정비와 진흥 계획 요강(奶業整頓和振興規劃綱要)》; 국판발 國辦發[2008]122호; 2008.11.7.
 - 《낙농업의 지속 발전 촉진에 관한 통지(國務院關於促進奶業持續健康發展的意見)》(국발 國發[2007]31호)에 기초하여 본 요강 제정
- 《국가 식량안보 중장기 계획 요강(國家糧食安全中長期規劃綱要)》; 2008.11.13.
 - 'IV. 정책자료. 1' 전문 번역 참고
- 《농촌개혁 발전 추진에 관한 몇 가지 중대 문제 결정(中共中央關於推進農村改革發展若干重大問題的決定)》; 2008.10.12.
 - 'IV. 정책자료. 2' 전문 번역 참고
- 《유제품 품질안전 관리 감독 조례(乳品質量安全監督管理條例)》; 국무원령 536호; 2008.10.9.

□ 농업부 규칙(規章)

- 《동물 진료기관 관리방법(動物診療機構管理辦法)》; 농업부령 제19호; 2008.11.26.
- 《수의 관리 집행 방법(執業獸醫管理辦法)》; 농업부령 제18호; 2008.11.26.
- 《향촌 수의 관리 방법(鄉村獸醫管理辦法)》; 농업부령 제17호; 2008.11.26.
- 《신선 우유 생산수매 관리 방법(生鮮乳生產收購管理辦法)》; 농업부 ; 2008.11.7.
- 《신선 우유 구매·판매 계약 시범 양식(農業部, 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關於印發《生鮮乳購銷合同示范文本》的通知)》; 농업부 축산업국(畜牧業司); 2008.10.30.

6 2008년 4/4분기에 제정 또는 발표된 농업관련 주요 법규, 규칙 목록과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음.

- 《개간 농산물 품질 이력추적시스템 건설 항목 검수 방법(農墾農產品質量追溯系統建設項目驗收辦法(暫行))》; 농판간 農辦墾[2008]55호; 2008.10.29.
- 《농산물 원산지 증명 관리 규정(農產品產地證明管理規定(試行))》; 농판시 農辦市[2008]23호; 2008.6.19.

□ 기타 규칙(規章)

- 《유제품 및 우유 함유 식품에 대한 멜라민 검사 비용 문제의 규범화에 관한 통지(關於規範對乳品及含乳食品進行三聚氰胺檢測收費問題的通知)》;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질검 총국; 농개가격 農改價格[2008]3246호; 2008.12.1.
- 《2009년도 부분 농산물 수출 쿼터량 분배 방안(2009年度部分農產品出口配額分配方案)》; 상무부, 상무함 商貿函[2008]제132호; 2008.11.26.
- 《2009식품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임시 가격 통제조치의 해제(解除食品類商品及服務的臨時價格干預措施)》;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08.12.1.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명의의 《일부 중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임시 가격통제 조치 실행에 관한 실시 방법(國家發展改革委關於對部分重要商品及服務實行臨時價格干預措施的實施辦法)》(국가발전개혁위원회령 2008년 제58호)에서 규정한 식량 및 식량제품, 식물식용유, 돼지고기, 소고기 및 그 제품, 유제품, 계란 등 식품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 임시로 실시했던 가격통제 조치를 2008년 12월 1일부터 해제
- 《농업부문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 보조금 관리 집행 방법(秸稈能源化利用補助資金管理暫行辦法)》; 재정부, 재건 財建[2008]제735호; 2008.10.30.
 - 농업부문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고 바이오매스 에너지 상품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법(可再生能源法)》(2005.2.28), 《농작물 바이오매스의 종합적 이용 추진 가속화에 관한 의견(國務院辦公廳關於加快推進農作物秸稈綜合利用的意見)》(국판발 國辦發[2008]제105호), 《재생에너지 발전 전문 자금 관리 집행 방법(財政部關於印發《可再生能源發展專項資金管理暫行辦法》的通知)》(재건 財建[2006]제237호)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바이오매스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음.
 - 지원 자금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용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본 방법 제정
- 《2009년도 밀 최저수매가격 인상에 관한 통지(關於提高2009年小麥最低收購價格的通知)》; 국가발전개혁위원회·재정부·농업부·국가식량국·중국농업발전은행, 발개전 發改電[2008]제323호; 2008.10.19.

I. 농업정책 브리핑

- 2009년도 3등급 기준 흰 밀, 붉은 밀, 혼합 밀의 최저수매가격을 2008년 대비 톤 당 각각 200위안, 220위안, 220위안 인상한 1,740위안, 1,660위안, 1,660위안으로 확정
- 《전국 토지 이용 총계획 요강(全國土地利用總體規畫綱要2006~2020年)》; 국토자원부; 2008.10.24.

작성자: 전형진 hjchon@krei.re.kr

2. 농촌 토지제도 개혁 논의와 전망

2.1. 개요

- 2008년은 중국이 1978년 중국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978. 12.18~22)를 통해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한지 30주년이 되는 해임.
 -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지난 30년 동안의 개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개혁 방향을 재설정한다는 측면에서 2008년 한 해의 의미를 크게 부각하였음.
- 1978년 시작된 중국의 경제개혁은 집단농업경영시스템의 농가경영시스템으로의 전환(농가토지도급경영제의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농촌개혁이 시발점이었음.
 - 농가토지도급경영제는 토지제도 측면에서 보면 1950년대 농업집단화 이후 확립된 집단소유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개별 농가가 토지사용권(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의 분리를 의미함.
 - 농가토지도급경영제는 중국 농촌의 기본적인 농업경영제도로 정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농민들의 토지사용권 행사 측면에서 권리 침해 현상이 빈번하여 제도의 불안정성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외에서는 개혁 30주년이 되는 2008년 10월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08.10.9~13; 이하 제17기 3중전회라 칭함)에서 최근의 삼농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농촌 토지의 농가영구도급제(永包制)와 같은 농촌 토지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하였음.
- 제17기 3중전회에서 농촌 토지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다만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여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그 해결을 중시하고 있는 삼농문제와 관련한 보고서 ‘농촌개혁 발전 추진에 관한 몇 가지 중대 문제 결정(中共中央關於推進農村改革發展若干重大問題的決定)’를 심의, 채택하였음.
 - ‘결정’에서는 농가토지도급제와 관련하여 농민들의 토지사용권 보장, 토지도급 기간 불변(일반 경지 30년), 토지사용권 시장(유형 시장) 설치, 전환도급(轉包), 임대(出租), 교환(互換), 양도(轉讓), 주식합작(股份合作) 등의 방법으로 농지유동화를 촉진하

고 이를 통한 영농규모화 실현을 강조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기존 법률이나 문건 등에서도 수 차례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음. 다만 법률적으로 허용되어 있음에도 그 실적이 저조한 농지유통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형의 토지사용권 시장 설치를 강조함으로써 농민들의 토지사용권 행사의 권리를 더욱 더 강화하고 있는 점이 주목됨.

2.2. 농촌 토지제도의 변화와 농업경영시스템

가. 공급주도형 토지제도 변화와 효과

- 중국 농촌의 토지제도는 1978년 농업구조개혁 이전까지 토지개혁과 농업집단화(고급농업협작사→인민공사)를 통해 두 번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제도 공급의 행위주체인 정부에 의한 ‘공급주도형 강제적 제도변화’라는 공통점이 있음.
- 또한 제도 공급 방식과 의도 측면에서 보면 모두 정치적 지지의 최대화와 사회적 총산출의 극대화를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 그러나 제도변화의 효과 측면에서 보면 두 차례의 토지제도 변화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주로 토지재산권 관계의 차이에서 비롯됨.

□ 토지개혁

- 신 중국 건국 직후 추진된 토지개혁(1950~52)은 중국 정부가 강제적인 독점 권력을 이용하여 지주토지소유제를 철폐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민토지소유제를 실현한 강제적인 제도변화였음.
- 제도변화의 효과
 - 농촌 토지의 약 50% 이상을 지주가 소유하고, 소작료가 30~50%에 달했던 구 중국의 토지소유구조에서 농민들의 제도변화에 대한 요구가 매우 강렬하게 잠재되어 있었음.
 - 토지개혁으로 농민들의 토지재산권이 명확히 확립됨으로써 법률적으로나 명의상으로

도 농민들의 토지소유권이 실현되었고, 배타적 소유권에 기초한 사용권과 수익권 나아가 토지의 자유처분권 등 경제적 권익도 향유할 수 있었음.

- 명확한 재산권관계는 농민들의 생산의 적극성을 유발하였고, 결과적으로 토지개혁을 통한 제도변화의 효과는 농업생산 증대로 나타났음. 토지개혁이 진행된 3년 동안 (1950~52) 식량과 면화 생산은 각각 연평균 13.1%, 43.2% 성장하였음.

□ 농업집단화와 인민공사제도

- 1953년부터 시작된 농업집단화 과정은 토지제도 측면에서 보면 토지개혁을 통해 확립된 농민토지소유제의 집단토지소유제로의 전환 과정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동시에 상실하였음.
- 농업집단화 초기 호조조(互助組) 및 초급농업합작사(初級農業合作社) 시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농민토지소유제와 농가경영시스템이 유지되었음.
 - 이 시기까지는 토지재산권 관계도 여전히 명확하였으며, 농업생산에서 토지개혁에 의한 제도변화의 효과는 지속적으로 발휘되었음.
- 농업집단화가 고급농업합작사(高級農業合作社)단계로 이행하고 곧 이어 인민공사회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또 한 차례 강제적 제도변화가 이루어졌음.
 - 농촌 토지의 소유 주체는 고급농업합작사(1956~57)에서 인민공사(1958~61)로 변화하였다가 인민공사의 재정비기를 거치면서 인민공사, 생산대대, 생산대의 '3급 소유'로 세분화되었음. 1978년 농업구조개혁 시기까지 유지된 '3급 소유제'에서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주로 인민공사체제에서 '생산과 회계의 기본단위'로서 기능했던 생산대에 귀속되었음.
- 인민공사제도에서는 토지가 집단소유와 집단경영에 귀속된데다 계획 생산 및 공급이 이루어져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수익권 그리고 자유처분권이 엄격히 제한되었으며 재산권 침해가 일상화되었음.
 - 인민공사제도에서 재산권 침해는 구체적으로 생산경영제도, 노동분배제도, 생산물유통제도, 토지재산권제도 측면에서 고찰해 볼 수 있음. 이 가운데 재산권 침해를 규정

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토지재산권제도임.

- 인민공사의 집단소유집단경영시스템에서 농민은 더 이상 독립적인 경제단위로서 기능할 수 없었으며, 더 이상 직접적으로 토지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음.
- 비록 인민공사 재정비기에 ‘3급 소유제’가 확립되어 경영의 분권화와 재산권의 세분화가 진전되기는 했지만, 농민과 생산대, 생산대와 생산대대, 생산대대와 인민공사 사이의 재산권관계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음.⁷
- 인민공사제도에서는 재산권관계가 명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센티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음. 인민공사의 모호한 재산권관계에서 노동조직의 집단화 정도가 증대하고 지대수입은 억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균주의적인 분배가 증가하면서 자원배치효율과 노동의 인센티브는 감소했고 이는 결국 인민공사제도의 효율저하를 초래하였음.
- 인민공사제도에서 재산권 침해는 제도공급 주체인 정부의 제도변화에 따른 기대수익을 악화시켰음. 또한 필연적으로 노동감독 비용의 증대와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의 감소를 초래하였음.
- 이들 요인에 의해 인민공사제도는 결국 실패로 귀결되었으며 새로운 제도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였음. 인민공사의 모호한 토지재산권관계는 ‘공유의 모순(paradox of commons)’⁸을 노정하여 제도효율의 저하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였음.

나. 수요주도형 토지제도 변화와 효과

-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한 이후 농촌의 농업 생산경영제도로 정착한 농가토지도급경영제는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이 분리된 토지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 농가토지도급경영제는 토지소유제도 측면에서 농업집단화 과정에서 확립된 집단토지소유제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토지사용제도 측면에서는 개별농가가 농업

7 인민공사시기 ‘3급 소유제’의 모호한 재산권관계는 현재 중국 농촌 토지제도의 불완전한 토지재산권제도의 출발점이다. 인민공사체제가 해체되고 현재의 행정조직체계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3급 소유제’의 모호한 재산권관계는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계승되었음.

8 어느 마을에 공동의 초원이 있어 어느 누구나 가족에게 풀을 먹일 수 있을 때 그 초원은 황폐화되기 쉬우나 이 초원을 마을 주민에게 분할하여 사유화했을 경우에 그 초원은 계속 유지가 가능하고 가족의 산출량도 증가

생산과 경영의 기본단위로서 토지사용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중국의 현행 농가경영시스템은 바로 이 분리된 토지사용권에 기초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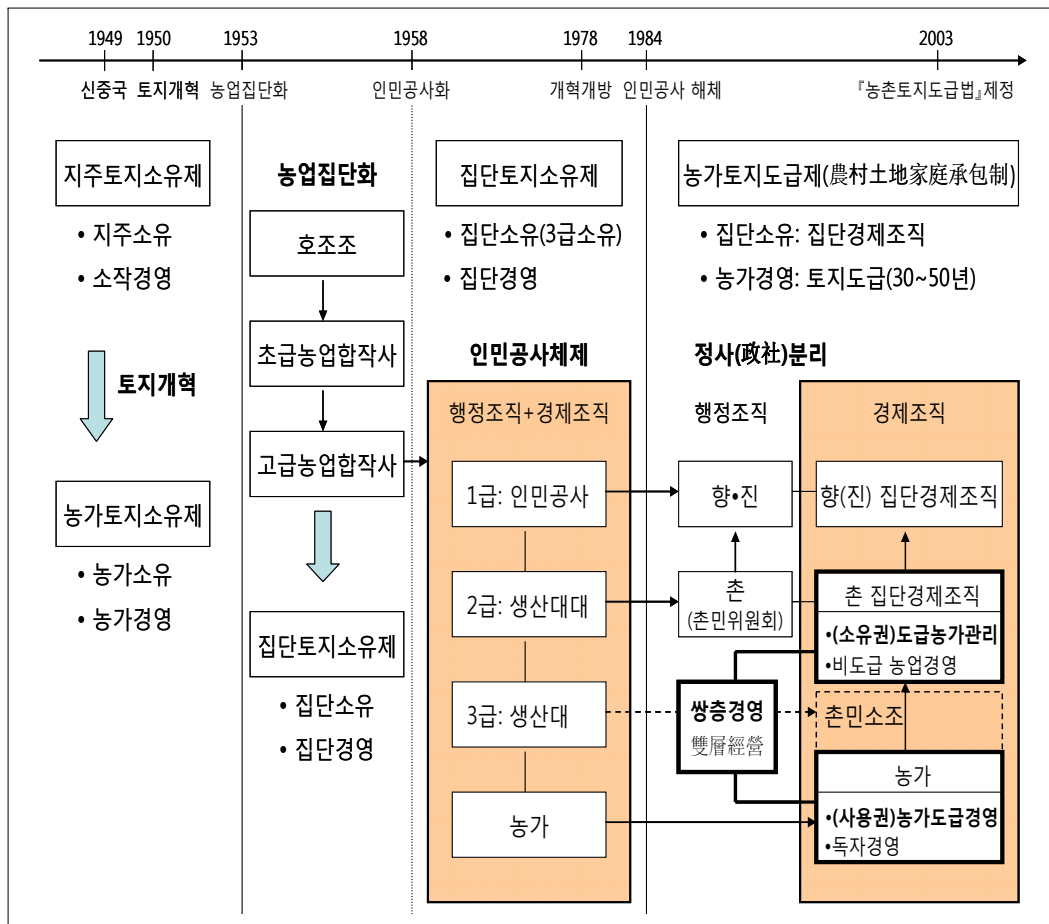
- 농가토지도급제로의 토지제도 변화는 아래로부터의 수요주도형 제도 공급의 특성을 지님. 또한 인민공사의 토지제도가 파레토 비효율적이라는 전제하에 전형적인 파레토개선(pareto improvement) 사례에 속함.
 - 농가토지도급제의 실시는 두 차례에 걸친 공급주도형 강제적 제도공급과는 분명한 대조를 이룸. 특히 인민공사의 토지제도는 제도 자체의 낮은 효율성과 재산권 침해로 항상 새로운 제도에 대한 수요가 내재하고 있었음.
 - 이는 농업집단화 초기에 출현하여 인민공사제도에서도 긍정과 부정의 역사를 되풀이하다 결국 1978년 시작된 농업구조개혁 과정에서 공식 승인된 농가토지도급제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음.⁹
- 농가토지도급제에서는 농가가 토지사용권을 부여받아 직접 생산 및 경영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과거 인민공사제도의 최대의 문제점이었던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과도한 노동 감독비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음.
 - 결과적으로 농가토지도급제의 토지제도에서는 생산의 적극성이 극대화되고 비용은 최소화되는 제도변화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었음.
 - 농가토지도급제로의 제도변화는 다양한 농촌 미시경영조직의 발전, 농업자원의 효율적 배치 유도, 경제발전에 대한 농업의 역할 제고 등의 경제적 효과를 나타냈음.
 - 새로운 토지제도에 기반한 농가토지도급제는 1986년 6월 제정된 《토지관리법》(2장 12조)과 1993년 3월 수정된 《헌법》에서 그 법률적 지위를 보장받았음.

9 농가토지도급경영제의 대표적인 형식이었던 포산도호(包產到戶)는 농업집단화 운동의 고조기인 1956년 처음으로 출현한 이후 인민공사제도를 거쳐 1978년 시작된 농업구조개혁 과정에서 공식 승인되기까지 다섯 차례의 흥망성쇠를 경험하였음.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1956년 浙江省 永嘉, 瑞安, 四川省 江津, 山西省 榆次, 安徽省 鳳陽, 1959년 河南省 新鄉, 1960년 四川省, 安徽省, 廣西省 壯族自治區, 1964년 雲南省, 貴州省, 1970년 福建省, 江西省, 廣東省 등지에서 포산도호(包產到戶) 형식이 실험된 바 있음.

다. 농촌 토지제도의 변화와 농업경영시스템

- 중국의 농가경영시스템은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경영권)이 일체화된 자본주의의 농가경영시스템과는 구별되며, 소유권과 사용권이 분리된 토지제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른바 ‘쌍층경영시스템(雙層經營體制)’¹⁰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음(그림 1 참조).

그림 1. 중국 농촌 토지제도의 변화와 농업경영시스템 개념도



자료: 필자 작성

¹⁰ 쌍층경영(雙層經營)이라는 용어는 중국 공산당의 1986년 '1호 문건'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지만 개념적으로는 이미 1982년 '1호 문건'에서 제시된 바 있음. 따라서 쌍층경영 개념은 농가토지도급제를 다른 각도에서 파악한 것이라는 점에서 농가토지도급제의 도입과 같은 시기에 형성된 개념임.

- ‘쌍층경영시스템’은 개념적으로 토지소유제 측면의 집단소유제와 토지사용제 측면(혹은 농업경영 측면)의 농가토지도급경영제가 상호 결합된 형태로 이해할 수 있음.
- 농업경영 측면에 좀 더 비중을 둔다면 ‘쌍층경영시스템’은 토지소유자를 대표하는 농촌(농민)집체경제조직의 통일경영 기능과 토지사용권을 획득한 개별 농가의 분산경영의 결합을 강조한 개념임.¹¹

○ ‘쌍층경영시스템’에서 농민들이 토지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 두 가지 요인에 기초하고 있음.

- 첫째, 토지집단소유제에서 집단(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은 자연적으로 집단소유의 토지가운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음.¹² 그러나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닌 경우 해당 공동체의 토지에 대해서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음.
- 둘째, 농민들은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동시에 반드시 국가에 대한 세금과 집단경제조직에 대한 토지 도급비용 납부 의무를 지게 됨. 만약 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토지 사용권은 취소됨(畢寶德 主編, 2001, p.361).

○ 농가토지도급제에 기반한 ‘쌍층경영시스템’이 전국 농촌에 정착된 1984년 이후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농가토지도급제 및 토지사용권의 제도적 지위를 보장하고 최종적으로 법제화를 통한 제도의 안정을 위해 일련의 후속 조치를 실시하였음.

- 토지 도급기간의 연장이 후속 조치의 핵심이었으나 1990년대 후반까지는 법률적 구속이 없는 당 문건 형식이 대부분이었음.¹³ 이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도급 주체가 각종 명목으로 도급 토지를 회수하거나 토지 도급비용을 인상하는 등 토지사용권(도급경영

11 통일경영 기능이란 농자재의 공급, 기계화작업방제관개 등 농업서비스 기능을 의미함.

12 周其仁(劉守璽)(1988)는 이러한 권리를 ‘社區成員權’으로 정의하고 있음.

13 농가토지도급제 도입 초기에는 3~5년이 일반적이었으나 1984년 공산당 ‘중양1호문건’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음. 1993년 공산당 ‘중양1호문건’은 토지도급 기한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토지투입 증대 및 토지생산성 향상 그리고 토지도급 관계의 안정을 목적으로 도급 기간을 재차 30년으로 연장하였음. 1998년 수정된 《토지관리법》(2장 14조)에서도 30년 도급 기간을 규정하였음. 제9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2002.8.29)에서 통과된 《농촌토지도급법》은 2장 3절 20조에서 “경지의 도급 기간은 30년, 초지의 도급 기간은 30~50년, 임지의 도급 기간은 30~70년”으로 규정하였음. 2007년 3월 제정된 《물권법》도 11장 126조에서 경지 30년, 초지 30~50년, 임지 30~70년의 도급 기한을 명시하였음.

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또한 토지사용권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많아 농가토지도급제가 왜곡된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도 빈번하였음.

- 2002년 8월 제정된 《농촌토지도급법(農村土地承包法)》(2003.3.1 시행)은 국가법률 형식으로 농민들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토지사용권을 확인해 준 최초의 법률로서 농가토지도급제와 농민들의 토지사용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중국의 농가토지도급제는 농민들의 토지사용권 보호를 위해 토지 도급기간 내에는 인구변동에 관계없이 도급 토지면적을 고정시키는 것(贈人不增地, 減人不減地)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토지이용 측면에서 인구변동에 따라 토지사용이 탄력적으로 조정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쌍층경영시스템’의 한 축인 농가토지도급제의 주도적인 지위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토지경영모델이 적극 실험되고 있음. 이는 농가토지도급제가 자연지리적 조건, 사회경제적 조건 등 다양한 지역적 차이를 반영하여 세분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2.3. 농촌 토지제도의 불안정 요인: 토지재산권을 중심으로

가. 토지소유권 문제

○ 중국 농촌의 토지제도는 토지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재산권인 토지소유권과 토지경영권의 분리를 중요한 특징으로 하며 이로 인해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음.

- 이 가운데 토지소유권 및 토지사용권의 주체와 성질, 권리와 의무, 재산권행사의 범위 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될 수 있음. 이와 관련한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관련 문제들을 명확히 규정하는 명문화된 법률의 존재임.

○ 중국에서 농촌 토지소유권과 관련한 제반 내용을 부분적으로 혹은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헌법(憲法)》, 《민법통칙(民法通則)》, 《토지관리법(土地管理法)》, 《농촌토지도급법(農村土地承包法)》, 《물권법(物權法)》이 있음.

표 1. 농촌 토지소유권에 관한 법률 규정 비교

법률	제정시기	관련 규정
《헌법》	1982.12.4 제4차 헌법	“농촌과 도시 근교의 토지는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소유에 속하는 것을 제외하고 집단소유에 속한다”(1장 10조) *4차 헌법은 4차례(1988.4, 1993.3, 1999.3, 2004.3) 수정
《민법통칙》	1986.4.12	“집단소유의 토지는 법률에 의거하여 촌 농민집단소유에 속하며, 촌 농업생산합작사 등 농업집단경제조직 또는 촌민위원회가 경영 및 관리한다”(5장 1절 74조) “이미 향(진) 농민집단경제조직에 속하는 집단소유의 토지는 향(진) 농민집단소유에 속할 수 있다”(5장 1절 74조)
《토지관리법》	1986.6.25 수정 1988.12.29 1998. 8.29 2004. 8.28	“농민집단소유의 토지는 법률에 의거하여 촌 농민집단소유에 속하며, 촌 집단경제조직 또는 촌민위원회가 경영 및 관리한다”(2장 10조) “이미 촌 내 2개 이상의 농촌집단경제조직에 속하는 각각의 농민집단소유 토지는 촌 내 각 해당 농촌집단경제조직 또는 촌민소조가 경영 및 관리한다”(2장 10조) “이미 향(진) 농민집단경제조직에 속하는 집단소유의 토지는 향(진) 농촌집단경제조직이 경영 및 관리한다”(2장 10조) “농민집단소유의 토지는 현(縣)급 인민정부가 등기서류를 작성하고, 증서를 발행하여 소유권을 확인한다”(2장 11조)
《농업법》	1993.7.2 수정 2002.12.28	“집단소유의 토지는 법률에 의거하여 촌 농민집단소유에 속하며, 촌 농업집체경제조직 또는 촌민위원회가 경영 및 관리한다”(2장 11조) “이미 향(진) 농민집단경제조직에 속하는 집단소유의 토지는 향(진) 농민집단소유에 속할 수 있다”(2장 11조) “이미 촌 내 2개 이상 농업집단경제조직 소유의 각각의 촌 농민집단소유 토지는 각 해당 농업집단경제조직의 농민집단소유에 속할 수 있다”(2장 11조)
《농촌토지도급법》	2002.8.29	“농민집단소유의 토지는 법률에 의거하여 촌 농민집단소유에 속하며, 촌 집단경제조직 또는 촌민위원회가 토지를 도급한다”(2장 1절 12조) “이미 촌 내 2개 이상의 농촌집단경제조직에 속하는 각각의 농민집단소유 토지는 촌 내 각 해당 농촌집단경제조직 또는 촌민소조가 토지를 도급한다”(2장 1절 12조)
《물권법》	2007.3.16	“촌 농민집단소유에 속하는 토지(삼림, 임야, 초지, 황무지 등)는 촌 집단경제조직 또는 촌민위원회가 집단을 대표하여 소유권을 행사한다”(2편 5장 60조) “촌 내 2개 이상의 농민집단소유에 속하는 각각의 토지(삼림, 임야, 초지, 황무지 등)는 촌 내 각 해당 집단경제조직 또는 촌민소조가 집단을 대표하여 소유권을 행사한다”(2편 5장 60조) “향(진) 농민집단소유에 속하는 토지(삼림, 임야, 초지, 황무지 등)는 향(진) 집단경제조직이 집단을 대표하여 소유권을 행사한다”(2편 5장 60조)

자료: 각 법률에 의거하여 필자 번역 정리

- 이렇듯 많은 법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토지재산권과 관련하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법률 규정의 모호함 때문임. 특히 토지소유권의 주체, 다시 말해 농가 토지도급제에서 토지도급경영권을 농민에게 도급하는 주체(도급수여자)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이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근본 원인임.
-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법률에서는 농민집단(農民集體)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소유권 주체를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음. 민법 차원에서 보면 농민집단의 실체는 법인이나 혹은 자연인의 연합이 아니며 따라서 권리의 주체를 대표할 수 없는 개념임. 집단이라는 표현은 현재 중국 상황에서 단지 촌(村)의 사회경제조직 형식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는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인격체가 될 수 없음.
-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법률에서는 향(진) 집단경제조직, 촌 집단경제조직 또는 촌민위원회, 촌 내 집단경제조직 또는 촌민소조가 농민집단 소유의 토지를 경영·관리하거나 농민집단을 대표하여 소유권을 행사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토지소유권의 범위가 향(진)-촌-촌민소조 단위의 3급으로 폭넓게 규정되어 있음.
- 이는 인민공사를 해체하고 현재와 같은 행정조직 체계로 개편할 때 과거 인민공사체제에서 존재하였던 인민공사-생산대대-생산대의 '3급 소유제'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 현재의 향(진) 집단경제조직-촌 집단경제조직 또는 촌민위원회-촌 내 집단경제조직 또는 촌민소조의 '3급 소유제' 형태로 온존하고 있음.
- 현재 중국 농촌에서는 많은 토지가 소유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 이들 3급의 농민집단 간에 소유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나. 토지사용권 문제

- 토지사용권은 개념적으로 법률에 의거하여 일정한 토지를 이용하고 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 협의의 의미에서 법률에 의거하여 토지를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토지소유권에 포함되는 토지점유권, 토지수익권, 토지처분권과 병렬 관계로 해석되고 있음.
- 광의의 의미에서는 토지소유권으로부터 독립하여 토지점유권, 협의의 토지사용권, 부

분적인 수익권, 불완전한 처분권의 조합으로 해석되고 있음. 현재 중국의 농촌 토지제
도에서 토지사용권은 일반적으로 광의의 토지사용권으로 해석되고 있음.¹⁴

-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의 분리는 권리와 책임을 불분명하게 하여 토지소유권 주체가
농민들의 토지사용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 이론적으로 경영권은 사용권에 속하는 것으로 현재 중국 농촌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가
토지도급제에서 토지도급경영권은 토지사용권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경작권, 부분적
인 수익권 그리고 불완전한 처분권을 내포하고 있음. 중국 농촌에서 토지도급경영권의
실제 권리 내용이 불충분하여 농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함.

- 《토지관리법》, 《농촌토지도급법》, 《물권법》¹⁵에서는 토지 도급기간을 30년으로 규
정하고 있으며, 가족수가 늘거나 줄어도 도급 토지 면적은 불변이라는 원칙이 전제되
어 있음.¹⁶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의 변화에 따라 도급 토지를 조정(토지 재도
급)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음.¹⁷ 또한 규모경영을 이유로 농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
고 양전제(兩田制), 반조도포(反租倒包)의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¹⁸
- 토지사용권이 불안정한 가운데 토지수익권 측면에서 토지소유권 주체가 농촌 공공사
업 실시 등의 이유로 고액의 토지 도급비용을 부과하거나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의
토지 수용 및 사용과정에서 토지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14 畢寶德 主編. 2001. 「土地經濟學」, 中國人民大學出版社. p.335.

15 《물권법》은 다수의 단행법에 산재되어 있던 농촌 토지의 재산권을 포함하여 재산권 관련 규정을 통합
한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기본법의 위상을 지님. 《물권법》은 토지도급경영권을 물권으로 명확히 규정
하고 농민이 도급 경영하는 농지, 초지, 임지의 점유권, 사용권, 수익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음.

16 《농촌토지도급법》 제28조는 집단경제조직이 법률에 의거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동지(機動地, 공적인 용
도와 노동력의 변화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도급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 합법적인 개간 등으로 조성한
신규 토지, 도급농가가 법률에 의거하여 자발적으로 반납한 토지에 대해서는 도급관계를 조정하거나 증
가한 인구에게 도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7 농민의 토지사용권 보장 정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토지도급경영권의 안정성과 토지의 시장가격
(shadow price)은 반비례 관계에 있음. 농업경제 환경이 낙후하고 비농업용지 전환 확률이 낮은 지역의
토지 도급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토지의 수익이 높고 비농업용지 전환 확률이 높은 지역의 토지
도급관계는 불안정한 특성이 있음.

18 양전제는 집단소유의 토지를 기본 식량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구량전(口糧田)과 도급경영을 실시하는 책
임전(責任田)으로 구분하는 방식임. 반조도포는 행(行) 정부나 촌민위원회가 농민이나 집단경제조직으로
부터 토지를 임대한 후 이를 다시 토지경영을 원하는 농가에게 도급하는 방식임.

- 토지도급경영권의 불안정으로 많은 농민들이 토지에 대한 투입을 기피하여 지력이 하락하고 토지생산성도 낮아져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농민들도 토지사용권을 행사하고 보호하려는 의식과 능력이 부족하여 토지 도급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거나 폐지하고, 타인의 농지를 함부로 점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현상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음.¹⁹

표 2. 농촌 토지사용권의 유동에 관한 법률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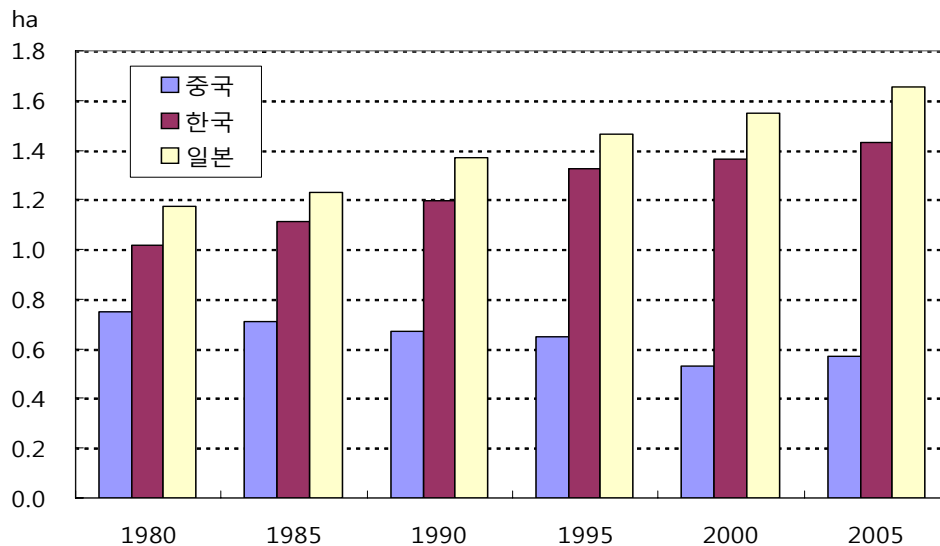
법률 및 문건	관련 규정
1984년 '중앙1호문건'	“도급기간 내에 영농을 영위할 수 없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업하여 도급을 원하지 않거나 혹은 적은 규모의 토지를 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를 집단에 반납하고 집단이 통일적으로 분배할 수 있다. 또한 집단의 동의를 거쳐 도급 농가 스스로 대상을 찾아 협상을 통해 전환 도급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집단과의 도급계약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토지관리법》	“토지사용권은 법률에 의거하여 양도할 수 있다”(1장 2조)
《농업법》 (1993.7)	“국유토지와 집단소유 토지의 사용권은 법률에 의거하여 양도할 수 있다”(1장 4조)
《농촌토지도급법》	“농가도급을 통해 취득한 토지도급경영권은 법률에 의거하여 전환도급, 임대, 교환, 양도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유동할 수 있다”(2장 5절 32조) “토지도급경영권의 유동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야한다. ①평등 협상, 자원, 유상 원칙을 준수하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도급농가가 진행하는 토지도급경영권의 유동을 강요하거나 방해해서든 안된다. ②토지소유권의 성질과 토지의 농업용도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③유동 기한은 도급기간의 잔여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④토지도급경영권을 획득하는 측은 반드시 농업경영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⑤동등한 조건에서 해당 집단경제조직의 구성원이 우선권을 향유한다”(2장 5절 33조) “전환도급, 임대, 교환, 양도 또는 기타 방식으로 토지도급경영권을 유동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은 반드시 서면계약에 서명해야한다. 양도 방식을 채택하여 유동하는 경우 반드시 도급수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환도급, 임대, 교환 또는 기타방식을 채택하여 유동하는 경우 반드시 도급수여자에게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2장 5절 37조)
《물권법》	“토지도급경영권자는《농촌토지도급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토지도급경영권을 전환도급, 교환, 양도 등 방식으로 유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유동기간은 도급기간의 잔여기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으면 도급토지를 비농업건설에 사용할 수 없다”(11장 128조)

자료: 각 법률에 의거하여 필자 번역 정리

19 비교적 오래된 연구이기는 하지만 劉守英(1999)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 농가의 89.5%가 토지도급권을 토지경작권으로만 인식하고 있음(葉檢平, 2000). 214개 농가를 대상으로 토지도급경영권의 행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蓋國強(2001)의 연구는 전환도급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농민들이 토지도급경영권의 상속, 저당, 당도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률적으로는 농촌 토지사용권(토지도급경영권)의 유동을 허용하고 있지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토지사용권의 유동을 통한 영농규모화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그림 2 참조).²⁰
- 토지도급경영제의 실시로 토지의 분산경영이 정착되었으나 경제발전 과정에서 농민들의 소규모 분산경영과 규모화 경영 실현, 토지의 수익성 제고라는 사회적 수요 간에 모순이 심화되고 있음.
- 이로 인해 토지의 사용은 더욱 영세하고 분산되어 대형 농기계 사용과 규모화가 어려워 농업 현대화를 제약하고 있으며 규모경제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음. 또한 도시로 유출된 농민의 토지사용권이 고정되어 효율적으로 유동되지 않음으로써 대량의 토지가 황폐해지는 등 토지자원의 낭비가 심각한 상태임.
- 또한 토지사용권 유동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가격 형성이 불합리하고 외부환경도 성숙되지 않아 농지의 유동이 더욱 어려운 상태임.

그림 2. 한·중·일 농가 호당 경지면적 비교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8 농림수산물 주요 통계」; 國家統計局, 「2007 中國統計年鑒」

20 葉劍平·蔣研·豐雷(2006)의 연구에 따르면 전국 17개 성 1,962개 농가 조사결과 67%의 농가가 농지유동 경험이 없고, 농지유동 경험이 있는 농가의 65%가 도급 토지의 일부, 35%가 도급 토지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농지유동 경험이 있는 농가의 평균 양도 면적은 0.24ha, 조사대상 농가의 전체 도급 토지 가운데 9.7%만이 양도되었음.

- 농촌의 토지재산권 관계가 모호하여 토지의 수용과 사용 과정에서 기층 간부의 비리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농민은 토지 가치 상승의 실익을 향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중국의 농촌 토지에 관한 현행 법률 및 법규는 농민이 커다란 제약없이 토지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 정부와 촌 집단이 매우 강력한 토지통제권을 가지고 있음.
- 농촌 토지의 강제 수용 및 보상체계는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현행 보상 규정은 토지를 잃은 농민들이 원래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²¹

2.4. 농촌 토지제도 개혁 논의와 전망

가. 개혁 논의

- 농가토지도급경영제는 지난 30년 동안 중국 농업의 성장과 농민소득 증대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토지재산권 주체 불분명, 토지사용권 불안정, 토지수익권 제한, 농지유동 제약 등 일련의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음.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가토지도급경영제에서는 농촌 토지가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수익권이 제한되어 있어 농민들은 토지로부터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임.
- 이러한 현실은 도농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어 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였음.
- 중국의 농촌 토지제도 개혁 논의는 이러한 현실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불명확한 토지재산권제도의 개혁과 농지유동화 촉진을 통한 영농규모화 실현이 논의의 핵심임.
- 토지제도의 개혁 방향은 현존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토지재산권 관계를 명확히 하고 농지의 유동화를 촉진하여 토지의 집약화 및 규모화 경영을 발전시키고 토지의 수익성을 증대시켜 농민의 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

21 《토지관리법》 제47조는 수용 토지의 보상비는 토지보상비, 정착보조비, 지상부착물 및 묘목보상비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토지보상비는 수용 전 3년 동안의 연평균 총생산액의 6~10배, 정착보조비는 수용 토지 면적을 1인당 평균 점유면적으로 나누어 정착보조 인구수를 계산하고, 1인당 보조 기준은 수용 이전 3년 동안의 연평균 총생산액의 4~6배(단, ha당 보조비는 15배를 초과할 수 없음)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비의 합이 3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농촌 토지의 자산화를 촉진하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토지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농민들의 자산성 소득을 제고하고 농업의 규모화 경영을 촉진하며 농업부문의 수익극대화 실현을 추구하고 있음 (표 3 참조).

표 3. 농촌 토지제도 개혁 모델 비교

모델	주요 내용
사유화	· 현행 토지도급경영제도는 재산권의 주체, 권리와 책임이 불명확하므로 농촌의 상품경제 발전, 농업 생산력 발전, 농민들의 생산의 적극성 유인을 위해서는 토지재산권 제도 개혁 필요 · 농민들이 도급경영하고 있는 토지를 농민 개인재산으로 확정하는 모델 · 토지의 사유화는 중국이 견지하고 있는 사회주의 공유제와 직접적으로 충돌하며 토지 독점으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 가능성 존재 · 전국적 범위보다는 경제가 발달하고 공업화, 도시화,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는 지역에서부터 선택적으로 실시 가능
토지사용권 강화	· 토지의 국유화 조치 후 도급 토지의 토지재산권을 영구적 또는 규정된 기간 동안 보장하고 농민들은 토지점유권, 사용권, 처분권, 수익권 행사 · 정부는 전문적인 농촌 토지관리 기관 또는 기업을 설치하여 도급한 토지의 경영 및 이용 상황을 관리 감독하며, 농민들의 토지 사용에 따른 권리와 의무, 토지의 상속, 양도, 임대, 저당, 용도변경 등을 관리 · 토지사용권의 기한은 도시 주민의 주택사용권 기한을 참고하여 70년으로 하거나 기간이 경과하면 계약 연장 및 상속 허용 · 중국이 견지하고 있는 사회주의 공유제에 부합하면서 농민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장 가능. 그러나 재산권 효율이 사유화 모델에 비해 미약
토지주식제	· 현행 토지도급경영제에서 토지사용권을 주식화하고 주식(토지 지분)을 갖고 있는 농민들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토지사용권의 거래 및 이익배당금 분배 등을 확정하고 토지의 실제 사용자를 관리 감독 · 인구에 따른 토지의 평균적인 분배로부터 토지주식 공유제로 전환하는 모델 → 토지로부터 자산성 소득 획득, 규모화 경영 및 효율 향상 추구 · 토지사용권은 공개경매나 입찰을 통해 양도가 가능하며 인구의 증감이 있는 경우 이에 상응하여 토지지분 조정 가능 → 토지의 영세화, 분산화 지양 · 토지주식제는 토지사용권에 대한 주식화이고 토지도급경영권이나 토지 소유권의 주식화가 아니며 토지경매나 입찰의 실체도 토지사용권 → 토지의 실제 사용권은 공개경매나 입찰을 통해 낙찰된 자가 향유 · 제도 자체의 특성상 시장리스크가 비교적 크고 농민들이 이를 부담
영구도급제 (영구소작제)	· 토지도급 기간은 재산권관계를 명확히 하고 농민들의 이익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임. · 토지 도급기간을 최대한 연장하여 영구적으로 도급하고 승계도 인정하는 경우 외부불경제를 극복하고 토지 투입을 증대시키는 한편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배치도 실현 가능 · 영구도급권은 무기한, 영구성, 상속성, 양도성 등을 특징으로 하며 영구 도급 농민은 법률적으로 용익물권의 권리를 행사

자료: 羅士喜. 2008. “我國農村土地制度創新的四種模式研究”, 『中州學刊』, 2: 28-32

나. 전망

- 2008년 10월 개최된 제17기 3중 전회에서는 그동안의 토지개혁 논의를 토대로 농가토지도급경영제 시행 30주년을 맞아 획기적인 제도변화를 예측했으나 현행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혁신을 강조하는데 그쳤음.
 - 다만 법률적인 허용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농지유동화의 촉진을 특별히 강조한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임.
- 향후 농촌 토지제도의 개혁은 현행 농가토지도급경영제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토지재산권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개혁개방 방식은 전통적으로 ‘다양한 실험을 통한 점진적 개혁’을 커다란 특징으로 하고 있음. 농촌 토지제도의 개혁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 현행 농가토지도급경영제에서도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경영모델이 실험 중이며 최근 유형의 토지사용권 시장의 설치도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개혁 실험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중국의 농촌 토지제도 개혁은 ‘공평’과 ‘효율’의 적절한 조합이 관건임. 현행 토지제도는 토지의 평균적 분배라는 ‘공평’의 이념에 근간을 두고 있으나 불명확한 토지재산권관계와 영세분산경영의 고착화로 제도의 효율성이 제약당하고 있음. 토지제도의 개혁은 결국 효율성 향상이라는 제도 효과를 염두에 두고 있음.
 - 사회보장체계가 미비한 중국 농촌에서 토지는 중요한 농업생산수단이자 사회보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토지는 농민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입의 원천이자 생존을 위한 보험이며 이 때문에 농민들에게 토지는 ‘생명줄’로서 기능하고 있음.
 - 중국 농촌의 현실에서 ‘공평’의 이념은 쉽사리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며 따라서 ‘효율’만을 추구하는 급진적인 토지제도 개혁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향후 토지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농지유동화 촉진이 핵심적인 논제가 될 것으로 보임.
 - 제17기 3중전회 이후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유형의 토지사용권 시장을 설치하는 등 농지유동화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토지사용권 시장체계 구축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9월 14일 산둥성 조장시(棗莊市) 산정구(山亭區) 서장진(徐莊鎮)에 중국 최초로 ‘농촌토지사용권거래소(農村土地使用產權交易所)’가 개소한 이래 2008년 10월 13일 사천성 성도시(成都市)에 ‘농촌토지재산권거래소(農村產權交易所)’가 개소하였고, 12월 4일 중경시에서도 ‘농촌토지거래소(農村土地交易所)’를 개소하였음.



〈 서장진(徐莊鎮) 농촌토지사용권 거래소 〉



〈 토지사용권 증서 전달 〉



〈 성도시(成都市) 농촌토지재산권 거래소 〉



〈 중경시(重慶市) 농촌토지거래소 〉

작성자: 전형진 hjchon@krei.re.kr

[참고자료]

- 《憲法》. 1982.12.4(수정 헌법).
- 《民法通則》. 1986.4.12.
- 《土地管理法》. 1986.6.25.
- 《農業法》. 1993.7.2.
- 《農村土地承包法》. 2002.8.29.
- 《物權法》. 2007.3.16.
- 《中共中央關於推進農村改革發展若干重大問題的決定》. 2008.10.12.
- 畢寶德 主編. 2001. 「土地經濟學」.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蓋國強. 2001. “農村土地使用權流轉研究: 以山東省為例”. 「中國軟科學」 5: 114-120.
- 羅士喜. 2008. “我國農村土地制度創新的四種模式研究”. 「中州學刊」, 2: 28-32.
- 葉劍平. 2000. 「中國農村土地產權制度研究」. 中國農業出版社.
- 葉劍平·蔣研·豐雷. 2006. “中國農村土地流轉市場的調查研究－基於2005年17省調查的分析和建議”. 「中國農村觀察」 4: 48-55.
- 葉慧. 2007. 『貿易自由化下糧食財政支持政策研究』. 華中農業大學博士學位論文.
- 周其仁·劉守營. 1988. “湄潭：一個傳統農區的土地制度變遷”. 「發展研究報告」國務院農研中心發展研究所. 7號.
- 國家統計局. 「2007 中國統計年鑒」.
- 농림수산물부. 「2008 농림수산물 주요 통계」.

3. 중국의 식량수급 동향과 식량안보 중장기 계획

3.1. 서론

21세기 문턱을 막 넘어설 때 까지 “세계 경지면적의 약 7%를 가지고 세계 인구의 약 21%를 먹여 살렸다”란 말은 중국의 식량 자급 실현을 대외에 알리는 대표적인 문구였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업자원을 이용하여 10억이 넘는 인구의 먹거리를 해결했다는 것은 비단 중국 자국만의 자긍심일 뿐만 아니라 세계 식량수급 안정에 커다란 공헌을 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1998년 사상 최대 식량 생산량을 기록한 이후, 중국의 식량 생산량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03년에는 급기야 우려되는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이는 중국 정계와 학계로 하여금 20세기 후반 <누가 중국을 먹여 살릴 것인가>란 책을 통해 미래에 중국이 심각한 식량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한 미국의 경제학자 레스터 브라운(Lester R. Brown)의 예견을 또 다시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와 같이 큰 폭의 식량 감산은 중국정부로 하여금 식량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준 셈이다. 이를 계기로 중국정부는 식량증산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고, 다행히 현재까지 매년 안정적인 식량증산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중국의 성공적인 식량증산에도 불구하고 국제 식량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세계 여러 국가들이 식량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록 중국은 이번 국제 식량가격 폭등의 여파를 무사히 지나쳤지만, 식량 수입의존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또한 안전지대일 수만은 없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이를 계기로 중국 정부는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각인하게 되었으며, 2008년 11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가 식량안보 중장기 계획 요강 (2008-2020년)》(이하 《요강》이라고 칭함)을 발표하였다. 세계 식량수급에 있어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중국의 식량안보에 대한 노력은 결국 세계 식량안보와 직결되고, 특히 옥수수, 쌀 등 중국 식량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중국 식량안보 계획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3.2. 식량수급 동향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식량 수급은 “과잉-부족-과잉”의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1978~1982년 공급부족, 1983~1984년 공급과잉, 1985~1989년 공급부족, 1990~1992년 공급과잉, 1993~1995년 공급부족, 1996부터 2003년까지 8년간 공급과잉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장기간의 공급과잉은 식량 가격의 하락을 초래하였고, 가격 하락은 농민들로 하여금 식량작물 대신 수익성이 높은 경제작물 재배면적을 늘리도록 하였다. 결국 2003년 중국의 식량 총생산량은 4.3억 톤까지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식량 감산으로 인해 같은 해 10월부터 식량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 3월 식량 가격이 또 한 차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갑작스런 식량가격 상승은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중국 정부로 하여금 식량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했다. 사실, 2000년부터 해마다 국내 식량 생산량은 국내 소비량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으며, 1996~1999년 과잉 생산으로 비축해 두었던 식량 재고를 통해 부족분을 충족시켰던 것이다. 결국 2004년 다시 식량 공급부족 국면을 맞게 되고, 중국 정부의 식량 증산을 위한 정책들이 실시되었고, 그러한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어 2004년 이후 4년 연속 안정적 증산을 거듭하고 있다. 2007년 현재 중국의 식량 총생산량은 5억 톤을 초과함으로써 목표 생산량에 이미 도달한 상태이다. 그러나 주민 생활수준의 향상은 식량 소비량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식량 수입량의 증가로 인해 식량 자급률은 약 95%까지 감소하였다.

표 4. 중국의 식량 자급률 현황

단위: 만 톤, %

연도	생산량(A)	수입량(B)	수출량(C)	자급률(D)
1980	32,055.5	1,444	156	96.1
1985	37,910.8	596	918	100.9
1990	44,624.3	1,369	507	98.1
1995	46,661.8	2,069	102	96.0
1998	51,229.5	707	906	100.4
2000	46,217.5	1,357	1,399	100.1
2003	43,069.5	2,282	2,221	99.9
2004	46,946.9	2,998	506	95.0
2005	48,402.2	3,286	1,054	95.6
2006	49,804.2	3,183	643	95.1
2007	50,160.3	3,237	1,032	95.8

자료출처: 중국 국가통계국통계자료,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통계자료.

주: $D = A / (A + B - C) * 100$

〈표 5〉를 통해 식량 재배면적과 식량 총생산량이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998년 사상 최대 식량 생산량을 기록하고 나서 식량 재배면적은 4년 연속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2003년에는 1억 ha 이하까지 감소한다. 쌀, 밀, 옥수수는 2004년부터 해마다 회복성 증산을 이루고 있는데 반해, 대두의 경우 재배면적과 생산량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5. 중국 식량작물 재배면적과 생산량 현황

단위: 천 ha, 만 톤

연 도	식 량 재배면적	주 요 식 량 작 물								식 량 총생산 량
		쌀		밀		옥수수		대 두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96	112,548	31,406	19,510	29,611	11,057	24,498	12,747	7,471	1,322	50,454
1997	112,912	31,765	20,074	30,057	12,329	23,775	10,431	8,346	1,473	49,417
1998	113,787	31,214	19,871	29,774	10,973	25,239	13,295	8,500	1,515	51,230
1999	113,161	31,284	19,849	28,855	11,388	25,904	12,809	7,962	1,425	50,839
2000	108,463	29,962	18,791	26,653	9,964	23,056	10,600	9,307	1,541	46,218
2001	106,080	28,812	17,758	24,664	9,387	24,282	11,409	9,482	1,541	45,264
2002	103,891	28,202	17,454	23,908	9,029	24,634	12,131	8,720	1,651	45,706
2003	99,410	26,508	16,066	21,997	8,649	24,068	11,583	9,313	1,539	43,070
2004	101,606	28,379	17,909	21,626	9,195	25,446	13,029	9,589	1,740	46,947
2005	104,278	28,847	18,059	22,793	9,745	26,358	13,937	9,591	1,635	48,402
2006	104,958	28,938	18,172	23,613	10,847	28,463	15,160	9,304	1,508	49,804
2007	105,638	28,919	18,603	23,721	10,930	29,478	15,230	8,754	1,273	50,160

자료출처: 중국 국가통계국 통계자료.

식량 수출입 동향을 통해서도 중국의 농산물 수급 동향을 읽을 수 있다. 1996년부터 2003년까지 대체로 균형을 유지하던 식량 수출입은 2004년 들어 식량 수출량이 대폭 감소한 반면, 수입량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중국 국내 식량 생산량 감소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2003년 중국 식량 생산량은 전년 대비 약 2,600만 톤이 감소하였다. 이때부터 중국은 식량 순수입국으로 자리매김 된다. 비록 2005년 식량 수출량이 다소 증가하긴 했지만, 국내 식량 수요 증가로 인해 수출입량의 격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식량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현재 약 3,200만 톤에 달한다.

식량 수출입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중국 식량 수출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옥수수의 경우, 2003년에는 수출량이 약 1,600만 톤까지 증가하였으며, 2005년에는 전체 식량 수출의 약 81%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 축산업 발전으로 인한 사료용 옥수수 수요가 증가하였고, 국제 석유가격 상승으로 인해 옥수수를 이용한 바이오 연료 개발이 점차 확대되면서 중국 정부가 수출입에 관여하여 옥수수 수출량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밀의 경우, 최근 수출량은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반해 수입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대두의 경우, 중국 전체 식량 수입량 중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 그 비중은 약 95%에 달했다. 2003년 대두 수입량이 국내 생산량을 초과한 이후, 대두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현재 약 3,100만 톤에 육박하며, 이는 중국 국내 생산량의 약 2.4배에 달하는 양이다. 만약 이처럼 식량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두를 다른 국가들처럼 식량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중국은 식량 순수출국이 되어 식량안보에 대한 부담을 덜 수는 있겠지만, 대두가 중국 국민의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식량안보를 위해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품목임에는 틀림없다.

표 6. 중국 식량 수출입 동향

단위: 만 톤

연도	수 출						수 입					
	쌀	밀	옥수수	대두	기타*	합계	쌀	밀	옥수수	대두	기타*	합계
1996	26	0	16	19	47.4	143	76	825	44	111	264.0	1,194
1997	94	0	661	19	82.3	852	33	186	0	288	274.6	705
1998	375	1	469	17	30.9	906	25	149	25	319	205.5	707
1999	270	0	431	20	9.7	758	17	45	7	432	208.0	771
2000	295	0	1,047	21	11.2	1,399	24	88	0	1,042	179.0	1,357
2001	186	45	600	25	13.4	901	27	69	0	1,394	165.0	1,738
2002	199	69	1,167	28	9.7	1,510	24	60	1	1,132	319.0	1,417
2003	262	224	1,639	27	6.0	2,221	26	43	0	2,074	541.0	2,282
2004	91	78	232	33	6.5	506	76	723	0	2,023	676.0	2,998
2005	69	26	864	40	22.5	1,054	52	351	0	2,659	621.0	3,286
2006	125	111	310	38	39.9	643	73	61	7	2,824	671.0	3,183
2007	134	307	492	46	16.6	1,032	49	10	4	3,082	838.0	3,237

자료출처: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통계자료.

*: 식물성 식용유.

3.3. 식량안보 차원에서 이룬 성과

신중국 성립 초기부터 중국 정부는 식량안보를 매우 중시하였으며, 국민경제 발전에 있어 농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 결과 이미 100%의 식량 자급을 실현한 바 있으며, 최근 10년간 중국의 식량 자급률은 기본적으로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07년 중국 식량 총생산량은 5.016억 톤으로써, 1인당 평균 점유량은 380kg이고, 1인당 평균 소비량은 388kg이다. 식량뿐만 아니라 기타 먹거리 소비도 날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중국 국민 1인당 매일 섭취하는 열량은 이미 세계 평균 수준을 초과한 상태이다. 중국이 식량안보 차원에서 이룬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식량 종합생산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였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국 농업생산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즉, 식량수급이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루었고, 연이은 풍년으로 인해 식량 재고량이 증가하였다. 1996년 식량작물 파종면적은 1억 1,323만 ha에 달했고, 생산량도 5.0억 톤을 넘어섰다. 그러나 1998년 이후 식량가격 하락과 식량작물 파종면적의 감소로 인해 식량 생산량이 대폭 감소하였다. 2003년 4억 3천 만 톤까지 감소한 식량 생산량은 중국 정부의 경지 보호, 최저수매가 실시, 세수 개혁, 직접지불제 도입, 재정투입 확대 등 일련의 정책조치를 통해 2007년 식량작물 파종면적은 1억 626만 ha까지 회복되었고, 식량 생산량도 5억 160만 톤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농업 생산조건이 점차 개선되었고, 식량 종합생산력도 계속 제고되었다. 2007년 전국 평균 식량 단수는 ha당 4,719kg, 이 중 곡물 단수는 ha당 5,296kg으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 식량 유통체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하였다

1998년부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립의 요구에 따라 중국 정부는 시장화를 목표로 하여 식량 유통체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시장 수급을 기초로 한 식량가격 형성시스템을 점차 건립하였고, 식량 수매시장을 개방하고 수매가격을 자율화함으로써 시장시스템은 식량자원 배분의 기본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개방적이고 경쟁적이며 질서 있는 식량 시장체제를 초보적 단계에서 구축함으로써 현물 교역이 한층 더 활발해졌을 뿐만 아니라 선물 교역도 점차 발전하였다.

3) 식량안보 정책지원체계를 건립하였다

《토지관리법》, 《농촌토지도급법》과 《기본농지보호조례》가 공포되어 일련의 체계적인 농경지 보호제도가 마련되었다. 4가지 농업세(농업세, 담배 이외의 농업특별세, 목축세와 도축세)를 없앴고, 식량직불금, 우량종자보조금, 농기계구매보조금과 농자재종합직불금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벼, 밀에 대하여 최저수매가 정책을 실시하여 식량 재배농가에 대한 보호시스템을 개선하였고, 식량의 시장가격을 안정시켰다. 중앙 재정의 “식량 위험기금”에 대한 보조 비율을 조정하고, 식량주산지 현(縣)에 대한 포상정책을 실시하여 식량주산지에 대한 이전지불 역량을 강화하였다.

4) 식량수급의 거시적 조정체계를 점차 개선하였다

“식량 성(省)장책임제”를 개선하여 성급 인민정부의 식량 생산과 유통 방면에서 책임을

한층 강화하였다. 중앙과 지방의 식량비축체제를 개선하고, 국유식량기업의 최저비축제도를 확립하여 국가의 식량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였다. 식량 수출입 품종에 대한 조절을 강화하여 식량 수급 총량의 균형을 촉진하였다. 식량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협력관계가 발전하였다. 국가 식량 긴급보장시스템을 초보적 단계에서 구축하였다. 《식량유통관리조례》와 《중앙비축식량관리조례》를 공포함으로써 법에 의거하여 식량을 관리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3.4. 식량안보의 당면 문제

최근 중국 식량생산 발전과 수급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지만, 공업화 및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중국 식량안보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식량의 지속적인 증산은 한계가 있고, 식량 무역에 있어 적자폭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대두의 수입량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인구 증가, 경작지 감소, 수자원 부족, 기후 변화, 에너지 부족, 국제시장의 수급 불균형 등의 요인으로 인해 중국의 식량안보는 더욱 커다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1) 소비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식량 총수요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추정에 따르면, 2010년까지 중국 국민 1인당 식량 소비량은 389kg이고, 식량 총수요량은 5억 2,500만 톤에 달한다. 2020년까지 1인당 식량 소비량은 395kg이 될 것이고, 총수요량은 5억 7,250만 톤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 중, 식용 식량 소비는 감소하고 있으며, 추정에 따르면, 2010년까지 총 식용 소비량은 2억 5,850만 톤으로 식량 총수요량의 49%를 차지할 것이다. 사료용 식량의 경우, 2010년까지 총수요량은 1억 8,700만 톤으로 식량 총수요량의 36%를 차지할 것이며, 2020년까지 2억 3,550만 톤에 달할 것이고, 식량 총수요량의 41%를 차지할 것이다.

식물성 식용유의 소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중국 국민 1인당 식물성 식용유 소비량은 17.8kg이고, 소비 총수요량은 2,410만 톤이 될 것이다. 2020년 1인당 소비량은 20kg이고, 소비 총수요량은 2,900만 톤이 될 것이다.

2) 경지면적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농업구조조정,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휴경,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과 비농업용 건설 등의

요인으로 인해 경지면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2007년 전국 경지면적은 1억 2,234만 ha로, 1996년에 비해 838만 ha가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74만 ha씩 감소하였다. 현재 전국 1인당 평균 경지면적은 0.09ha로 세계 평균수준의 40%에 불과하다. 토지의 사막화, 토양 퇴화, 토질 저하, 토양 오염 등의 문제도 심각한 상태이다.

3) 수자원이 매우 부족하다

현재 중국 1인당 수자원 점유량은 2,200m³로 세계 평균 수준의 28%에도 미치지 못한다. 농업용수 부족량은 연간 200여 억 톤에 달하고, 수자원 분포도 매우 불균등하다. 특히 중국 북방지역 수자원 부족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동북(東北) 및 황회해(黃淮海)지역의 식량 생산량은 전국의 53%를 차지하고, 상품 식량은 전국의 66%를 차지하지만, 흑룡강성 삼강평야(三江平原)와 화북평야(華北平原) 등 많은 지역에서 지하수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관개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삼강평야의 경우 최근 10년간 지하수 수위가 2~3m 낮아졌고, 일부 지역은 3~5m까지 낮아졌으며, 화북평야의 사정도 이와 마찬가지로 심각하다.

4) 식량수급의 지역적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

중국의 식량 생산의 중심이 북쪽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2007년 13개 식량주산지 성의 식량생산량은 전국 총생산량의 75%를 차지하였다. 그 중 하북성, 내몽고자치구,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산둥성, 하남성 등 7개 북방지역 주산지의 식량 생산량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36.2%에서 2007년 43.5%까지 증가하였다. 반면 강소성, 안휘성, 강서성, 호북성, 호남성, 사천성 등 6개 남방지역 주산지의 식량 생산량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36.0%에서 2007년 31.6%까지 감소하였다. 주소비지의 식량 생산 부족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북경시, 천진시, 상해시, 절강성, 복건성, 광둥성, 해남성 등 7개 주소비지의 식량 생산량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12.2%에서 2007년 6.3%까지 감소하였다.

5) 품종별 수급 차이가 크다.

밀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급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우량품종의 보급률이 낮은 편이다. 쌀의 경우 식용 식량 소비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남방지역의 논 면적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벼 재배 면적이 대폭 감소하고 있어 안정적 생산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옥수수의 경우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두의

경우 생산의 기복이 심하고, 수입의존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6) 식량 재배의 수익성이 저하되었다

최근 화학비료, 농약, 농업용 경유 등 농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농가의 식량 생산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식량 재배의 수익성이 떨어짐에 따라 비농업부문으로의 취업과 경제작물 재배면적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3.5. 식량안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

2008년 11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식량안보 중장기 계획의 구체적 내용이 담긴 《요강》을 발표하면서 2010년 1인당 식량 소비량이 389kg까지 증가하고, 2020년에는 395kg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경지면적, 식량 종합생산력, 곡물 종합생산력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식량작물 재배면적을 안정적 수준으로 확보한다. 2020년까지 1억 2,060만 ha 이상의 경지면적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본(절대) 농지면적의 감소를 억제하고 토질을 높인다. 전국 곡물 파종면적을 8,442만 ha 이상으로 유지하고, 이 중 벼 재배면적은 약 3,015만 ha 이상으로 유지한다. 유채, 땅콩 등 유지작물 파종면적도 약 1,206만 ha까지 회복한다.

둘째, 식량 등 중요 식품의 자급을 기본적으로 보장한다. 식량 자급률을 95% 이상으로 유지하고, 식량 종합생산력을 2010년까지 5.0억 톤 이상, 2020년까지 5.4억 톤 이상이 되도록 한다. 그 중 쌀, 밀은 완전 자급을 유지하고, 옥수수는 기본적으로 자급을 유지한다. 축산물, 수산물 등 중요한 식품도 기본적으로 자급을 유지하도록 한다.

셋째, 합리적인 식량비축 수준을 유지한다. 중앙과 지방의 식량비축 규모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한다. 비축식량의 품종구조를 합리화하고, 밀과 쌀의 비중을 70% 이상으로 한다.

넷째, 건전한 “4산화(四散化)” 식량유통체계를 구축한다. 분산 포장, 분산 출하, 분산 저장과 분산 운송을 특징으로 하는 “4산화” 현대 식량 유통체계의 발전을 가속화하여 유통비용을 줄이고 식량 유통 효율을 높인다. 2010년에 식량유통 “4산화” 비율을 30%까지 높이고 2020년에는 55%까지 높인다.

표 7. 국가식량안보 보장 주요 지표

구 분	지 표	2007년	2010년	2020년	속 성
생 산	경지면적(만 ha)	12,261	≥12,060	≥12,060	제약성
	그 중: 식량	7,504	>7,370	>7,370	기대성
	식량 파종면적(만 ha)	10,653	10,586	10,586	제약성
	그 중: 곡물	8,643	8,509	8,442	기대성
	식량 단위(kg/ha)	4,719	4,851	5,224	기대성
	식량생산량(억 톤)	5,016	≥5.00	>5.40	제약성
	그 중: 곡물	4.56	≥4.50	>4.75	제약성
	유지작물 파종면적(만 ha)	1,139	1,206	1,206	기대성
	초지면적(만 ha)	26,331	26,264	26,264	기대성
	육류 생산량(만 톤)	6,800	7,140	7,800	기대성
	가금육, 가금 알 생산량(만 톤)	2,526	2,590	2,800	기대성
	우유 생산량(억 톤)	3,509	4,410	6,700	기대성
수 급	식량자급률(%)	98	≥95	≥95	기대성
	그 중: 곡물	106	100	100	기대성
물 류	식량 물류 “4산화” 비중(%)	20	30	55	기대성
	유통단계 식량손실률(%)	8	6	3	기대성

자료: 《國家糧食安全中長期規劃綱要(2008-2020年)》

3.6. 식량안보를 위한 주요 과제

1) 식량 생산력을 높인다.

첫째, 농경지와 수자원 보호에 힘쓴다. 가장 엄격한 농경지 보호조치를 채택하여 전국 농경지 보유량을 1억 2,060만 ha 이상으로 유지하고, 절대농지 보유량을 1억 452만 ha 이상으로 유지하며, 이 중 논 면적은 3,183만 ha 이상으로 유지한다. 비농업 건설을 목적으로 한 농경지 점유를 엄격하게 통제하여 농경지의 빠른 감소 추세를 억제한다. 또한 토지의 이용을 집약화하고, 비옥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수자원 관리를 통해 충분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오염을 최소화한다.

둘째, 농업 기반시설 건설을 더욱 강화한다. 관개시설을 재정비 혹은 확충하여 농업 관개용수의 유효이용 계수를 2005년의 0.45에서 2010년까지 0.50으로 끌어올리고, 2020년에

는 0.55 이상으로 높인다. 중점 홍수피해지역의 배수처리장을 보수하여 식량주산지의 홍수 예방 능력을 제고한다. 토질개량사업을 통해 2010년까지 중·저 수준의 생산력을 가진 농지의 비중을 약 60%까지 낮추고, 2020년까지 약 50% 수준까지 낮춘다.

셋째, 식량 단수를 제고한다. 농업기술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핵심 농업기술 연구를 적극 추진하여 식량 단수를 크게 늘림으로써, 2010년 전국의 식량 단수 수준을 ha당 4,851kg까지 높이고, 2020년 까지 5,224kg 수준까지 높인다. 주요 식량작물의 우량 품종 보급률을 95% 이상으로 유지한다. 과학기술의 농업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연평균 1% 포인트씩 높인다.

넷째, 주산지의 식량 종합생산능력을 강화한다. 부존자원, 생산조건 및 증산 잠재력 등의 지표에 근거하여, 식량 생산의 지역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기능과 발전 목표를 명확히 한다. 우수 품종 육종기지를 조성하여 우선적으로 밀, 벼 등의 우수 품종을 확보하고 남방지역의 벼 생산을 안정화시키는 동시에, 동북지역의 중단립종 벼 생산을 확대한다. 식량주산지 성과 서부지역의 주요 식량 생산지에서 우수 품질 식량산업프로젝트, 대규모 상품식량 생산기지 조성 및 농업 종합개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다섯째, 농업 서비스체계를 구축한다. 식량 등 농작물 품종의 보호, 품종 개량, 개량 품종의 보급, 품질 검사 등 서비스 관련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한다. 식량 생산력 증진을 위한 중점사업으로 대규모 상품식량 생산기지 조성사업, 우수 품질 식량산업프로젝트, 바이오 육종사업, 종자사업, 농업 과학기술 보급 사업, 대규모 관개지역의 부대시설 건설과 절수를 위한 보수 사업, 대형 배수처리장 보수 사업, 건조지역 농업 생산·경영 시범사업, 식물보호 사업 등을 추진한다.

2) 비식량작물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

첫째, 식량 절약형 목축업을 발전시킨다. 사육 품종구조를 조정하고, 품질이 우수하고 효율이 높은 사료작물 재배를 점차 확대하여 절약형 초식가축 사육을 크게 발전시킨다. 각 지역에서 초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까지 전국의 초지면적을 26,264만 ha 이상으로 유지한다.

둘째, 수산양식업과 원양어업을 적극 발전시킨다. 내륙 담수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여 수산양식업을 확대하고, 근해 어업자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원양에서의 어획 규모를 확대한다.

셋째, 유지작물 생산을 촉진한다. 식량작물 생산을 우선 보장하는 기초위에서 대두, 유채 등 주요 유지작물의 생산을 확대하여 식물성 식용유의 자급률을 안정시킨다. 2010년까지 유

지작물의 단수를 2006년 대비 약 6% 가량 제고하고, 유지작물의 기름 함유율은 평균 2% 포인트 높인다. 특수 유지작물을 적극 개발하고, 참깨, 해바라기 등의 작물 생산을 확대하는 한편 면화씨를 식용유 생산에 충분히 이용한다.

넷째, 산지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동백나무, 올리브, 호두, 밤 등을 이용한 식용유 산업을 발전시키고 생산기지를 조성한다.

3) 식량과 유지작물 수급에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한다.

식량 수출입 무역체계를 개선한다. 국제시장을 적극 이용하여 국내 수급을 조절한다. 국내 식량 자급수준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전제에서 국제시장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수출입을 조절한다. 국유무역기업의 식량 수출입에서의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일부 중요 식량 생산국들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4) 식량 유통체계를 개선한다.

첫째, 식량 유통체계 개혁을 계속해서 심화한다. 현대적인 식량유통산업의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시장주체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국유식량기업의 개혁을 지속하는 한편 기업 간 합병 등을 추진하고 일부 국유식량기업(수매, 저장, 가공 등 일체화)을 중점 지원하여 식량 수매과정에서 계속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 식량 수매와 판매, 가공 등의 과정에서 대규모 기간기업(龍頭企業)으로 하여금 식량의 제약생산을 확대하도록 장려하고 농민전업합작사 등 농촌 중개조직을 적극 육성한다.

둘째, 시장시스템을 건전화한다. 주요 식량작물의 지역 및 전문 도매시장, 중대도시의 식량도매시장과 유지작물 도매시장을 건설하고 발전시킨다. 식량의 통일적인 배송과 전자상거래를 발전시킨다. 소도시의 식량 및 유지작물 공급망과 농촌시장을 적극 육성한다. 식량 선물시장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국유식량기업과 농민전문합작조직이 선물시장을 통해 리스크를 회피하도록 유도한다. 전국적으로 식량유통 정보망을 구축하여 인터넷 상에서의 식량 거래를 촉진한다.

셋째, 식량 물류체계 건설을 강화한다. 현대적인 식량 물류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한편 “4산화” 개혁을 추진한다. 전국적으로 식량 유통망 구축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동북 지역의 쌀 유출, 황회해(黃淮海)지역의 밀 유출, 장강 중하류지역 쌀 유출과 옥수수 유입, 화동(華東) 및 화남(華南)연해지역 식량 유입, 북경·천진지역 식량 유입 등 6대 지역 간 식량 유통망을 구축한다. 대규모 식량유통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철로와 해운을 연결하는 운송시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식량 집하-출하-운송 네트워크를 개선한다.

5) 식량 비축체계를 개선한다.

첫째, 식량 비축 통제체계를 개선한다. 중앙의 전략적 특별 비축과 조절용 주기성 비축을 상호 결합하고, 중앙 비축과 지방 비축을 상호 결합시키는 한편 정부 비축과 기업의 상업용 최저 비축을 상호 결합한 식량과 유지작물 비축 통제체계를 한층 더 개선하여 국가의 거시적 통제능력을 강화하고 국가 식량안보를 보장한다.

둘째, 비축지역 배치와 품종구조를 최적화한다. 중앙 비축식량과 유지작물의 지역적 배치를 점차 최적화하고, 주요 소비지역과 서부 식량 부족 지역 및 빈곤지역을 위주로 중점 배치한다. 밀과 쌀의 비축율을 70% 이상으로 유지하고, 쌀과 대두의 비축율을 제고하며, 중앙과 지방의 식물성 식용유 비축을 점차 확대한다.

셋째, 비축식량 관리시스템을 건전화한다. 중앙 비축식량의 수직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중앙 비축식량의 입고-방출의 순환시스템을 건전화한다. 소비지 비축식량의 순환과 생산지 식량 수매를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 식량 비축 환경을 개선하고, 식량 저장기술 수준을 높여 비축식량의 안전을 보장한다.

6) 식량 가공시스템을 개선한다.

첫째, 식량과 유지작물의 가공업을 규모화, 집약화 방향으로 발전시킨다. 식량과 유지작물의 부산물 이용을 촉진하여 자원 이용률과 부가가치 효과를 높인다. 식량과 유지작물 가공 기업으로 하여금 품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브랜드 개발에 힘쓰도록 하여 식량과 유지작물 가공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한다.

둘째, 사료가공업을 적극 발전시킨다. 사료 생산구조를 최적화하고, 사료배합기술을 개선하는 한편 농축사료, 보충사료 및 혼합사료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한다. 농축사료와 혼합사료의 비중을 높여 안전하면서 품질이 우수하고 효율이 높은 사료 생산체계를 구축한다. 사료의 생산에 벼짚과 옥수수대 등 농부산물을 적극 이용하여 사료 생산을 위한 식량 확보의 부담을 완화한다.

셋째, 식량 정제가공업을 발전시킨다. 식량안보를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서, 식량 정제가공업을 발전시킨다. 바이오 연료의 생산은 비식량작물을 이용한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식량을 원료로 한 정제가공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표 8. 식량안보 중점사업 계획 및 책임 부서 현황

중점 사업 계획	책임 부서	지원 부서
전국 식량 5천만 톤 증산 계획 (2009~2020년)	발전개혁위원회	농업부, 수리부(水利部), 교통운수부, 환경보호부
농경지보호와 토지정리 및 재개간 계획	국토자원부	관련 부서
수자원보호와 개발이용 계획	수리부	관련 부서
농업 및 식량 과학기술발전 계획	과기부	관련 부서
식량 절약형 축산업 발전 계획	농업부	관련 부서
유지작물과 식물성 식용유 발전계획	발전개혁위원회	농업부, 국가식량국, 공업·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 상무부, 임업국
현대 식량 물류 발전 계획	발전개혁위원회	국가식량국
식량비축체계 건설 계획	발전개혁위원회	국가식량국, 중국비축식량관리 총공사(中國儲備糧管理總公社), 재정부
식량 가공업 발전 계획	공업·정보화부	국가식량국, 농업부
주민의 과학적이고 건강한 식량 및 유지작 물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 조치	국가식량국	관련 부서

3.7. 식량안보를 위한 주요 정책 방향

앞으로 중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 1) 식량안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중앙과 지방의 식량안보 책임제를 도입하고, “식량성(省)장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 2) 생산자원을 엄격하게 보호한다. 성급 인민정부의 농경지 보호 책임제를 실시하여 농경지 보호 임무를 철저하게 수행하는 한편 절대농지의 감소와 용도 변경을 막고 토질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농경지뿐만 아니라 수자원과 초지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 3) 농업에 대한 과학기술의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다원화된 농업 과학기술연구 투자시스템을 만들어 농업기술 투자를 늘린다.
- 4) 투자 지원의 폭을 확대한다. 농업 기반시설을 강화하고, 국가 재정지출을 농업부문에 치중하고 농업과 농촌에 대한 투자의 폭을 확대하여 농민소득을 증대시킨다. 금융을 통한 농촌, 농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식량보조금 정책 및 식량위험기금 정책을 개선하고 식량 물류시설 건설에 투자를 확대한다.
- 5) 건전한 식량수급을 위한 거시조정을 실시한다. 식량 통계제도를 건전화하고, 식량 긴급

체제와 식량 유통산업정책을 개선하는 한편 식량 행정관리체계 건설을 가속화한다.

6) 식량 손실을 최소화하고 절약을 유도한다. 식량의 수매·저장 및 운송 방식을 개선하고, 농가에 식량 저장기술을 보급하여 식량 생산 후의 손실을 줄인다. 식량과 유지작물의 불합리한 가공 전환을 통제하여 식량의 종합이용률과 사료 전환효율을 높인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식사체계를 형성하여 국민의 생활 및 영양 수준을 높인다.

7) 식량 관련 법률체계를 구축한다. 《농업법》, 《토지관리법》, 《초원법》, 《식량유통관리조례》와 《중양비축식량관리조례》 등 법률 법규를 충실히 집행한다.

3.8. 결론 및 시사점

2008년 중국의 식량 총생산량은 5억 2,500만 톤에 달해 역사적인 대기록을 달성하였으며 동시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5년 연속 증산 기록도 달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식량 단수도 신중국 건국 이래 최초로 5년 연속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식량 생산의 대기록을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요강》을 발표하였다. 《요강》의 시행을 통하여 식량자급률을 95%이상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2010년까지 식량 생산능력을 5억 톤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2020년에는 5억 4천만 톤 이상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또한 국가 식량안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중앙과 지방의 식량안보 분담 책임제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식량안보 관리감독체계를 수립하는 한편 “식량 성(省)장책임제” 시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지속적으로 식량정책을 개선하고 각 지방과 부문을 동원하여 식량생산 발전을 위한 농민의 생산 적극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중국은 인구대국이다. 따라서 시대를 막론하고 중국의 위정자들에게 먹거리 문제는 늘 그 어떤 문제보다 최우선적인 문제였다. 중국 농업문제의 본질은 농산물의 수량문제와 품질문제라고 할 수 있다. 수량문제는 식량안보의 문제이고 품질 문제는 식품안전성의 문제이다. 중국은 이 두 가지 문제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경지면적이 부단히 감소하고 경지의 질적 저하도 부단히 진행되고 있다. 제한된 토지자원과 부족한 수자원의 제약 하에서 식량 증산을 이룩하려면 자원의 이용 효율을 제고시키고 단수를 높여야 하는데 관건은 바로 과학기술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중앙재정의 농업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응용 및 보급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인식하고 농업과학기술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식량문제를 비단 중국만의 문제로만 여길 수 없는 실정이다. 2007년과 2008년은

국제 식량가격의 폭등으로 세계 각국이 식량위기 발생에 대한 공포를 직접 경험한 해였다. 그런 세계적인 현상 속에서도 중국의 식량수급 상황은 매우 안정적이었다. 중국 정부의 식량 위기관리능력이 성공적으로 시험대를 통과한 셈이다. 중국의 식량수급이 불안정하였다면 과연 지난해 세계 식량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겠는가?

식량위기가 다시 도래한다면 중국도 식량안보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 정부가 《요강》을 발표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한 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하여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식량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로서는 중국의 식량수급 상황 여하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중국의 식량안보 확보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중국의 식량수급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작성자: 정정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장)

cgchung@krei.re.kr

지성태(중국인민대학 박사과정)

dongsimist@hanmail.net

[참고자료]

박준근, 구자옥, 김호. 2000. 『중국의 식량경제』. 전남대학교 출판부.

어명근, 정정길, 김배성, 이현주, 리경호. 2006. 『중국의 농산물수급 중장기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535.

정정길, 성명환. 2003. 『중국의 쌀 수급 현황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468.

中華人民共和國農業部. 2008. 『中國農業發展報告(2008)』.

國家發展改革委員會. 2008. 《國家糧食安全中長期規劃綱要(2008-2020)》.

宋洪遠. 2008. 『中國農村改革三十年』. 中國農業出版社.

翁鳴, 陳勁松等. 2003. 『中國農業競爭力研究』. 中國農業出版社.

Ⅱ. 농업·농촌경제 동향

1. 가격 동향

1.1. 2008.1~9월 생산자가격 동향

- 전국 31,000개 농가 및 농업경영체에 대한 농산물 생산자가격 조사 결과 2008년도 1~9월 농산물 생산자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19.1% 상승하였음.
 - － 경종작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의 생산자가격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12.3%, 12.1%, 31.3%, 12.8% 상승했음.
- 동 기간 식량작물의 생산자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12.3% 상승하였으며, 상승폭은 전년 동기대비 4.7% 포인트 증가했음.
 - － 분기별로 보면 1분기는 11.4%, 2분기는 12.6%, 3분기는 13.2% 상승하였음.
 - － 품종별로는 곡물 생산자가격이 8.5% 상승했으며, 밀, 쌀, 옥수수, 두류(대두), 서류의 생산자가격이 각각 전년 동기대비 9.1%, 7.6%, 9.3%, 35.6%(39.4%), 13.7% 상승했음.
 - － 지역별로 보면 식량 주산지(하북성, 내몽고자치구,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강소성, 안휘성, 강서성, 산둥성,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사천성 등 13개 지역)는 13.0%, 식량 주소비지(북경시, 천진시, 상해시, 절강성, 복건성, 광둥성, 해남성 등 7개 지역)는 12.3%, 기타 지역은 13.1% 상승했음.
- 식량 최저수매가격정책 시행 상황을 보면 3분기에 하북성, 강소성, 안휘성, 산둥성, 하남성, 호북성 등 6개 밀 주산지의 최저수매가격 평균은 kg당 1.56위안으로 2007년 봄은 밀, 혼합 밀의 최저수매가격보다 0.12위안이 높았음.
 - － 안휘성, 강서성, 호북성, 호남성, 광서장족자치구 등 5개 지역의 조생 장립종 쌀의 최저수매가격 평균은 kg당 1.88위안으로 2007년 보다 0.34위안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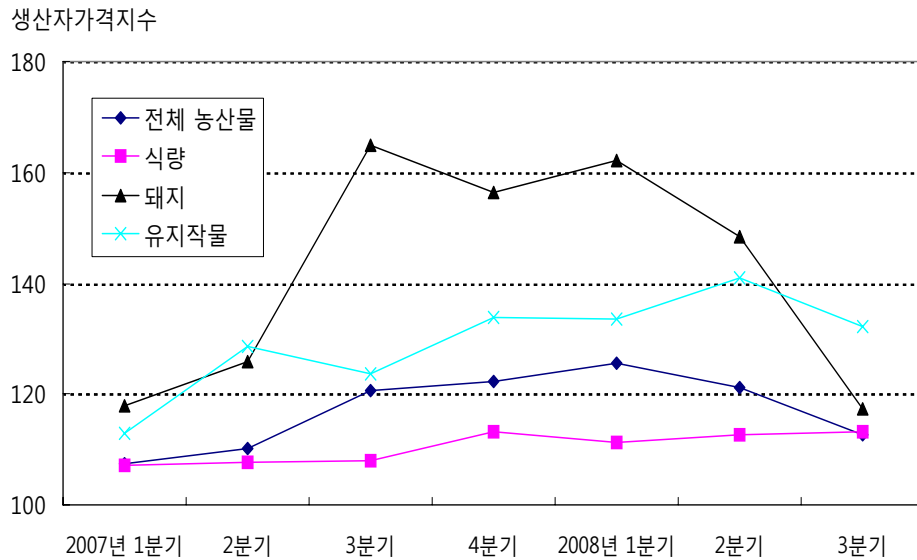
표 9. 농산물 생산자가격 지수, 2008년 1~9월

구 분		1~3월	4~6월	7~9월	1~6월	1~9월
전체 생산자가격지수		125.5	121.2	112.6	122.9	119.1
경종작물	경종작물 전체	114.8	113.3	110.0	113.8	112.3
	식량작물 전체	111.4	112.6	113.2	111.9	112.3
	곡물 전체	107.1	108.5	110.0	107.7	108.5
	밀	108.7	107.8	109.6	108.0	109.1
	벼	103.5	106.9	111.7	105.0	107.6
	옥수수	108.9	110.3	107.8	109.5	109.3
	두류 전체	136.5	135.9	132.9	136.3	135.6
	대두	140.1	139.8	136.5	140.0	139.4
	서류	113.0	115.9	110.8	114.4	113.7
	유지작물	133.4	140.1	132.2	136.9	134.4
	면화	112.2	112.1	100.6	112.2	110.3
	식용 당류	96.5	99.3	100.1	97.2	97.2
	담배	114.2	114.3	119.1	114.3	119.0
	채소	123.4	108.6	99.8	115.4	107.8
	과일	109.7	115.0	108.6	113.2	111.2
	차	108.9	84.2	75.6	88.4	84.0
임산물	임산물 전체	113.0	111.5	112.1	112.1	112.1
	목재	110.8	110.5	107.3	110.6	109.2
	죽재	113.4	108.8	108.5	111.1	110.4
	고무, 과일류	114.0	112.0	114.4	112.8	113.3
축산물	축산물 전체	144.9	135.2	115.9	139.8	131.3
	돼지	162.1	148.4	117.4	154.9	142.0
	소	137.3	130.8	121.6	134.4	128.6
	양	136.9	128.9	122.5	132.6	127.3
	가금	117.9	115.2	111.1	116.4	114.4
	계란	115.9	113.0	110.1	114.4	112.9
	유제품	136.8	131.7	124.7	134.0	130.8
수산물	수산물 전체	112.9	112.7	112.9	112.8	112.8
	해산물 전체	108.5	105.4	109.4	106.2	107.4
	해수어	114.6	106.6	111.7	108.4	109.6
	바다조개류	102.5	102.2	100.5	102.3	98.7
	담수산물 전체	116.9	119.5	116.2	117.8	117.2
	담수어	116.1	119.7	116.6	117.4	117.2
	민물게·가재류	130.7	115.2	109.8	123.4	112.1

주: 전년 동기=100

자료: 國家統計局農村司. 2008.11.23. “前三季農產品生產價格同比上漲19.1%”(http://www.stats.gov.cn)

그림 3. 주요 농산물 생산자가격 지수 변화 추이, 2007~2008.3분기



주: 생산자가격지수는 전년=100임.

- 면화 생산자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10.3% 상승하였으며, 상승폭은 전년 동기대비 1.6% 포인트 하락하였음.
- 분기별로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생산자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12.2%, 12.1%, 0.6% 상승하였음.
- 면화 주산지 중 신강위구르자치구 지역의 생산자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4.5% 상승했으며, 산둥성, 하남성, 허북성은 각각 12.4%, 13.2%, 10.5%, 호북성과 안휘성은 각각 8.0%, 3.8% 상승하였음.
- 유지작물 생산자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34.4% 증가했으며, 상승폭은 전년 동기대비 10.1% 포인트 증가하였음.
- 1분기, 2분기, 3분기 생산자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33.4%, 40.1%, 32.2% 상승하였음.
- 품종별로 보면 땅콩, 유채씨, 깨, 해바라기씨의 생산자가격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23.9%, 42.4%, 25.4%, 14.4% 상승하였음.

- 유지작물 주산지 가운데 하남성, 산둥성, 호북성, 사천성, 안휘성의 생산자가격은 각각 34.1%, 44.3%, 48.2%, 30.3%, 31.8% 상승하였음.
- 채소, 과일, 담배, 식용 당, 차의 생산자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7.8%, 11.2%, 19.0%, 2.8%, 16.0% 상승하였음.
- 돼지 생산자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42.0% 상승했으며, 상승폭은 전년 동기대비 1.9% 포인트 증가했음.
- 지역별로 보면 주산지 성(하북성, 요녕성, 강소성, 절강성, 안휘성, 강서성, 산둥성,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광둥성, 과서장족자치구, 중경시, 사천성, 운남성 등 15개 지역)의 생산자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45.8% 상승했고, 기타 지역은 39.4% 상승했음.
- 분기별로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생산자가격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62.1%, 48.4%, 17.4% 상승했으며, 상승폭은 점차 감소하였음.
- 소 생산자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28.6% 상승했으며, 상승폭은 전년 동기대비 17.2% 증가했음.
- 분기별로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생산자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37.3%, 30.8%, 21.6% 상승했으며, 상승폭이 점차 감소하였음.
- 양 생산자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27.3% 상승했으며, 상승폭은 전년 동기대비 13.5% 증가했음.
- 가금류, 가금의 알, 유제품의 생산자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14.4%, 12.9%, 30.8% 상승하였음.
- 수산물의 1분기, 2분기, 3분기 생산자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12.9%, 12.7%, 12.9% 상승하였음.
- 품종별로 보면 해산물 생산자가격은 7.4% 상승하였으며, 이 가운데 해수어는 9.6% 상승한 반면 조개류는 1.3% 하락하였음.
- 담수어 생산자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17.2% 상승했으며, 이 가운데 계·새우류는 12.1% 상승하였음.

1.2. 2008년 4/4분기 도매시장가격

□ 쌀

- 2008년 10월 조생 장립종 쌀(조곡) 수매가격은 톤 당 1,861위안으로 전월 대비 1.2% 하락했으나 전년 동기대비 17.4% 상승했음. 만생 장립종 쌀(조곡) 수매가격은 톤 당 1,842위안으로 전월 대비 3.4% 하락했으나 전년 동기대비 12.2% 상승했음. 중단립종 쌀(조곡) 수매가격은 톤 당 1,853위안으로 전월 대비 5.9% 하락했으나 전년 동기대비 7.1% 상승했음.
- 2008년 12월 조생 장립종 쌀 전국 평균 수매가격은 톤 당 1,803위안으로 전월 대비 0.9% 하락했으나 전년 동기대비 13.7% 상승했음. 만생 장립종 쌀 수매가격은 톤 당 1,860위안으로 전월 및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4%, 13.3% 상승했음. 중단립종 쌀 수매가격은 톤 당 1,788위안으로 전월 대비 0.4% 하락했으나 전년 동기대비 8.9% 상승했음.
- 2008년 10월 조생 장립종 쌀(정곡) 도매시장 가격은 톤 당 2,679위안으로 전월 대비 1.0% 하락했으나 전년 동기대비 11.5% 상승했음. 만생 장립종 쌀(정곡) 도매시장 가격은 톤 당 2,904위안으로 전월 대비 0.3%, 전년 동기대비 13.4% 상승했음. 중단립종 쌀(정곡) 도매시장 가격은 톤 당 3,079위안으로 전월 대비 1.6% 하락했으나 전년 동기대비 7.7% 상승했음.
- 2008년 10월 만생 장립종 쌀(정곡) 도매시장 가격은 톤 당 2,904위안에 비해 동 기간 태국산 가격은 톤 당 4,003위안으로 중국산에 비해 37.9% 높게 형성되었음. 운송비와 보험 및 관세 등을 포함하면 톤 당 4,843위안으로 중국산에 비해 1,939위안 높게 형성되었음.
- 2008년 11월 만생 장립종 쌀(정곡) 도매시장 가격은 톤 당 2,863위안으로 전월 대비 0.8% 하락했으나 전년 동기대비 11.8% 상승했음. 중단립종 쌀(정곡) 도매시장 가격은 톤당 2,902위안으로 전월 대비 2.8% 하락했으나 전년 동기대비 7.5% 상승했음.
- 2008년 11월 태국산 만생 장립종 쌀(정곡) 가격은 톤 당 3,202위안으로 중국산에 비해 11.8% 높게 형성되어 10월에 비해 가격차이가 760위안 축소되었음. 운송비와 보험

및 관세 등을 포함하면 톤 당 3,926위안으로 중국산에 비해 1,063위안 높음.

- 쌀 가격의 계절적 특성을 보면 매년 12월 쌀 가격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지 않았음. 그러나 2008년 12월 조생 장립종 쌀(정곡) 전국 도매시장 평균 가격은 톤 당 2,686위안으로 전월 대비 0.3% 하락했으나 전년 동기대비 11.8% 상승했음. 만생 장립종 쌀(정곡) 도매시장 가격은 톤 당 2,826위안으로 전월 대비 0.8%, 전년 동기대비 10.3% 상승했음. 중단립종 쌀(정곡) 도매시장 가격은 톤 당 2,965위안으로 전월 대비 0.5% 하락했으나 전년 동기대비 3.7% 상승했음.
- 2008년 12월 태국산 만생 장립종 쌀(정곡) 가격은 톤 당 3,127위안으로 중국산에 비해 10.7% 높게 형성되어 11월에 비해 가격차이가 19위안 축소되었음. 운송비와 보험 및 관세 등을 포함하면 톤 당 3,839위안으로 중국산에 비해 35.8% 높게 형성됨.

□ 밀

- 5년 연속 밀 생산 증가로 총공급량은 충분한 상태이지만 생산비 증가, 최저수매가격의 인상 등으로 수매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음.
- 국유식량기업의 흰 밀, 붉은 밀, 혼합 밀의 6월과 9월 수매가격은 각각 톤 당 1,512위안에서 1,680위안, 1,466위안에서 1,530위안, 1,438위안에서 1,564위안으로 상승하였음.
- 2008년 10월 20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09년도 3등급 기준 흰 밀, 붉은 밀, 혼합 밀의 최저수매가격을 2008년 대비 톤 당 각각 200위안, 220위안, 220위안 인상한 1,740위안, 1,660위안, 1,660위안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음.
- 정주식량도매시장의 톤 당 보통 밀 가격은 5월 1,590위안에서 10월 1,670위안으로 상승했고, 고품질 밀 가격은 동 기간 1,640위안에서 1,840위안으로 상승했음.
- 2008년 11월 중등급 밀의 전국 소매시장 가격 평균은 톤 당 1,704위안으로 전월 대비 2.1% 하락하였으나 전년 동기대비 7.6% 상승하였음.
- 정주식량도매시장의 톤 당 보통 밀 가격은 1,698위안으로 전월 대비 1.7%, 전년 동기

대비 8.6% 상승했고, 고품질 밀 가격은 1,865위안으로 전월 대비 1.4%, 전년 동기대비 11.8% 상승했음.

- 2008년 12월 중등품 밀의 전국 소매시장 가격 평균은 톤 당 1,710위안으로 전월 대비 0.4%, 전년 동기대비 7.2% 상승하였음.
- 정주식량도매시장의 톤 당 보통 밀 가격은 1,765위안으로 전월 대비 4.0%, 전년 동기대비 10.0% 상승했고, 고품질 밀 가격은 1,945위안으로 전월 대비 4.1%, 전년 동기대비 14.3% 상승했음.

□ 옥수수

- 10월 이후 옥수수 주산지인 동북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일조량이 풍부하여 옥수수 수확에 유리한 기후조건이었음. 전체적으로 올해 옥수수 생산은 재배면적이 다소 줄었지만 양호한 기후조건으로 옥수수 단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하여 생산량도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몇 년 동안 옥수수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한데다 올해 수출량이 대폭 감소하여 시장 공급량이 증가하였음.
- 햇옥수수가 시장에 공급된 이후 지난 2년 동안 가격이 상승했던 것과는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였음. 옥수수 주산지의 톤 당 도매시장 가격은 1,600위안으로 전월 대비 2.0% 하락하였고, 전년 동기대비 4.1% 상승하였음. 한편 주소비지의 톤 당 도매시장 가격은 1,875위안으로 전월 대비 2.0% 하락하였고, 전년 동기대비 5.3% 상승하였음.
- 11월 들어 옥수수 가격은 더욱 하락하여 길림성, 흑룡강성, 내몽고자치구의 고차가공용 옥수수(14% 표준수분 함유)의 톤 당 수매가격은 각각 1,400위안, 1,380위안, 1,420위안으로 국가의 임시수매가격보다 100위안, 전년 동기대비 40~60위안이 낮았음.
- 11월 상순 옥수수 주산지의 톤 당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1,572위안으로 전월 대비 0.8% 하락하였고, 전년 동기대비 2.4% 상승하였음.
- 11월 중순 옥수수 주산지의 톤 당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1,566위안으로 전월 대비 0.4% 하락하였고, 전년 동기대비 0.2% 상승하였음.

- 11월 하순 옥수수 주산지의 톤 당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1,557위안으로 전월 대비 1.7% 하락, 전년 동기대비 2.9% 하락하였음.
- 11월 옥수수 수매가격과 도매시장 가격이 2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동기대비 하락한 이후 12월에는 하락폭이 더욱 커졌음.
- 옥수수 주산지의 톤 당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1,453위안으로 전월 대비 5.4% 하락, 전년 동기대비 7.9% 하락하였음.
- 옥수수 주소비지의 톤 당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1,670위안으로 전월 대비 6.2% 하락, 전년 동기대비 14.0% 하락하였음.

□ 대두

- 10월 대두, 대두유 및 대두박의 가격이 모두 대폭 하락하여 지난해 10월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었음. 10월 하순 정부의 임시 수매비축계획의 영향을 받아 주산지의 대두 수매가격이 다소 상승하였으나, 주소비지의 가격 상승폭은 미미하였음.
- 흑룡강성의 착유용 대두의 수매가격은 톤 당 3,382위안으로 전월 대비 16.3%, 전년 동기대비 10.3% 하락하였음.
- 산둥성의 4등급 대두유의 공장도가격은 톤 당 8,783위안으로 전월 대비 21.6% 하락하였으나 전년 동기대비 2.9% 상승하였음.
- 산둥성 중등품 대두박의 공장도가격은 톤 당 3,955위안으로 전월 대비 13.6% 하락하였으나, 전년 동기대비 43.8% 상승하였음.
- 정부의 대두 수매비축정책의 영향으로 11월 상순 대두 주산지의 수매가격이 다소 상승하였으나 11월 중순부터 대두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12월에도 하락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음.
- 11월 상순 흑룡강성의 톤 당 수매가격은 최고 3,720위안으로 전월 대비 8.1% 증가했으나 11월 하순 대두가격은 톤 당 약 3,500위안으로 10월 하순의 약 3,700위안에 비해 5.4% 하락하였음.
- 12월 흑룡강성의 착유용 대두의 수매가격은 톤 당 3,338위안으로 전월 대비 8.1%, 전

년 동기대비 22.1% 하락하였음.

- 12월 산동성의 국산 대두 수매가격은 톤 당 3,410위안으로 전월 대비 9.6%, 전년 동기대비 24.6% 하락하였음.
- 12월 산동성의 4등급 대두유의 공장도가격은 톤 당 6,820위안으로 전월 대비 2.6%, 전년 동기대비 34.7% 하락하였음.
- 12월 산동성 중등품 대두박의 공장도가격은 톤 당 3,054위안으로 전월 대비 9.4%, 전년 동기대비 18.2% 하락하였음.

표 10. 채람자 상품의 도매시장 가격, 2008.10~11월

구분	도매시장 가격(위안/kg)		증감율(%)	
	2008.11	2008.10	전월 대비	전년 대비
돼지고기	16.7	17.4	-4.2	-13.3
소고기	28.7	28.6	0.2	23.2
양고기	29.7	29.8	-0.3	15.9
계란	6.4	6.9	-6.8	-0.6
해수어	16.4	16.2	1.1	7.2
담수어	9.5	10.0	-4.7	21.3
과채류	2.2	1.8	22.3	-22.6
엽채류	1.1	1.4	-20.4	-25.2
과일	3.6	3.5	4.8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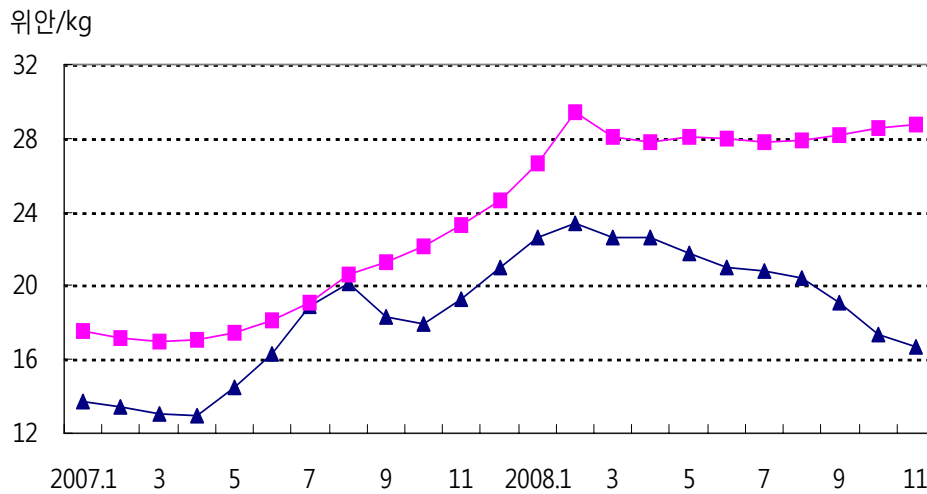
자료: 農業部. 2008.12.31. “2008年11月份“菜籃子”產品批發市場價格動態分析”

□ 육류

- 11월 기온 하락으로 육류 소비수요가 다소 증가했으나 돼지고기의 공급량이 충분하여 시장가격은 하락 추세를 유지하였음. 그러나 하락폭은 10월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음.
- 11월 돼지고기 도매시장 가격은 kg당 16.7위안으로 전월 대비 4.2%, 전년 동기대비 13.3% 하락하였음.
- 성별로 보면 돼지고기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하남성으로 kg당 23.4위안이었으며, 다음으로 호북성이 23.2위안이었음. 두 지역 모두 전월 대비 각각 0.09%, 0.54% 하락하였음.

- 대부분의 지역에서 11월 돼지고기 가격은 하락 추세를 유지하였으며, 하락폭이 가장 큰 지역은 안휘성으로 전월 대비 10% 포인트 하락하였음. 돼지고기 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섬서성과 북경시로 모두 kg당 15위안 이하였음.

그림 4. 돼지고기, 소고기의 도매시장가격 변화 추이, 2007~2008.11



자료: 農部. 2008.12.31. “2008年11月份“菜籃子”產品批發市場價格動態分析”

- 2008년도 소고기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7, 8월 소폭 하락한 이후 9월 이후 다소 상승하는 추세임.
- 11월 소고기 도매시장 가격은 kg당 28.7위안으로 전우려 대비 0.23% 하락했으나, 전년 동기대비 23.2% 상승했음.
- 성별로 보면 11월 소고기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저장족자치구로 kg당 36.9위안이었으며, 다음으로 운남성, 호남성, 호북성, 감숙성, 신장위그루자치구도 kg당 30위안 이상의 높은 가격을 나타냈음. 상해시는 소고기 가격이 가장 낮아 톤 당 20.4위안으로 전월 대비 18.4%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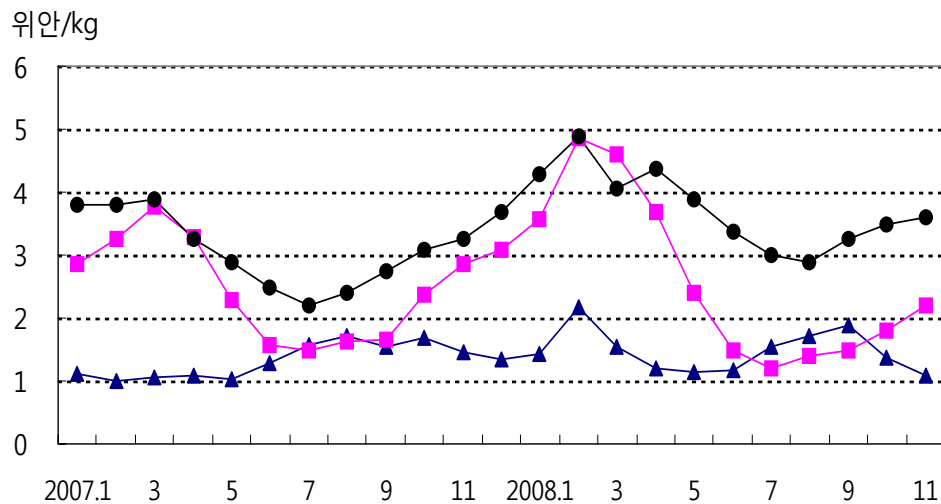
□ 채소류

- 11월 엽채류 가격은 kg당 1.1위안으로 전월 대비 20.4%, 전년 동기대비 25.2% 하락하

였음. 이 가운데 배추, 셀러리, 시금치, 청경채 가격은 kg당 각각 0.52위안, 1.28위안, 1.56위안, 1.15위안으로 전월 대비 각각 32.8%, 14.7%, 27.1%, 10.8%, 전년 동기대비 각각 36.8%, 20.3%, 26.0%, 23.4% 하락하였음.

- 성별로 보면 복건성이 가장 높은 kg당 3.6위안으로 전월 대비 6.3% 하락하였음. 하남성은 가장 낮은 kg당 0.47위안으로 전월 대비 53.2% 하락하였음. 산둥성과 하북성의 가격도 kg당 0.69위안과 0.58위안으로 매우 낮았음.

그림 5. 업체류, 과채류 및 과일의 도매시장가격 변화 추이, 2007~2008.11



자료: 農業部. 2008.12.31. “2008年11月份“菜籃子”產品批發市場價格動態分析”

- 11월 과채류 가격은 kg당 2.23위안으로 전월 대비 22.3% 상승하였으나 전년 동기대비 22.6% 하락하였음. 이 가운데 토마토, 콩코투리, 오이, 가지, 청고추 가격은 kg당 각각 1.79위안, 3.46위안, 2.16위안, 1.96위안, 2.12위안으로 전월 대비 각각 2.07%, 37.5%, 17.3%, 26.4%, 32.4% 상승했으나, 전년 동기대비 각각 15.0%, 16.2%, 15.7%, 30.5%, 32.5% 하락하였음.
- 성별로 보면 복건성과 신강위그루자치구가 가장 높은 kg당 3.2위안과 3.1위안으로 모두 전월 대비 상승하였음. 전체 성(자치구, 시) 가운데 90% 이상이 전월 대비 10% 이상의 상승폭을 나타냈음. 하남성이 가장 낮은 kg당 1.7위안을 나타냈으나 이는 전월 대비 17.6% 상승한 가격임.

□ 과일

- 11월 과일 가격은 kg당 3.64위안으로 전월 대비 4.8%, 전년 동기대비 11.3% 상승하였음. 이 가운데 수박, 배(鴨梨), 사과(부사 품종),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가격은 kg당 각각 2.81위안, 1.89위안, 3.75위안, 3.72위안, 11.0위안, 2.92위안을 나타냈음.
- 수박, 바나나, 망고 가격은 전월대비 각각 40.9%, 7.8%, 13.3% 상승했으며, 배, 사과, 파인애플 가격은 각각 3.3%, 5.1%, 8.0% 하락하였음.
- 바나나와 망고 가격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27.6%, 17.7% 상승하였으며, 나머지 과일은 전년 동기대비 모두 하락하였으며 평균 가격 하락폭은 약 4% 정도임.

[참고자료]

- 國家統計局農村司. 2008.11.23. “前三季農產品生產價格同比上漲19.1%”
- 農業部. 2008.12.31. “2008年11月份“菜籃子”產品批發市場價格動態分析”
- 農業部. 10~12월 “稻米市場監測信息”
- 農業部. 10~12월 “小麥市場監測信息”
- 農業部. 10~12월 “玉米市場監測信息”
- 農業部. 10~12월 “大豆市場監測信息”

2. 소득 동향

- 전국 31개 성·자치구·시 6.8만 호의 농촌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8년도 1~9월 농촌주민 1인당 평균 현금소득은 3,971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9.6% 증가했음.

표 11. 도시 및 농촌주민의 1인당 소득과 격차, 1978~2008.9

연 도	1인당 주민 소득(경상가격, 위안)		소득격차	
	농촌(A)	도시(B)	절대(B-A)	상대(B/A)
1978	133.6	343.4	209.8	2.57
1980	191.3	477.6	286.3	2.50
1985	397.6	739.1	341.5	1.86
1990	686.3	1,510.2	823.9	2.20
1995	1,577.7	4,283.0	2,705.3	2.71
2000	2,253.4	6,280.0	4,026.6	2.79
2001	2,366.4	6,859.6	4,493.2	2.90
2002	2,475.6	7,702.8	5,227.2	3.11
2003	2,622.2	8,472.2	5,850.0	3.23
2004	2,936.4	9,421.6	6,485.2	3.21
2005	3,254.9	10,493.0	7,238.1	3.22
2006	3,587.0	11,759.5	8,172.5	3.28
2007	4,140.0	13,786.0	9,646.0	3.33
2008.1~9	3,971.0	11,865.0	7,894.0	2.99

주: 도시주민 소득은 가처분소득을 나타냄.

자료: 國家統計局國民經濟綜合統計司編. 2005. 『新中國五十五年統計資料匯編』. 中國統計出版社; 國家統計局編. 2007. 『2007中國統計年鑒』.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 동 기간 농민 1인당 평균 현금소득 중 임금소득은 1,358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9.2% 증가했음.
- 동 기간 농민 1인당 평균 현금소득 중 농산물 판매소득은 1,760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9.9% 증가했음.

- 이 중 경종작물의 판매소득은 945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6.1% 증가했고, 임산물 47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1.9%, 축산물 708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7.1%, 수산물 60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9.1% 증가했음.
- 동 기간 농민 1인당 평균 현금소득 중 자산소득은 101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0.2% 증가했고, 이전소득은 245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42.4% 증가했음.

[참고자료]

國家統計局國民經濟綜合統計司編 2005. 『新中國五十五年統計資料匯編』. 中國統計出版社
國家統計局編 2007. 『2007中國統計年鑒』. 中國統計出版社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3. 향진기업 동향

3.1. 기본 현황 및 특징

- 2008년도 1~7월 전국 향진기업의 부가가치 총액은 4조 5,70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하였으며 증가폭은 전년 동기대비 1.99% 포인트 하락하였음.
- 이 중 공업부문 부가가치는 3조 2,12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1.4% 증가하였고 증가폭은 전년 동기대비 2.03% 포인트 하락하였음.
- 2008년도 1~7월 전국 향진기업의 총 매출액은 18조 7,057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1.4%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전년 동기대비 2.01% 포인트 하락했음.
- 동 기간 이윤 총액은 1조 1,680억 위안으로 11.7%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전년 동기대비 1.95% 포인트 하락했음.
- 동 기간 납세 총액은 4,902억 위안으로 12.4%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1.64% 포인트 하락했음.
- 동 기간 수출 총액은 1조 9,14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5.3%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전년 동기대비 3.2% 포인트 하락했음.
- 동 기간 근로임금 지불 총액은 9,06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1.8% 증가하였고 증가폭도 전년 동기대비 0.04% 포인트 증가했음.
- 2008년도 1~7월, 전국 향진기업 중 제3차 산업의 부가가치 총액은 1조 46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2.8% 증가했음.
- 향진기업 부가가치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동기 22.1%에서 22.9%로 증가하였음.

3.2. 문제점과 주요 제약요인

- 2007년 이후 향진기업의 대출 비용이 상승하여 은행결제어음할인률이 2007년 초

- 2.3%에서 2007년 말에는 9%로 상승하였으며 현재도 5% 이상의 높은 할인율을 나타내고 있음. 또한 대출 이자율이 33% 상승하였음.
- 중앙은행이 화폐 긴축정책을 실시한 이래 중소기업이 은행 대출을 받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으며, 일부 향진기업은 유동자금이 부족하여 부득이 사금융을 대출 받고 있는 실정임. 사금융은 대출 이자가 높고 규범화 되지 않는 등 위험이 존재하고 있어 자금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많은 향진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임.
-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는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주요국의 소비 수요에 영향을 미쳐 중국의 방직, 제화, 피혁, 가구 등 제품의 수출이 크게 감소했으며 모두 10% 이하의 증가율을 나타냈음.
- 2008년 1~7월 동안 방직업의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8.1% 증가하였음. 이 중 복장, 제화, 모자 제조업의 수출은 5.3% 증가했으며, 피혁, 피모, 깃털 및 그 제품은 3.0%, 가구제조업은 4.2% 증가했음.
 - 그러나 전체 공업부문의 수출 증가폭(16.3%) 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며, 이들 4대 업종의 수출판매액이 향진기업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에 달하고 있음.
 - 주요 수출지역인 절강성 중소기업의 수출판매액이 전년 동기대비 12.0% 증가했으나 성장폭은 전년 동기대비 10.7% 감소하였음. 강소성 사영기업은 전년 동기대비 41.5%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20.4% 감소했음.
 - 수요 감소 및 계약 감소 등의 이유로 강소성, 절강성, 광둥성 등지의 복장, 제혁, 가구기업이 집중된 지역의 일부 향진기업이 손실을 입었거나 또는 파산하였음.
- 자금난과 수요 감소 등으로 향진기업의 발전이 제약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제도를 제정하고, 사금융 대출을 규범화함으로써 향진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내수 확대 및 주민 소비수준을 제고하고 향진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여 외부 수요 위축으로 인한 피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農業部鄉鎮企業局. 2008.8.28. “2008年1-7月全國鄉鎮企業經濟運行情況”

4. 고추 및 마늘시장 동향²²

4.1. 고추시장 동향

가. 산지 동향

- 2008년산 중국 고추 재배면적이 2007년산보다 10% 내외 증가하였고 기상여건 호조로 작황도 좋아 2008년산 고추 생산량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 황하 상류지역에 위치한 청해성 귀덕(貴德)지역은 일조량이 풍부하여 양질의 고추 생산에 매우 적합한 기후 조건을 가짐. 고추 재배면적은 200ha임. 9월부터 2008년산 고추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일일 판매량은 60톤, 판매액은 7.2만 위안임.
 - 이 지역에서는 7월 부터 서녕시와 청남지역의 채소도매시장과 협상을 체결하여 고추를 납품하였음. 서녕시의 건고추 일일 출하량은 40톤, 귀남, 동덕, 청남지역은 20톤 정도임.
- 신강지역의 러푸후(乐普湖)현의 2008년산 고추 재배면적은 2,000ha로 2007년산보다 5% 증가하였음. 2008년산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증가한데다 기상여건 호조로 2007년산보다 10% 이상 증가하였음.
 - 러푸후현은 2008년에 처음 고추 재배를 시작한 신규 지역이고 한국으로 수출가능한 건고추를 생산하여 판매할 계획임.
 - 10a당 수확량은 홍고추 3톤이고, 이를 건고추로 가공하면 10a당 약 1.1톤이 생산됨. 10a당 소득은 6,000위안 내외임.
- 운남성 선위(宣威)시 열수(熱水)진에서는 건고추의 대 한국 수출을 목적으로 건고추 가공기업과 계약재배를 실시함. 계약재배 면적은 335ha임. 10a당 생산량은 3톤이고, 10a당 소득은 3,600위안임.

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채소관측팀(신용광, 박영규, 윤종열)이 해외모니터 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자료임.

- 가공업체와의 계약조건은 kg당 1.2위안이고, 업체는 농가들의 10a당 소득을 3,000위안으로 보장함.
- 강소성의 유기식품기지인 동해(東海)현의 유기식품시험원은 2008년에 처음으로 고추를 5ha 재배하였음. 이 지역에서는 냉동고추 제조에 쓰이는 금탑 품종을 재배함.
- 석주(石柱)현의 2008년산 고추 재배면적은 16,750ha이고 생산량은 20만 톤으로 2007년산보다 각각 55.5%와 23.5% 증가한 수준임. 한편, 2009년에는 이 지역 고추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정되면서 생산 기반 확대 뿐만 아니라 가공시설 도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최근 중국에서는 신농촌 건설을 추진하면서 1지역 1품목을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고추산업이 특정 지역의 주도산업으로 각광받는 사례가 늘고 있음. 하남성 사기(社旗)현도 고추산업을 적극 발전시켜 현 내에 10개 고추거래시장을 건설하였고, 62개의 고추협회가 설립되었음.

나. 가격 동향

- 고추 주산지인 준의(遵義)지역은 2008년산 고추생산량 증가로 산지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음.
- 2008년산 건고추 산지가격은 kg당 1.0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69% 하락하였음. 신선고추 산지가격도 출하 초기 kg당 1.3위안에서 최근 0.8위안까지 하락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대비 60% 낮은 수준임.
- 4/4분기 귀주성의 건고추 kg당 산지가격은 3/4분기보다 14% 하락한 8.2위안임. 이는 2008년산 고추 생산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단경기에도 이러한 가격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4/4분기 건고추 kg당 도매가격은 작년보다 60% 하락한 12위안임. 이는 2008년산 고추 재배면적이 증가한데다 기상여건 호조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 북경 시장의 4/4분기 홍고추 kg당 도매가격은 5.1위안으로 작년보다 32% 낮고, 산동 시장의 홍고추 kg당 도매가격도 작년보다 59% 낮은 1.9위안임.

표 12. 4/4분기 고추 도매가격

단위: 위안/kg

	북경 시장	산둥 시장
2008	5.1	1.9
2007	7.5	4.6
증감률	-32%	-59%

주: 가격은 홍고추 상품 기준임.

다. 국내 도입가격

- 4/4분기 중국산 건고추 국내 도입가격은 600g당 5,300원, 도매가격은 5,800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3% 높은 수준임.
- 이는 2008년산 중국 익도산 고추 생산량 증가로 산지가격이 작년보다 낮지만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수입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임. 향후 건고추 도입가격은 고환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강세가 전망되며 이로 인해 수입량은 감소할 전망이다.
- 한편, 4/4분기 냉동고추 민간 수입 가능가격은 600g당 563원, 가공 후 국내 판매 원가(국내 도입가격)는 4,000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53%, 37% 높은 수준임. 냉동고추 산지 수매량은 작년과 비슷하지만 환율 상승으로 계약포기가 많이 이루어져 수입량은 당분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4.2. 마늘시장 동향

가. 가격 동향

- 9월 마늘 가격은 수집 상황과 선물시장의 영향으로 등락이 심하였으나 10월부터는 다소 안정세를 찾았음.
- 금향 지역 kg당 햇마늘 시세는 최고 1.1위안, 최저 0.5위안이었으며, 저장마늘 시세는 최고 1.3위안, 최저 0.9위안이었음.

- 특히, 피주지역의 마늘 최고가격은 kg당 1.6위안에도 거래되었음.
- 10월 말까지 산지 마늘 수매작업이 마무리된 가운데 시장가격은 생산량 과잉에 따른 저장량 증가로 하락하였고, 대량 저장에 따른 부패율 증가로 품질도 좋지 않았음. 이로 인해 마늘시장의 수급불균형이 발생했으며 11월까지 가격 하락이 지속되었음.
- 시장 출하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1~12월 마늘 출하 성수기가 종료 단계에 접어들면서 시장가격은 여전히 낮게 유지되었음.
- kg당 12월 도매가격은 0.8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표 13. 마늘 도매가격 비교

단위: 위안/kg

구분		북경시 신발지(新發地)시장	산둥성 수광(壽光)시장
10월	금년	0.95	0.80
	작년	1.60	1.00
	2006	4.00	4.00
	작년대비 증감률	-40.6	-20.0
11월	금년	0.85	0.80
	작년	1.00	0.80
	2006	5.10	4.00
	작년대비 증감률	-15.0	0.0
12월	금년	0.85	0.80
	작년	1.00	1.78
	2006	5.10	4.60
	작년대비 증감률	-15.0	-55.1

자료: 농업부 정보센터, 중국채소망.

- 2008년 중국 마늘 가격 변화 추이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음.
- kg당 마늘 가격은 1월 초 4.0위안에서 2월 0.4위안, 3월 0.3위안으로 급락하였음.
- 하락세를 보이던 마늘 가격은 7월 중순부터 다소 회복되면서 0.6위안까지 상승했지만

전년 동기보다는 여전히 57% 낮은 수준이었음.

- 10월부터 신선마늘이 출하됨에 따라 가격은 11월 초에 소폭 상승하였지만 12월에 다시 하락세로 반전하였음. 12월 신선마늘 도매가격은 kg당 0.8위안임.

나. 수출 동향

- 최근 중국 신강지역에서 마늘 30톤(3만 6천 달러)을 타지키스탄에 수출하였음. 채소주 산지인 신강지역은 타지키스탄과 운송거리가 짧아 수출이 용이한 지역임. 따라서 향후 수출 물량도 확대될 전망이다.

표 14. 2008년산 산동성 금향지역 깐마늘, 찐마늘 수출가격

단위: 위안/톤

명칭/항목		규격	기술지표	가격(청도FOB)	포장방식
깐마늘	껍질 있는것	L급	100-300알/kg	\$650/MT	10*1kg/CTN
		S급	300알/kg 이상	\$600/MT	10*1kg/CTN
	껍질제거	LL급	100-160알/kg	병포장 \$750/MT 10*1kg \$660/MT	10*1kg/CTN 병포장4*5LBS/CTN
		L급	161-220알/kg		
		M급	221-280알/kg		
		S급	281-350알/kg	내수시장용	20kg/目 팩
		SS급	350알이상/kg		
	냉동	L급	100-300알/kg	RMB800/MT	10*1kg/CTN
		S급	300알 이상/kg		
	탈취	L급	100-300알/kg	협의	10*1kg/CTN
찐마늘	냉동	4X4X4		-	10*1kg/CTN
		8-26目			
		26-80目			
	신선	4X4X4		\$1,050/MT	10*1kg/CTN
		8-26目		\$1,150/MT	10*1kg/CTN
		26-80目		\$1,100/MT	10*1kg/CTN

주: 目은 마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임.

- 4/4분기는 중국 마늘 수출 성수기로 수출계약 물량이 급증하였음. 10월 말까지 저장업자들의 마늘 입고는 거의 마무리되었으며 가저장 마늘 유통량은 적었음. 마늘 수출 성수기에 수출계약 물량은 급증하였으나 수출 단가는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하였음.
- 2008년 중국 마늘의 주요 수출국(수출액 기준)은 인도네시아, 미국, 베트남,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임.
 - 대 인도네시아 수출량은 29.7만 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26% 증가하였지만, 수출액은 1.2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8% 감소하였음.
 - 대 미국 수출량은 전년 동기대비 4% 증가하였지만, 수출액과 단가는 전년 동기보다 각각 37%, 39% 감소하였음.
- 중국의 마늘 수출량은 미국, 일본 등 마늘 수입국들의 무역장벽 영향과 국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4/4분기 말에 크게 감소하여 중국 내 마늘시장가격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음.

다. 2009년산 재배의향

- 중국의 마늘 주산지 농가들은 2008년산 마늘 가격 약세로 2009년산 마늘 재배를 기피하고 있으며, 대체작목은 밀, 엽채류 채소 등으로 조사되었음.
 - 특히 밀 재배 시 소득보전 직접지불 혜택이 주어져 많은 농가들이 대체작물로 밀을 선택하였음.
 - 2008년도 마늘 판매가격은 톤 당 400위안 수준으로 농가들의 비용을 제외한 10a당 손실액은 450위안에 달함.
 - 마늘 주산지인 중모(中牟)현 농업국의 조사에 따르면 중모현의 2009년산 마늘 재배면적이 6,700ha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5. 중국의 쇠고기·닭고기 수급 및 가격 동향²³

5.1. 수급 동향

가. 쇠고기

- 우리나라가 쇠고기를 주로 수입하는 국가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이며, 중국산 쇠고기는 가축 질병(구제역)으로 현재 수입이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중국이 구제역을 근절하여 검역문제가 해결될 경우 지리적 여건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시장에 나설 가능성이 존재함.
- 2008년 중국의 쇠고기 생산량은 626만 톤이며, 소비량은 621만 톤이었음. 2009년 공급량은 전년보다 1.6% 증가한 639만 톤으로 전망되며, 소비량 역시 전년보다 1.8% 증가한 632만 톤으로 전망됨.
- 현재 중국에서는 쇠고기 등급판정제도의 미비로 고급육에 대한 개념은 아직 없으며, 일부 연구기관에서 거세비육을 실시 중임. 또한 경매 시 가격은 수소, 암소의 구별이 없이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음.

표 15. 중국의 쇠고기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 천 톤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공 급	5,736	5,731	5,782	6,149	6,270	6,368
생 산	5,604	5,681	5,767	6,134	6,260	6,360
수 입	132	50	15	15	10	8
수 요	5,616	5,661	5,731	6,112	6,242	6,354
소 비	5,557	5,607	5,677	6,061	6,210	6,324
수 출	59	54	54	51	32	30

주: 2008년은 추정치이며, 2009년은 전망치임.

자료: 미농무부(USDA).

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축산관측팀(이형우, 이정만)이 중국 현지 출장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자료임.

나. 닭고기

- 우리나라에 닭고기를 수출하는 나라는 미국, 브라질, 중국의 순임. 2008년 우리나라 닭고기 수입시장 점유율을 보면, 미국이 49.4%, 브라질이 29.3%, 중국이 9.7% 등임.
- 2008년 중국의 닭고기 생산량은 세계 총생산량(7천만 톤) 중 17.6%(1천 2백만 톤)를 차지하였음. 2009년 중국의 닭고기 생산량은 자국 내 소비 증가로 2008년보다 8.0% 증가한 1천 4백만 톤으로 전망됨. 2009년 중국의 닭고기 수입은 정체, 수출은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경제 성장과 함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육류 소비량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음. 중국의 닭고기 1인당 소비량은 최근 3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여 2008년에는 우리나라(8.8kg)보다 높은 수준인 9.6kg까지 증가하였음. 2008년 1인당 소비량은 10.4kg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사천성 지진 발생에 따른 돼지고기 생산량 감소로 대체수요가 닭고기로 옮겨가고 있음. 이에 따라 닭고기 수입량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여서 2009년도에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은 순수입국이 될 것으로 전망됨.

표 16. 중국의 닭고기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천 톤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공 급	10,172	10,419	10,693	11,836	13,100	14,150
- 생 산	9,998	10,200	10,350	11,354	12,650	13,700
- 수 입	174	219	343	482	450	450
수 요	10,172	10,419	10,693	11,836	13,100	14,150
- 소 비	9,931	10,088	10,371	11,478	12,825	13,867
- 수 출	241	331	322	358	275	283
1인당소비량(kg)	7.6	7.7	7.9	8.7	9.6	10.4

주: 2008년은 추정치이며, 2009년은 전망치임.

자료: 미농무부(USDA).

5.2. 소매시장 가격 동향

- 2008년 11월 산둥성 주성시에 위치한 대형 유통매장을 찾아 쇠고기 및 닭고기의 소매가격을 조사하였음. 쇠고기 가격은 각 부위별로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음. 그 중 등심부위의 가격이 제일 높아 500g 당 138위안에 거래되고 있었음. 또한 특등급인 경우 500g 당 188위안에 판매되고 있음.²⁴
- 안심의 경우 500g 당 38.8위안에 거래되며, 특등급인 경우 500g 당 98.8위안에 판매됨. 살치살이 500g 당 59.8위안, 다리살 부위가 500g 당 48위안으로 비교적 높게 거래되고 있었으며, 우둔 및 사태, 뺏살 및 꼬리뼈가 판매되고 있음.

표 17. 쇠고기 소매가격

단위 : 500g

부위	가격(위안화)	가격(원화)	부위	가격(위안화)	가격(원화)
뺏살	22.8	4,788	우둔	28.8	6,048
다리살	25.8	5,418	사태	25.8	5,418
꼬리뼈	28.0	5,880	살치살	59.8	12,558
등심	138.0	28,980	다리살(고급)	48.0	10,080
안심	38.8	8,148	소 설도	33.2	6,972
등심 (특상품)	188.0	39,480	소 안심(특급)	98.8	20,748

주: 1위안은 210원으로 계산함.

- 우리나라의 경우 닭고기는 일반적으로 통닭 단위로 유통되나, 중국은 부분육으로 거래가 되고 있음. 매장 내에서는 통닭도 판매하고 있으나, 전체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음.

²⁴ 중국에는 공식적인 쇠고기 등급제도가 아직 존재하지 않음. 품질등급은 판매점에서 자체적으로 적용한 기준임.

- 중국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닭고기 부위는 닭다리(발골) 및 닭봉 부분으로 500g 당 13위안, 뼈있는 닭다리는 500g 당 11.8위안에 거래되고 있음. 이외 부산물로 닭목과 닭발 등이 거래되고 있음.

표 18. 닭고기 소매 가격

단위 : 500g

부 위	가격(위안화)	가격(원화)	부위	가격(위안화)	가격(원화)
닭 가슴육	13.0	2,730	닭목	7.8	1,638
닭 봉	13.0	2,730	오리다리	10.8	2,268
발골 닭다리	13.0	2,730	통닭	12.9	2,688
뼈있는 닭다리	11.8	2,478	—	—	—

주: 1위안은 210원으로 계산함.

5.3. 중국 축산물의 대 한국 수출 가능성

가. 쇠고기

- 중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질병 만연 지역을 제외하고 청정 지역에 대한 지역할당 제를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음. 현재는 중국은 신선 냉장과 냉동 제품을 제외한 열처리 가공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 전역의 질병 퇴치에는 시간과 자원이 부족한 상태임.
- 중국이 주장하는 지역 격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경우 6개 성(산둥성, 절강성, 상해시, 요녕성, 해남성, 복건성)을 시범지역(지정기준: 국경, 항구, 연해 등 고려)으로 지정하여 축산물을 수출한다는 계획임.
- 중국은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구에서 생산되는 쇠고기를 “연변쇠고기(延邊黃牛肉)”라는 브랜드로 일본 및 한국으로 수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수출 이전에 현재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에 따른 교역금지 조치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은 한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음. 특히 관련 협회 및 기업들의 관심이 매우 큼(중국 축산업협회 관계자 면담 내용). 지난 북경올림픽 기간에 4대 주요 쇠고기 업체는 주요 호텔에 쇠고기를 납품하여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으며, 우리나라의 수입 위생조건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음. 그러나 중국의 대 한국 쇠고기 수출은 검역문제에 대한 정치적 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나. 닭고기

-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닭고기 수입을 시작한 것은 수입완전자유화(1997년) 이후이며 중국은 미국, 태국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주요 닭고기 수입 상대국의 하나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이전까지는 중국산 닭고기는 부위별로 냉동 형태로 수입되었음.
- 중국은 국제수역사무국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상시 발생국으로 등재되어 있어, 냉장냉동 형태의 닭고기 수출은 금지되어 있음.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닭고기는 열처리된 가공품 형태임. 2005년 닭고기 수입량의 12%를 차지하던 중국산 가공품은 2007년에는 19.8%로 확대됨. 이러한 증가세는 2008년 들어 다소 주춤한 상태임.
- 중국은 닭고기 주요 생산국 중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이 위치하여 HPAI 청정국으로 전환된다면, 수출국 중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 19. 우리나라 닭고기 수입량(통관기준)

	닭고기 총수입량(톤)	중국 수입량(톤)	수입금액(천불)	수입단가(\$/kg)	비중(%)
2005년	58,503	7,165	18,548	2.6	12.2
2006년	75,575	11,484	33,112	2.9	15.2
2007년	60,030	11,889	36,258	3.0	19.8
2008년 (1~11월)	66,283	6,349	22,954	3.6	9.6

- 중국은 쇠고기 및 닭고기의 수출 시장으로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태임. 중국인이 선호하는 닭고기 부위는 주로 닭다리와 날개로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함.
- 중국 축산업협회(畜牧業協會)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여름철 복(伏) 경기에 닭고기 소비가 최고조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고 지대한 관심을 보였음. 중국 토종닭의 경우 출하체중이 1.5kg(중국의 육계 출하 체중은 보통 평균 2.5kg)인 품종이 있어 여름철에 한 국으로 수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Ⅲ. 농정연구 이슈²⁵

1. 중국 농촌발전의 몇 가지 키워드

1.1. 발전의 기적

- 중국은 30년 동안의 개혁개방을 통해 먹는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됨으로써 발전의 기적을 이루었음. 발전의 기적은 농업부문에서도 나타났으며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중국 농업은 빠르게 발전하였고 이 기간 중 몇 년 동안의 농민소득 증가 속도가 도시를 초과하였음. 또한 이 기간 동안 토지, 노동, 자본의 투입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산출도 증가하였는데 산출의 증가 속도가 생산요소의 투입 증가 속도보다 빠른 성장의 기적을 이루었음.
-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 농업자본 투입은 증가하였지만 노동과 토지의 투입은 사실상 감소하였음. 1996년 이후 경작지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 이후 농촌노동력도 연간 약 1.6%의 속도로 감소하였음. 그러나 이 시기 농업GDP는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1996년 이후 연평균 8% 성장하는 기적을 이루었음.
- 이러한 기적은 노동과 토지의 투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룬 것으로서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에 이룬 성장의 기적보다 더욱 커다란 의의가 있음.
- 성장의 기적을 이룬 주요 요인은 기술진보와 분업 수준의 제고이며 이들 두 가지 요인은 시장화 개혁의 진전으로 귀결됨. 농업기술 서비스의 시장화는 효율을 제고하였고 분업을 촉진하였음.

25 黨國英. 2008. “農村改革30年回顧與展望”, 『理論前沿』 15 : 5~10을 번역 정리하였음.

1.2. 인구(과잉노동력)

- 중국의 과잉노동력의 존재는 최근 경제학자들이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 추세를 해석하는 키워드이며 중국의 농업 발전을 이해하는 키워드이기도 함.
- 중국의 경제발전은 저렴한 노동력의 혜택을 받았는데 저렴한 노동력은 거대한 농촌인구에 기초하고 있음. 중국 농민공(農民工)의 임금은 오랜 기간 인상되지 않고 일정수준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중국 공업 및 상업 자본이 낮은 생산비로 생산을 확대하여 세계에 염가의 상품을 대량 수출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였음.
- 중국 농민공의 주체는 청장년 남성 노동력이며, 농촌에 남겨진 부녀자와 노인이 임금 없는 농업 생산에 참여하여 저렴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음. 농업에 대한 저투입과 저농산물 가격으로 인해 농업GDP는 과소 평가되고 있음.
-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동반하지 않은 것은 낮은 농산물 생산비 때문이었음. 그러나 농촌지역의 과잉노동력은 사실상 농민의 ‘마이너스 수익’임.

1.3. 토지

- 개혁개방 이전 경제 건설에 필요한 토지는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제공되었음. 개혁개방 이후 점차 농민들에게 토지 수용 보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지만 보상액은 매우 적어 최근까지 총 금액이 1억 위안을 초과하지 않았음. 그러나 수용당한 토지의 가치는 보상액보다 적어도 20배는 높았음.
- 저렴한 토지비용은 중국 경제가 적은 비용으로 고속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임. 토지소유자(사용자)가 마땅히 획득해야 할 수입이 다른 경제적 이익집단의 수입 혹은 재투자 자본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로 인해 경제 성장에 필요한 비용이 크게 하락하였음.
- 중국 농업이 중국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저렴한 노동과 토지를 제공함으로써 성장에 기여하면서도 농민소득 증대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개혁개방이 주요한 원인임. 농민들의 자주권이 확대된 가운데 자신의 소득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기만 하면 다른

부문의 소득이 더욱 빠르게 발전하더라도 농민들은 충분히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었음.
중국 농업의 발전 더 나아가 중국 경제 성장의 비밀이 여기에 있음.

2. 중국 농촌개혁 모델의 변화

- 중국의 농촌개혁은 2003년 이전까지는 통제 완화, 2004년 이후는 소득분배구조의 조정 및 농촌에 대한 공공재 공급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분배 조정이 가장 큰 특징임. 중국 공산당 제17기 대표대회 이후 중국의 농촌개혁은 도시와 농촌의 통합발전과 종합개혁을 심화하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였음.

2.1. 1978년~2003년: 통제 완화 모델

- 이 시기 농업농촌 발전에서 근본적인 장애물은 계획경제시대부터 이어져온 농민들에 대한 통제였음. 이로 인해 농민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공정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했음. 이 시기 농촌개혁의 중점은 농민 권리의 보장이었음.

□ 농민의 토지재산권

- 1978년 이후 제도적으로 집단농업경영시스템보다 이점이 많은 농가토지도급제를 실시한 것이 중국 농촌개혁 성공의 중요한 원인이었음.
- 농가토지도급제는 중국의 생산력 발전 단계에 부합하는 것이었으며 농가의 소득과 투자를 직접 연결시킴으로써 제도적으로 농민들의 생산의 적극성을 유인하였음.
- 농가토지도급제에서는 집단 생산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 감독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으며 심지어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음.
- 농가토지도급제에서 농민들은 대부분 생산 자주권을 획득하였으며 이로 인해 농업 생산에서 합리적인 자원배치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음.

□ 농민의 평등한 취업 권리

- 중국 정부는 과거 상당 기간 농민공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였으나 2003년 이후 이러한 상황이 점차 변화되기 시작하였음. 농촌 과잉노동력의 도시 이전은 자원배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발전 속도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2004년 이전 10년 동안 농민공의 임금의 거의 인상되지 않았는데 이는 농민공들이 오랫동안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것임.
- 2004년 이후 농민에 대한 권리 보호, 특히 농민공과 도시노동자 간 평등한 권리 보장이 점차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음. 2004년 11월 1일 국무원은 국무원령 제423호 《노동보장감찰조례(勞動保障監察條例)》를 공포하여 농민공의 권리를 국가법률체계로 보호하기 시작하였음.

□ 민주적 선거 권리

- 중국은 1988년 6월 1일 《촌민위원회조직법(村民委員會組織法)》을 시범적으로 시행한 이후 1998년부터 정식 시행하였음. 1998년 이후 전국 대부분의 촌민위원회는 수차례의 선거를 치렀음. 그러나 그동안의 실천이 증명하듯이 중국 농촌의 민주정치 발전은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로서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
- 전반적으로 중국 농촌의 민주와 자치에 대해서 농민의 태도는 정부 관료의 태도에 비해 더욱 진지함. 현행 《촌민위원회조직법(수정초안)》에는 농민들의 염원을 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2. 2003년 이후: 분배 조정 모델

□ 새로운 모델의 출현 배경

- 농민의 권리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농촌개혁 모델은 일정한 조건에서는 권리를 더 이상 보장해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됨. 이러한 통제 완화 모델의 한계로 인해 1996년 이후 농촌 발전이 점차적으로 정체되었음.

- 1997년~2003년의 7년 동안 농민의 1인당 소득은 연평균 4% 증가하였지만 도시 주민의 소득은 연평균 7~8% 증가하여 도농 간 소득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
- 1998년 이후 중국의 식량 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식량시장에 대한 압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이로 인해 식량수급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였음.
- 도시와 농촌의 경제발전 관계를 보면 토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도시와 농촌 간 이동은 여전히 이원화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모순은 더욱 심화되었음.

□ 소득분배구조 조정 위주의 종합개혁 모델

- 2004년 중앙1호문건 《농민의 소득증대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의견(中共中央,國務院關於促進農民增加收入若干政策的意見)》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지도 이념을 제시한 문건으로서 그 의미가 큼. 또한 농촌개혁의 시장화 방향을 명확히 하고 시장에 대한 거시조정, 농업에 대한 재정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틀을 마련해주었음.
- 2004년 농촌개혁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요구에 부응하여 적극적으로 농촌개혁과 혁신에 앞장섰다는 것임. 많은 성, 시 정부가 농업세 감면정책을 앞장 서 실시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정책을 순조롭게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었음.

□ 소득분배구조 조정, 농업지원 및 투자 확대 조치

- 2004년 이후 중국 정부의 농업부문에 대한 지출은 전통적인 지출 외에 소득보전 직접 지불보조, 생활시설 보조, 교육보조, 사회보장보조, 의료보조 등으로 확대되어 농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며 농업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
- 2007년 정부의 농업부문 지출은 4,318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512억 위안 증가하였으며, 2008년에는 8,000억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됨.

2.3. 두 가지 개혁모델의 제약과 한계

- 통제 완화 개혁모델은 식량 공급 부족의 압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선택한 모델이었음. 이러한 선택은 중국의 지도계층 사이에서 일정하게 인식을 공유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임. 전체적으로 보면 통제 완화 개혁모델은 중앙정부가 주도하였으며 이러한 특성은 개혁 중후반부에 더욱 뚜렷해졌음.
- 소득분배 조정 개혁모델은 중국 경제가 일정 수준으로 성장한 이후에 출현하였음. 이 당시 농업세를 취소하는 동시에 점차 국가의 보조도 점차 감소(특히 식량위험기금)하였지만 국가 재정 운영에는 커다란 부담이 되지 않았음.

□ 통제 완화 모델

- 통제 완화 개혁 모델의 주체는 중앙정부임. 통제 완화가 일정 정도 수준에 이른 후 추가적인 통제 완화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지방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일부 이익집단의 저항, 시장시스템의 결함이 주요 원인이었음.
- 노동력의 이동 측면에서 보면 인민공사제도의 해체로 농민은 도시에서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음. 그러나 농민이 도시 특히 대도시에서 거주하려면 자녀교육문제 등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 또한 도시의 사회보장 수지 악화는 농민의 도시 거주를 가로막는 또 다른 장애요인이었음.
-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통제 완화 개혁모델은 농촌 토지제도 개혁에서 가장 뚜렷한 제약을 받았음.
 - 첫째, 지방정부 특히 토지자원이 적은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중앙정부가 제시한 ‘인구의 변화에 상관없이 토지분배는 불변(增人不增地, 減人不減地)’이라는 원칙을 수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 둘째, 공업부문과 건설업부문은 국가의 토지 수용제도 개혁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지방정부의 이윤추구 동기에 의해 종종 공업부문 또는 건설업부문의 이해관계와 일치되어 중앙정부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았음.

- 토지재산권제도에 대한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정부가 토지도급권의 안정 혹은 토지도급권의 물건화를 통해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배치를 실현하려는 목표의 달성에는 어려움이 많았음.
- 개혁개방 이후 20년 동안 농촌 금융시장 개혁은 줄곧 지지부진하였으며 가장 커다란 제약은 시장시스템의 결함이었음. 농가토지도급제의 실시로 일반화된 소규모 분산경영에서는 효율적이고 대규모적인 자금 수요가 가능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농촌 금융시장의 거래비용이 비교적 높았음.
 - 대형 국유상업은행은 농촌 자본시장에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농촌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었음.
 - 한 때 흥성했던 농촌합작기금회(農村合作基金會)는 효율적인 재산권관계에 기초하지 않아 심각한 부패문제를 야기했고 결국 중앙정부에 의해 영업을 정지되었음.
- 총체적으로 중앙정부가 주도한 통제 완화 개혁모델은 시장 주체 간 공평한 관계, 효율적인 재산권관계, 거래비용을 낮추는 효율적인 시장시스템을 만들어내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
 - 통제 완화는 권리의 보장을 의미하지만 권리의 형성(재생산)과 동일한 의미는 아님. 농촌개혁의 심화는 비록 권리의 보장이라는 과정을 필요로 하지만 권리의 형성이 관건임.
 - 권리의 재생산이 심도있게 진행되지 못한 것은 통제 완화 모델이 제약을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임.

□ 분배조정 모델

- 2004년에 제시된 농촌개혁의 목표는 소득분배구조의 조정을 통해 농촌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분배 조정 개혁모델의 한계도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음.
- 첫째, 국가 재정능력의 한계임. 농업세 감면은 경제가 발전한 지역의 지방재정과 중앙정부의 식량위험기금이 자금 원천이었으나 이러한 자금 구성으로는 농업지원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었음.

- 둘째, 농촌사회가 분배구조 조정 개혁모델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음. 2004년 식량재배 농민을 대상으로 직접지불보조를 실시한 이후 정책 집행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 비용이 보조금 총액을 상회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음.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농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농민들의 협동조직에 의존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은 아직 이러한 시스템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
- 셋째, 분배구조 조정 개혁모델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도시에 취업한 농민공들의 노사관계(임금체납 문제 등)에 관한 것임. 그러나 이러한 관계의 조정은 일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이러한 문제 해결을 중시하지 않았음.
- 넷째, 분배구조 조정 개혁모델은 현재의 조건하에서 농촌 사회보장과 도시 사회보장을 일체화하는 방법을 도출하지 못했음. 이 문제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직면해야 할 어려운 문제임.

3. 새로운 단계의 농촌개혁 방향

3.1. 도시와 농촌의 통합발전

-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사업을 전개한지 2년이 되었고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원의 합리적인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농업을 위주로 하는 지역의 신농촌 건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음. 농민들의 생산 적극성과 국가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신농촌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농촌 건설 전략을 조정하고 더욱 적극적인 도시화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가. 농촌 과잉노동력 문제

- 신농촌 건설 사업의 성공을 기할 수 있는 지표는 두 가지임. 하나는 농촌주민의 평균 소득이 도시주민의 소득 수준에 근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농촌주민이 도시주민에 상응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임. 중국 정부의 신농촌 건설 목표에는 이러한 내용

이 포함되어 있으나 중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임.

□ 소규모 영세 분산경영의 한계

- 현행 농가토지도급제의 소규모 영세 분산경영시스템으로는 선도 농민을 육성할 수 없음. 중국 정부는 1억 2,060만 ha의 경지 보유 목표를 제시한 바 있는데 2억 4천만 농가의 농가 평균 경지면적은 약 0.47ha에 불과함.
 - 전체 농가 중 축산, 과일, 채소, 화훼부문의 시설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20%의 농가는 완전 취업 상태여서 비교적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소득 수준도 도시주민의 소득에 근접하고 있음.
 - 전체 농가의 80%는 식량 생산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가 당 연평균 농업소득이 3,000~5,000위안에 불과한 실정임. 이러한 농가구성을 지닌 농촌은 사회주의 신농촌이 될 수 없음.
- 농가 당 평균 경지면적이 0.47ha에 불과한 상황에서 농업기술진보를 통해 농민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을 매우 어려움. 우량 품종, 관개, 화학비료, 제초제, 소형농기구 등은 규모중립성 기술로써 이들 기술의 응용이 농산물 생산 증대에 공헌할 수 있는 잠재력은 이미 크지 않은 상황임. 조사에 의하면 농민들은 노동절약 기술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강함.
 - 만약 농민들이 절약된 노동시간을 이용하여 다른 일에 종사할 수 없다면 이러한 상황에서의 기술진보는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없음.
- 농가 당 평균 경지면적이 0.47ha에 불과한 상황에서 농업 생산조직구조의 개선을 통해 농민소득을 증대시키는 것도 매우 어려움. 농업 생산의 조직구조 개선은 농업산업화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농업전업화의 기초위에 건립된 농업경제의 일체화를 의미함.
 - 농업산업화의 효과는 농민들의 노동시간 절약이며 농민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님. 농업산업화가 고도로 진행된 조건에서 농업부문의 대규모 기간기업(龍頭企業)은

더욱 전문화된 유통과 기술서비스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반면 농민은 일정정도 농산물 유통 영역과 농자재 구매 영역에서 퇴출되고 있으며 심지어 생산 영역에서의 노동시간도 줄어들고 있음.

- 농업생산의 전업화는 공급부족 농산물의 공급을 단기간에 확대할 수 있지만 농산물의 소득탄력성이 작아 가격은 더욱 하락하게 됨. 만약 농민들의 토지 경작면적에 변화가 없다면 농민들의 농업소득은 더욱 감소할 것임.

- 결론적으로 농업기술 진보, 특히 식량생산 기술의 진보와 조직구조의 조정 효과는 주로 농민들의 노동시간 절약으로 나타나며 농민소득을 직접적으로 증대시키지는 못함. 이러한 곤경에서 벗어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겸업으로 농민들이 비농업부문에 취 취업하여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임.

□ 현행 겸업화 모델의 자원낭비 현상

- 농민들이 절약된 노동시간을 이용해 비농업부문에서 소득을 창출하도록 겸업화 모델을 도입하였지만, 현행 겸업화모델은 자원 낭비가 매우 심하며, 도시와 농촌의 통합발전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 비록 정부 발표자료, 연구기관의 조사자료 등이 있긴 하지만 현재 중국 농촌노동력의 이전 규모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보수적인 통계수치에 의하면 1억 명(배우자 포함시 1.4억 명) 이상의 농민이 도시의 비농업부문에 취업하고 있음.
- 이들 농민공들이 농촌에 이전하는 소득은 연간 약 8,000억 위안에 이르며 이 규모는 국가의 농업투자 금액을 훨씬 상회함.
- 농민공들의 복리손실도 매우 큼. 감숙성의 농촌 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지 농민공 중 화장실과 부엌이 딸린 집을 임차하거나 구입할 수 있는 비율은 12% 정도에 불과함. 북경시 농촌 조사 결과도 약 15% 정도임.
- 농촌에 상주하는 농민의 수가 연간 1.6% 감소하고 있는 반면 농촌 가구의 수는 연간 1% 정도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새롭게 증가한 농촌 가구는 일부 경제가 발전한 지역에서

- 택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택지를 확보할 수 있음.
- 현재 중국 농촌지역의 비농업용 토지면적은 이미 18만 평방킬로미터에 이름. 이는 도시의 용적률 기준으로 18억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지만 실제로는 약 7억 명을 수용하고 있을 뿐임.
 - 현재 농촌지역의 인구 용적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농촌 토지자원의 낭비 추세를 전환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 전국적으로 현(縣) 이하 농촌 도로 120만 km, 촌 내 도로 약 250만 km 건설에 약 2,000억 위안(km 5만 위안)이 소요됨. 여기에 수도, 전기, 오수처리시설, 메탄가스시설 등 기초시설 건설에 투자되는 비용을 감안하면 투자 금액은 더욱 증가함. 그러나 조사결과에 의하면 농촌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수록 일정 기간 내에 도시로 이전하는 농민이 더욱 많아지고 있음. 따라서 투자 수익의 보장이 어려운 상황임.

□ 분산된 공공투자

- 중국의 농촌에는 320만 개의 자연촌, 60여만 개의 행정촌, 7억 4,000만 명의 상주인구가 있음. 중국은행감독위원회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0년까지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에 필요한 신규 자금은 약 15~20조 위안에 달함. 그러나 실제 농업지출액 성장률 8%로 계산하면 10조 위안 정도만 제공할 수 있음. 비록 이 정도의 자금이 투자된다고 해도 이로부터 파생되는 고정자산의 보호 및 갱신 비용은 국가와 농민 모두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
- 농촌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많은 정부 관리부문이 연계되어 있고 각 부문은 모두 신농촌 건설의 주체로 자처하면서 중앙정부에 자금을 요구하고 있어 자금 사용의 분산과 효율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 농촌 투자와 직접 연계된 약 20여 개의 중앙 기관이 약 100여 개 항목의 신농촌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자금의 투입 경로를 정비하고 낭비를 줄이는 것은 현재 신농촌 건설 사업의 중요한 해결 과제임.

나. 도시화 문제

- 중국의 도시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전하는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용량이 적은 것은 취업정책과 관련이 있음.
 - 만약 노동법을 엄격하게 집행할 수 있고, 노동자들의 잔업수당 문제, 도시주민 겸업문제 그리고 아동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전국적으로 약 4,0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만약 주민 소득의 조절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개인소득세의 누진율을 적절하게 인상하고, 취업의 부문 독점을 철폐하면 일자리는 더욱 늘어날 수 있음.
- 중국의 GDP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는 일자리 증가 속도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일자리 증가 속도가 느린 원인의 하나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길고 노동 강도가 강하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농촌에 대량의 은폐된 실업인구가 존재하기 때문임.
 - 농촌지역의 대규모 실업인구의 존재를 농민들의 자질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음. 일부 도시의 경제부문에서 농민들이 얼마든지 다양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결국 노동시장의 미성숙이 농민공들의 취업을 제약하는 주요 원인임.
 - 이외에도 호적제도, 지방관리 체제 등도 도시화 진전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을 개혁하면 도시화 속도는 더 빨라 질 것임.
 - 적극적인 도시화정책을 추진한다면 재배업 종사 농가가 연간 6% 감소(현재는 1.6%)할 수 있음. 이중 중대도시의 기여율이 3%, 기타 소도시의 기여율이 3%임. 만약 이러한 추세가 30년 동안 지속된다면 농촌에는 5,000만 호(이 중 식량재배 농가 3,000만 호, 기타 농가 2,000만 호)의 농가만 남게 됨.
 - 이러한 목표가 실현되면 농촌인구는 급속히 감소하여 많은 농촌지역이 사라지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도시화율은 약 80% 수준에 도달 할 것임.

다. 도시화 정책의 내용

- 첫째, 사회 관리체제를 개혁하여 도시와 농촌 간 통일된 호적관리제도를 수립해야 함. 호적제도는 운영이 용이하고 신분 차별이 없으며 인구 규모 통제에 편리한 인구등록제도로 개혁해야 함.

- 인구등록제도의 핵심은 거주지 인구등록제도로써 어떤 사람이 도시에 주택(임대 혹은 소유)을 갖고 있고 이 주택의 건축이 정부의 계획에 부합한 것이고 주택의 구조와 면적 등이 정부의 표준에 부합된다면 이 사람은 도시 주민으로 등록할 수 있고 기타 주민과 동일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함.
- 둘째, 노동관리체제를 개혁하여 노사관계를 조정하고 도시 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함. 또한 정부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노동법을 준수해야 함.
- 셋째, 토지관리제도와 토지재산권제도를 개혁하여 토지와 도시 주택 교환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농민들의 도시 이전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야 함. 재산권은 보장하고 계획은 준수토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토지관리정책체계를 수립해야함.

3.2 시장화 개혁

- 선진국의 농촌 발전 역사와 경험을 보면 농촌개혁은 권리관계의 개혁으로 귀결됨. 과거 중국 농촌의 최대 문제점은 농민의 기본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통제적인 정책으로 농민을 토지에 속박한 것임.
- 개혁개방 이후 20년은 대체로 농민의 기본 권리를 확립하는 과정이었고, 모든 농촌개혁의 성과는 농민의 기본 권리가 점차 확립됨으로서 발생한 적극적인 성과로 귀결할 수 있음. 같은 논리로 농촌의 많은 문제점들은 농민의 기본 권리를 더욱 보장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임.
- 향후 농촌개혁은 장기적으로 시장화 개혁을 더욱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 유의해야 함.
- 첫째, 개혁을 통해 농민을 활력 있는 시장의 주체로 육성하고, 농촌 시장경제 발전의 동력을 발굴해야 함.
- 먼저 농촌 토지관계를 개혁하고 농민의 토지재산권을 확립해야 함. 현재 농촌에서 실시되고 있는 농가토지도급제는 농업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토지에 대한 마

을 간부의 과도한 지배권을 배제할 수 없어 농촌의 정치경제 관계의 조정에 매우 불리함. 중앙정부는 입법을 통해 농민의 토지도급권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물건화시켰지만 효과는 이상적이지 못함.

- 새로운 형태의 농민경제조직을 육성하는 한편 농촌에 현존하는 중개조직(향진 및 촌 공동체조직, 합작사 등)의 네트워크 체계, 기초시설, 전문기술인재, 사회적 동원능력 등을 최대한 이용 및 개선해야 함. 또한 농촌의 사회자본 및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조합하여 전통조직 자원과 신행조직 자원의 효과적인 연계를 실현해야 함.
-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을 더욱 개방하여 도시와 농촌의 노동시장을 점차 통합시키고 다양한 형식의 자본유동시장을 건립해야 함.

○ 둘째, 농촌경제발전을 위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시장실패 영역에서 정부의 서비스 제공을 강화해야 함.

- 농가의 소규모 분산경영으로 농민들은 시장경제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음. 또한 농업은 고도의 경쟁 산업이고 이윤율이 사회 평균 이윤율보다 낮아 상업은행의 지원을 얻기 어렵고 투자유치에도 어려움이 큼. 따라서 정부는 농업기초시설 투자를 강화하고 농업 기술을 발전시키는 한편 농업생산의 물질적 토대를 개선해주어야 함.
- 농업부문의 분산된 투자 및 낮은 투자효율에 대비하여 정부의 정책성 은행서비스체계를 개선해야 함. 농업발전은행과 농업부의 협력을 강화하여 분산된 농업지원 자금을 일원화하고 농업부의 계획에 따라 농업발전은행이 자금을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셋째, 농촌 사회의 관리구조를 개선하여 촌급 지역사회 관리기구와 향진 정부를 개혁하고 농촌의 민주제도 건설을 강화해야 함.

- 1998년에 촌민자치법이 공포되었지만 실행 상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 만약 농민들의 자치 권리가 실현된다면 이른바 농민부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임.
-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민은 과중한 세금 부담 때문이 아니라 불평등한 세금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농촌 기층 정부의 관리구조 개선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음.

IV. 정 책 자 료

1. 《국가 식량안보 중장기계획 요강(2008~2020)》²⁶

1.1. 서언

식량안보는 중국 국민경제 발전, 사회 안정 및 국가 자립과 관련된 총체적이고 중대한 전략적 문제이다. 중국의 식량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샤오캉사회(小康社會) 건설 목표 실현,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과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 중앙과 국무원의 줄곧 식량안보를 매우 중시하여 왔으며, 이 사업을 매우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다. 현재 중국의 식량안보는 총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식량 생산능력은 점진적으로 제고되고 있고, 식량 공급도 날로 풍족해져 기본적으로 식량수급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인구가 방대하여 식량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식량안보의 기초는 비교적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발전 추세를 전망해보면 공업화, 도시화 및 인구 증가와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식량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며, 농경지 축소, 수자원 부족, 기후변화 등 식량 생산의 제약요인은 날로 커질 것이다. 중국의 식량수급은 장기간 겨우 균형을 유지하는 상태에 놓일 것이며, 식량안보도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식량안보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식량자급 노선을 견지하고, 정책적 지원과 재정투입을 강화하는 한편 농경지 보호, 과학기술 진보에 의거하여 식량 생산능력 제고, 식량유통 체계 개선, 식량의 거시적 조정을 강화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에 적합하고 중국 상황에 부합하는 식량안보 보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중국의 중장기 식량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 요강》에 근거하여 특별히 본 《요강》을 작성하였다. 본 《요강》은 최근 10년 간 중국의 식량안보 측면에서 거둔 주요 성과를 총정리하고 앞으로 직면하게 될 도전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26 2008년 11월 13일 전문이 공개된 《國家糧食安全中長期規劃綱要(2008-2020年)》을 정정길 중국사무소장이 완역하였음.

2008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지도사상, 목표와 주요 임무 및 상응하는 정책 조치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거시정책 조정의 주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본 《요강》에서 언급하는 식량은 주로 곡물(밀, 쌀, 옥수수 등), 두류와 서류를 포함한다. 식품은 식량, 식물성 식용유, 육류, 가금류, 계란, 우유 및 수산물을 포함한다. 계획기간은 2008~2020년이다.

1.2. 식량안보 측면에서 거둔 성과

신중국 건국 이후, 당 중앙과 국무원은 식량안보 문제를 매우 중시하였으며, 시종일관 농업을 국민경제 발전에서 최우선 순위에 놓고 식량생산을 촉진하여 국민들의 먹는 문제를 비교적 훌륭하게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식량안보에도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 공업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경지면적이 감소하고 국민 소비 수준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식량 증산을 실현하였고 식품소비와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식량 수요를 충족시켰다.

최근 10년 간 중국의 식량자급률은 기본적으로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07년 식량 총생산량은 5.016억 톤으로 1인당 평균 점유량은 380kg, 1인당 소비량은 388kg이다. 국민의 식생활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식품소비구조는 식량의 식용소비가 점차 감소하고 육류, 가금류, 계란, 유제품, 수산물과 식물성 식용유에 대한 소비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영양섭취 수준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FAO의 추산에 따르면, 2002년 중국의 1인당 1일 섭취 열량, 단백질 및 지방 함량은 이미 세계 평균 수준을 초과하였다.

가. 식량 생산능력의 안정적 유지

1990년대 이후, 중국의 농업 생산은 식량수급이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룬 가운데 공급과잉 단계로 진입하였다. 1996년 식량작물 파종면적은 1억 1,323만 ha에 달했고, 식량 생산량은 5억 톤을 넘어섰으며, 곡물 생산량은 4.5억 톤을 초과하였다. “제9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식량생산량은 기본적으로 5억 톤 수준을 유지하였다. 연이은 풍작으로 식량 비축량이 증가하였으며 식량가격 하락과 농업생산구조 조정으로 1998년 이후 식량작물 파종면적이 계속 감소하였다. 2003년 식량작물 파종면적은 9,983만 ha까지 감소하였으며, 이는 1998년 대

비 1,447만 ha가 감소한 것이다. 식량생산량도 1998년 5.123억 톤에서 2003년 4.307억 톤으로 0.816억 톤이 감소하였는데 주로 쌀, 밀, 옥수수 등 곡물 위주로 감소하였다.

2004년 이후, 당 중앙과 국무원은 농경지 보호, 식량 최저수매가격제도 실시, 세비 감면, 직접지불제 실시, 재정투입 확대 등 일련의 정책을 실시하여 농민들의 식량작물 재배의 적극성을 유인함으로써 식량증산을 이루었다. 2007년 식량작물 재배면적은 1억 626만 ha까지 회복되어 2003년 대비 643만 ha가 증가하였다. 식량생산량은 5.016억 톤에 달해 2003년 대비 0.709억 톤이 증가하였다. 2007년 곡물 재배면적은 8,643만 ha로 2003년 대비 911만 ha 증가하였으며, 생산량은 4,563억 톤으로 2003년 대비 0.820억 톤이 증가하였다.

농업 생산조건이 점차 개선되었고, 식량 종합생산능력도 계속 제고되었다. 1996~2006년 동안 전국적으로 신설된 관개시설의 유효 관개면적은 1,005ha이며, 파종에서 수확까지의 종합기계화 수준은 4.5% 포인트 증가하였다. 농업기술진보의 공헌도는 13%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우수 품종 보급률도 95%까지 증가하였다. 식량 단수도 눈에 띄게 향상되어 2007년 식량작물의 전국 평균 단수는 ha당 4,719kg, 곡물의 전국 평균 단수는 5,299kg으로 역사상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식량의 품질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으며, 우수 품질의 밀과 쌀 재배 비율이 각각 55%와 69%에 이른다.

식량 생산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기초 위에서, 기타 식품 공급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1995년과 비교했을 때, 2007년 육류의 1인당 평균 점유량은 52kg으로 8.5kg 증가하였고, 그 중 쇠고기와 양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3% 포인트 증가하였다. 가금류와 계란의 1인당 평균 점유량은 19kg으로 5.2kg 증가하였다. 우유의 1인당 평균 점유량은 26.7kg으로 22kg 증가하였다. 수산물의 1인당 평균 점유량은 36kg으로 약 16kg 증가하였다.

나. 식량 유통체제의 개혁

1998년 이후 중국 정부는 시장화를 목표로 한 식량 유통체제 개혁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였다. 시장 수급에 기초한 식량 가격형성 시스템이 점차 수립되었고, 식량 수매시장과 수매가격이 전면적으로 개방되었다. 이로써 시장시스템이 식량자원의 배분에서 기본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개방적이고 경쟁적이며 질서를 갖춘 식량 시장체계가 초보적 수준에서 구축되었으며, 현물교역이 한층 더 활발해지고 선물교역도 점차 발전하였다. 국유식량기업이 시장화 개혁을 통해 “나이 든 직원, 오래된 식량 재고, 오래된 부실 장부” 등 역사적 난제들을 기본적으로 해결하였고, 식량 수매에서 지속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식량유통에서

시장 주체가 점차 다양해졌고, 규모화와 조직화 수준도 높아졌으며 시장경쟁력이 강화되었다.

다. 식량안보 정책지원체계 구축

《토지관리법》, 《농촌토지도급법》과 《기본농지보호조례》가 공포되면서 엄격한 농경지보호제도가 마련되었다. 4가지 농업세(농업세, 담배 이외의 농업특별세, 목축세와 도축세)를 철폐하였고, 식량직불금, 우량종자보조금, 농기계구매통조금과 농자재종합직불금 등의 직접 보조 정책을 실시하였다. 벼, 밀에 대하여 최저수매가정책을 실시하여 식량 재배농가에 대한 보호시스템을 개선하였고, 식량의 시장가격을 안정시켰다. 국민소득 분배구조를 조정하고, 농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농업과 식량 생산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증대 시스템을 초보적인 수준에서 구축하였다. 중앙 재정의 식량위험기금(糧食風險基金)에 대한 보조 비율을 조정하고, 식량증산 현(縣)에 대한 포상정책을 실시하여 식량주산지에 대한 이전지불 역량을 강화하였다.

라. 식량수급의 거시조정체계 개선

‘식량성(省)장책임제’를 개선하여 성급 인민정부의 식량 생산과 유통 방면에서 책임을 한 층 강화하였다. 중앙과 지방의 식량비축체제를 개선하고, 최저비축제도를 확립하여 국가의 식량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였다. 식량 수출입 품종에 대한 조절을 강화하여 식량 수급 총량의 균형을 유지하였다. 식량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협력관계가 발전하였다. 국가 식량 긴급보장시스템을 초보적 단계에서 구축하였다. 《식량유통관리조례》와 《중앙비축식량관리조례》를 공포함으로써 법에 의거하여 식량을 관리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국채 자금을 이용하여 건설한 국가 비축식량 저장고의 용량이 527억kg 증가하였고, 식량 물류 “4산화(四散化)”(분산 포장, 분산 출하, 분산 저장, 분산 운반) 개혁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1.3. 식량안보의 당면 문제

최근 중국 식량 생산과 수급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국면을 맞았으며, 안정적 개혁을 위한 중요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농업은 여전히 국민경제의 취약 부문으로 공업화와 도시

화가 진전됨에 따라 중국의 식량안보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식량 생산이 점차 회복되고는 있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증산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식량수급이 간신히 균형을 유지하는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무역 적자가 나타났으며, 대두와 면화 수입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원료농산물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경제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인구, 경작지, 수자원, 기후, 에너지, 국제시장 등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되어 중국의 식량안보는 더욱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가. 소비수요의 지속적 증가

식량 총수요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추정에 따르면, 2010년까지 중국 국민 1인당 식량 소비량은 389kg이고, 식량 총수요량은 5.250억 톤에 달한다. 2020년까지 1인당 식량 소비량은 395kg이 될 것이고, 총수요량은 5.725억 톤으로 증가할 것이다.

식량 소비구조는 식용 식량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 추정에 따르면, 2010년까지 총 식량 소비량은 2.585억 톤으로, 식량 총수요량의 49%를 차지할 것이다. 사료용 식량 수요의 경우 2010년까지 총수요량은 1.870억 톤으로 식량 총수요량의 36%를 차지할 것이며, 2020년까지 2.355억 톤에 달할 것이고, 식량 총수요량의 41%를 차지할 것이다. 공업용 식량 수요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식물성 식용유의 소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중국 국민 1인당 식물성 식용유 소비량은 17.8kg, 소비 총수요량은 2,410만 톤이 될 것이다. 2020년 1인당 소비량은 20kg, 소비 총수요량은 2,900만 톤이 될 것이다.

나. 경지면적의 지속적 감소

농업구조조정, 생태보호를 위한 휴경,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과 비농업용 건설 등의 요인으로 인해 경지면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2007년 전국 경지면적은 1억 2,234만 ha로 1996년에 비해 838만 ha가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74만 ha씩 감소하였다. 현재 전국 1인당 평균 경지면적은 0.09ha로 세계 평균의 40%에 불과하다. 가뭄, 홍수, 염분 축적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토질이 상대적으로 불량한 중·저급 생산 수준의 경지가 약 2/3를 차지한다. 토지의 사막화, 토양 퇴화, 오염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공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경지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경작할 수 있는 토지자원이 점차

부족해지고 있어 앞으로 식량 파종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극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다. 수자원 부족

현재 중국 1인당 수자원 점유량은 2,200m³로써, 세계 평균의 28%에도 미치지 못한다. 농업용수 부족량은 연간 200여억 톤에 달하고, 수자원 분포도 극히 불균등하다. 중국 북방지역 수자원 부족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동북(東北) 및 황회해(黃淮海)지역의 식량 생산량은 전국의 53%를 차지하고, 상품 식량은 전국의 66%를 차지하지만, 헤이룽장(黑龍江)성의 썬장(三江)평야와 화북(華北)평야 등 많은 지역에서 지하수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관개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썬장평야의 경우 최근 10년간 지하수 수위가 2~3m 낮아졌고, 일부 지역은 3~5m까지 낮아졌으며, 화북평야는 세계에서 지하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역이 되었다. 이 외에도 최근 중국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고, 이상기후도 빈번하며 북방지역은 강수량이 적어 건조화 추세가 매우 심각하다. 지구온난화의 영향 때문에 앞으로 중국은 가뭄과 홍수로 인한 재해, 특히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상황이 더욱 심해져 농업생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중국의 중장기 식량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다.

라. 지역 간 식량수급 불균형

중국의 식량 생산의 중심이 북쪽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2007년 13개 식량주산지 성의 식량생산량은 전국 총생산량의 75%를 차지하였다. 그 중 허베이(河北), 네이멍구(內蒙古), 랴오닝(遼寧),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 산둥(山東), 허난(河南) 등 7개 북방 주산지의 식량생산량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36.2%에서 2007년 43.5%까지 증가하였다. 반면 장쑤(江蘇), 안후이(安徽), 장시(江西),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쓰촨(四川) 등 6개 남방지역 주산지의 식량 생산량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36%에서 2007년 31.6%까지 감소하였다. 주소비지의 식량 생산 부족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베이징(北京), 티엔진(天津), 상하이(上海), 저장(浙江), 푸지엔(福建), 광둥(廣東)과 하이난(海南) 등 7개 주소비지의 식량생산량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12.2%에서 2007년 6.3%까지 감소하였다. 생산 부족분은 2003년 0.485억 톤에서 2007년 약 0.550억 톤까지 증가하였다. 이 외에도 서부 일부 지역은 생태환경이 열악하고, 토질이 척박하며, 생산성이 비교

적 낮아 현지 생산만으로 수급균형을 이루기 매우 어렵다.

마. 품종구조의 불균형

밀은 기본적으로 수급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우량 품종 보급률이 낮은 편이다. 쌀은 중국 전체 식용 소비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남방지역의 재배면적이 대폭 감소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수급균형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옥수수는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두는 생산의 기복이 심하고, 수입의존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북방지역에서의 대두 재배와 남방지역에서의 유채 재배의 수익성이 낮아 생산이 감소하고 있다. 식량작물(동북지역의 경우 대두, 옥수수, 벼) 간 재배면적 비율과 식량작물과 유지작물, 면화, 담배 등 경제작물 간의 재배면적 비율이 장기간 불안정할 것으로 보인다.

바. 식량재배의 수익성 저하

최근 화학비료, 농약, 농업용 경유 등 농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농가의 식량 생산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수익성이 저하되었다. 공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으로 농촌에서 이주하여 도시 공업부문에 취업한 노동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식량주산지의 절반 이상의 청장년층이 비농업부문에 취업하였다. 이에 따라 구조적으로 농업노동력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식량 생산은 이미 “부업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비농업부문으로의 취업 및 경제작물의 재배와 비교했을 때, 식량 재배의 수익성이 훨씬 낮다. 이로 인해 농민들의 식량생산의 적극성을 유인하고, 식량 생산의 안정적 발전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사. 세계 식량수급 상황 불안정

세계적으로 식량생산 증대를 통해 소비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추정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세계 곡물 소비량 증가는 2.2억 톤으로 연평균 1.1%씩 증가하고 있다. 반면 동 기간 생산량 증가는 1억 톤으로 연평균 0.5%씩 증가하고 있다. 현재 세계 곡물 비축량은 3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6년 이후 국제 식량가격

은 대폭 증가하였으며, 밀, 옥수수, 쌀, 대두, 대두유 가격은 역사상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하였다. 앞으로 세계 인구 증가, 농경지와 수자원 부족 및 이상기후 등의 요인으로 인해 세계 식량수급이 장기간 긴장 국면에 놓이게 될 것이다. 특히 에너지 부족, 높은 석유가격 등으로 세계 각국에서 곡물을 바이오연료로 전환하는 추세가 가속화될 것이고, 에너지 확보와 식량 확보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날로 심해질 것이며, 세계 식량수급의 긴장 국면이 한층 더 가중될 것이다. 중국은 국제시장을 통해 국내 식량 및 유지작물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1.4. 식량안보를 위한 지도사상과 주요 목표

가. 지도사상

등소평 이론과 “3개 대표” 중요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과학발전관을 전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은 물론, 샤오강사회(小康社會)의 전면적 건설, 사회주의 조화사회의 건설과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이라는 중대 전략에 따라 기본적으로 국내 식량공급 자립노선을 견지하고, 정책 및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농경지를 엄격히 보호하며, 과학기술 진보에 의거하여 식량 종합생산능력 제고에 힘써 식품 공급을 확대한다. 식량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식량수급의 거시조정을 강화하고, 식량수급 총량의 균형 및 주요 식량작물의 구조적 균형을 유지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에 적합하고 중국 국정에 부합하는 식량안보 보장시스템을 구축한다.

국가 식량안보 보장을 위해 다음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①생산능력을 제고한다. 농경지, 특히 기본(절대) 농지를 엄격히 보호하고, 농지의 기반시설 건설을 강화하며,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식량 생산능력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의 지원을 강화하며, 식량 단수를 제고시키고, 식량작물 재배구조를 최적화한다. 비농경지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한다.

②시장시스템을 개선한다. 식량유통의 시장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며, 자원배치에서 시장의 기초적 역할을 강화한다.

③식량수급의 거시조정을 강화한다. 식량 보조 및 가격지지 정책을 개선하고, 지방정부로 하여금 농업을 중시하고 식량 확보에 힘쓰도록 하며, 농민들로 하여금 식량작물을 재배하도

록 장려한다. 식량 비축제도를 건전화하고, 수출입 조절을 강화하며, 거시조정시스템을 건전화한다.

④식량안보 책임을 강화한다. ‘식량성(省)장책임제’를 견지하고, 소비지의 식량안보 보장 책임을 강화한다.

⑤식량 낭비를 줄인다. 식량의 수확, 저장, 운반, 가공 방식을 개선하고, 식량 생산 후의 손실을 줄이며, 식량의 종합이용률을 높인다.

나. 주요 목표

2010년까지 1인당 식량 소비량이 389kg, 2020년까지는 395kg이 되도록 확실히 보장하고, 다음과 같은 목표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①식량작물 재배면적을 안정적 수준으로 확보한다. 2020년까지 1억 2,060만 ha 이상의 경지면적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본(절대) 농지면적의 감소를 억제하고 토질을 높인다. 전국 곡물 파종면적을 8,442만 ha 이상으로 유지하고, 이 중 벼 재배면적은 약 3,015만 ha 이상으로 유지한다. 유채, 땅콩 등 유지작물 파종면적도 약 1,206만 ha까지 회복하도록 한다.

◆ 2010년, 2020년 국가 식량안보 보장 주요 지표					
구 분	지 표	2007년	2010년	2020년	속 성
생 산	경지면적(만 ha)	12,261	≥12,060	≥12,060	제약성
	그 중: 식량	7,504	>7,370	>7,370	기대성
	식량 파종면적(만 ha)	10,653	10,586	10,586	제약성
	그 중: 곡물	8,643	8,509	8,442	기대성
	식량 단위(kg/ha)	4,719	4,851	5,224	기대성
	식량생산량(억 톤)	5,016	≥5.00	>5.40	제약성
	그 중: 곡물	4.56	≥4.50	>4.75	제약성
	유지작물 파종면적(만 ha)	1,139	1,206	1,206	기대성
	초지면적(만 ha)	26,331	26,264	26,264	기대성
	육류 생산량(만 톤)	6,800	7,140	7,800	기대성
수 급	가금육, 가금 알 생산량(만 톤)	2,526	2,590	2,800	기대성
	우유 생산량(억 톤)	3,509	4,410	6,700	기대성
물 류	식량자급률(%)	98	≥95	≥95	기대성
	그 중: 곡물	106	100	100	기대성
	식량 물류 “4산화” 비중(%)	20	30	55	기대성
	유통단계 식량손실률(%)	8	6	3	기대성

②식량 등 중요 식품의 자급을 기본적으로 보장한다. 식량 자급률을 95% 이상으로 유지하고, 식량 종합생산력을 2010년까지 5억 톤 이상, 2020년까지 5.4억 톤 이상이 되도록 한다. 그 중 쌀, 밀은 완전 자급을 유지하고, 옥수수는 기본적으로 자급을 유지한다. 축산물, 수산물 등 중요한 식품도 기본적으로 자급을 유지하도록 한다.

③합리적인 식량비축 수준을 유지한다. 중앙과 지방의 식량비축 규모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한다. 비축식량의 품종구조를 합리화하고, 밀과 쌀의 비중을 70% 이상으로 한다.

④건전한 “4산화(四散化)” 식량 유통체계를 만든다. 분산 포장, 분산 출하, 분산 저장과 분산 운송을 특징으로 하는 “4산화” 현대 식량 유통체계의 발전을 가속화하여 유통비용을 줄이고, 유통 효율을 높인다. 2010년까지 식량유통 “4산화” 비율을 30%까지 높이고, 2020년에는 55%까지 높인다.

1.5. 식량안보를 위한 주요 임무

가. 식량 생산능력 제고

농경지와 수자원 보호에 힘쓴다. 가장 엄격한 농경지 보호조치를 채택하여 전국 농경지 보유량을 1억 2,060만 ha 이상으로 유지하고, 기본(절대) 농지 보유량을 1억 452만 ha 이상으로 유지하며, 이 중 논 면적은 약 3,183만 ha 이상으로 유지한다. 비농업 건설을 목적으로 한 농경지 점유를 엄격하게 통제하여 농경지의 빠른 감소 추세를 억제한다. 농경지 이용구조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토지정리와 개간을 추진하고, 토지의 집약적 이용도를 높인다. 토지비옥도 향상, 토질 측정을 통한 합리적 시비사업을 계속 실시한다. 경작방식을 개선하고, 보호성 경작을 발전시킨다.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배치를 최적화하고, 수자원을 절약하는 한편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과학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농업용수 공급을 보장하고 지하수 개발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수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관개지역 수자원 관리체계 개혁을 가속화하며 농업용수의 총량 통제와 정액 관리를 실시하여 수자원 이용률과 효율을 높인다. 농업경영 중 발생하는 오염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농가로 하요금 화학비료, 농약과 비닐의 과학적 이용을 유도하고, 유기질 비료, 바이오 비료, 바이오 농약, 분해 가능한 비닐을 확대 보급하여 농경지와 수자원 오염을 줄이고, 토질과 수자원 환경의 악화 추세를 확실히 전환시

김으로써 식량 생산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한다.

농업 기반시설 건설을 더욱 강화한다. 특히 논 수리시설 건설을 더욱 강화하고 농경지의 지력을 제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전국 관개지역의 부대시설 건설과 절수를 위한 보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관배수 체계를 개선한다. 예비 관개지역을 개발하고, 수자원이 풍부하고 양호한 토지 조건을 구비한 지역의 관개면적을 확대한다. 절수 관개와 건조지역의 절수 농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농업 관개용수의 유효 이용계수를 2005년의 0.45에서 2010년 0.50, 2020년 0.55이상으로 제고한다. 홍수피해 중점 지역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고, 중부지역 식량주산지에 대형 배수처리장을 신설하여 홍수 대비능력을 높인다. 소형 논 수리시설 건설에 힘쓰고, 현(縣)급 논 수리시설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논 수리시설 건설과 관리를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동북 흑토(黑土)지역의 토사유실 종합관리 및 수리시설 건설을 강화하여 동북지역의 쌀 종합생산능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킨다. 토질개량 사업을 강화하여 농경지의 지력과 생산성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킨다. 농업 종합개발사업과 기본 농지의 정리를 적극 추진하고, 중저 수준의 생산력을 가진 농지에 대한 개량을 적극 추진하여 가뭄과 홍수에도 안정적인 수확을 보장하고, 절수 효율이 높은 규범화된 농지를 조성한다. 2010년까지 중저 수준의 생산력을 가진 농지의 비중을 약 60%까지 낮추고, 2020년까지 그 비중을 약 50%까지 낮춘다.

식량 단수를 제고시킨다. 과학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기술 연구를 적극 추진하여 식량의 전국 평균 단수를 2010년 ha당 4,851kg, 2020년 5,224kg 수준까지 높인다. 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고, 농업 바이오기술과 정보기술의 응용 및 과학기술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신품종 선별 육종, 식량증산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유전자변형 작물 신품종 육종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작물 육종의 연구 개발 및 보급 능력을 개선하고 생산성이 높은 우량 식량 품종의 선별적 육종, 효율성이 높은 재배방식, 효율성이 높은 농업자원 이용 방면에서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며 지적재산권을 가진 생산성이 높고 품질이 우수하고 저항성이 강한 식량 및 유지작물 품종의 육종을 강화해야 한다. 농업기술 보급사업을 실시하여 슈퍼잡종교배 벼 등 생산성이 높고 품질이 우수한 신품종과 효율성이 높은 재배기술 및 재배방식을 집중적으로 보급한다. 주요 식량작물 우량 품종의 보급률을 95% 이상으로 유지한다. 과학기술의 농업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연평균 1% 포인트씩 높인다.

식량주산지의 생산능력을 강화한다. 부존자원, 생산조건 및 증산 잠재력 등 지표에 근거하여 식량 생산의 지역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기능과 발전 목표를 명확히 한다. 조건이 양호하고 생산 수준이 높으며 식량생산량이 많은 중점 생산지역 건설에 역량을 집중한다.

생태환경 보호를 전제로 자원 보유 측면에서 비교우위가 있고 증산 잠재력이 큰 예비 주산지 개발을 강화한다.

중점 생산지역, 예비 주산지 등 식량 증산 잠재력이 비교적 큰 지역의 식량 생산 증대를 위한 계획 수립을 강화한다. 우수 품종 육종기지를 조성하여 우선적으로 밀, 벼 등의 우수 품종을 확보하고 남방지역의 벼 생산을 안정화시키는 동시에, 동북지역의 중단립종 벼 생산을 확대한다. 우수 품질 벼, 우수 품질 전용 옥수수, 기름과 단백질 함량이 높은 대두 및 우수 품질 서류와 잡곡의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식량 주산지 성(省)과 서부지역 주요 식량 생산지에서 우수 품질 식량산업프로젝트, 대규모 상품식량 생산기지 조성 및 농업 종합개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주요 식량작물 생산의 기계화를 적극 추진하고, 식량 생산의 전문화와 표준화 발전을 촉진한다. 비(非)주산지 중점 식량 생산지역의 종합생산능력을 높이고, 서부지역의 휴경면적을 확대하는 한편 식용 식량 확보를 위한 농경지를 조성하여 식량자급률을 안정시킨다. 식량 및 유지작물 생산의 안정적 발전을 기초로 농경지 구조와 배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농산업구조와 지역배치의 최적화를 촉진한다.

농업 서비스체계를 구축한다. 식량 등 농작물 품종의 보호, 품종 개량, 개량 품종의 보급, 품질 검사 등 서비스 관련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한다. 농업기술 보급체계 개선과 건설을 추진하고, 자원을 종합적으로 배분하며, 효율성이 높은 농업 관련 기층 서비스기구를 건설하여 농업기술 보급 서비스기능을 강화한다. 식량 산업화 발전을 적극 추진하여 생산의 조직화 수준을 높인다. 병충해 방제 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주요 식량작물의 유해생물 정보와 관리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식물보호 수준을 높인다. 농업 기상재해정보 관측서비스체계를 확립하여 농업 기상재해 예측과 관측 수준을 높인다. 식량 품질안전 기준을 개선하여 식량 품질안전체계를 건전화한다. 농촌지역에서 식량 수확 후 서비스를 강화하여 농업정보서비스체계를 확립한다.

◆ 식량 생산능력 증진을 위한 중점 추진사업

대규모 상품식량 생산기지: 식량 주산지 성(省)과 비(非)주산지 성의 중요 식량 생산지역에 시 단위의 생산성이 높고 안정적인 대규모 상품식량 생산기지를 건설하고, 소형 논수리시설, 우량품종 육종시설 등 식량 생산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여 식량 종합생산능력을 제고한다.

우수 품질 식량산업프로젝트: 식량 주산지 현(縣)에 표준화된 식량 재배 농지를 건설하여 식량 종합생산능력을 제고한다.

식량 증산기술 개발사업: 식량 주산지에 핵심 시험지구, 시범지구, 보급지구를 건설한다. 증산 기술의 새로운 모델을 연구개발하고, 생산성이 높은 우수 품종을 선별 사용하는 대규모 면적의 3대 식량작물(밀, 벼, 옥수수) 주산지에서 지속적으로 증산을 달성하도록 한다. 또한 무공해 식량을 생산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는 한편 생산 후의 손실을 줄이는 등 제 영역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도록 한다.

바이오 육종 전문사업: 농산물 품질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품질이 우수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으며 저항력이 큰 신품종을 선별 재배하고 보급을 확대한다. 경쟁력을 갖춘 몇 개의 대형 종묘기업(그룹)을 육성하여 동식물 신품종 보급과 응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농산물 생산량 증대와 효율성 제고를 촉진한다.

종자 사업: 농작물 품종자원 보존, 품종 개량, 개량 품종 보급 및 종자 품질 측정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건설을 강화하여 우량 품종 보급률을 약 95%로 유지한다.

농업기술 보급 사업: 우수 농산물과 우수 생산지를 중점 대상으로 하고, 주요 품종 및 기술의 보급, 생산 주체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농업기술 보급 사업을 전개한다. 대상 지역에 과학기술 시범농가 100만 호를 육성하고, 시범 농가를 중심으로 2,000만 호의 농가를 견인하며, 1만 여개의 신행 농업기술 서비스조직을 발전시킨다.

대규모 관개지역 부대시설 건설과 절수를 위한 보수 사업: 관개지역 부대시설 건설 및 절수관개 사업을 전개하여 수리관개시설의 이용 효율과 관개지역의 생산성을 제고한다. 2020년까지 전국의 대규모 관개지역 부대시설 건설과 절수를 위한 보수사업을 완성한다.

대형 배수처리장 보수 사업: 중부지역 식량주산지의 대형 배수처리장 신축 및 보수를 실시하여 홍수 발생 시 배수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생산능력을 제고한다.

건조지역 농업경영 시범사업: 가뭄에 대비하여 농지 절수시설을 건설하고 절수 농업기술을 보급하며 강수 이용 효율, 토양의 비옥도 및 가뭄 저항력을 높여 건조지역의 농업 생산 수준을 제고한다.

식물보호 사업: 농업 유해생물 경보 및 관리감독체계, 우수 농산물의 유해생물 비(非)전염지역 조성, 기술지원 등을 강화하여 농업 유해생물 재해 예방 능력을 제고한다.

나. 비식량작물 생산 증대

식량 절약형 목축업을 발전시킨다. 사육 품종구조를 조정하고, 품질이 우수하고 효율이 높은 사료작물 재배를 점차 확대하여 절약형 초식가축 사육을 크게 발전시킨다. 북방지역의 천연 초지에 대한 보호와 개량을 강화하고, 농업지역 비탈밭과 분산되어 있는 초지를 충분히 이용하여 생산성이 높고 안정적인 사료용 인공 초지를 만들어 초지 생산성을 제고한다. 남방 지역 초지 자원에 대한 개발을 가속화하고, 산지와 구릉지에 다년생 인공 초지, 생산성이

높은 1년생 사료용 초지를 적극 조성하여 남방지역 목축업의 조사료 공급지를 확대한다. 2020년까지 전국 목초지 보유면적을 22,043만 ha 이상으로 유지한다. 농업지역과 반(半) 농업지역에서 벳짚, 옥수수대 등을 이용한 식량 절약형 목축업 발전을 촉진한다. 가축 사육 방식을 개선하고, 목축업의 규모화, 집약화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사료 전환 시의 효율을 제고한다.

수산양식업과 원양어업을 적극 발전시킨다. 내륙 담수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여 양식업을 적극 확대하고, 염분을 함유한 저지대의 수산양식업을 합리적으로 개발하여 담수양식업 면적을 확대한다. 해양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근해 어업자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원양 어업의 어획 규모를 증대시킨다. 수산자원과 수역 생태환경 보호를 강화하여 수산양식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한다.

◆ 비식량작물 생산 증대를 위한 중점 추진사업

장강유역의 유채 생산기지: 장강유역 유채 생산지역을 중심으로 육종과학연구소의 지원 하에 우량 품질 유채 생산기지를 집중적으로 건설하여 품종을 개량하고 품질을 개선하며 생산량을 높인다.

사탕수수 생산기지 건설: 광시(廣西), 윈난(雲南), 광둥(廣東), 하이난(海南) 등 사탕수수 생산에 유리한 지역의 사탕수수 생산기지 건설을 중점 지원한다. 생산기지의 관개조건을 개선하고, 사탕수수 신품종 육종과 보급을 확대한다.

돼지와 젓소의 표준화 사육장(지구) 건설: 돼지와 젓소 표준화 사육장의 분뇨처리와 수도, 전기, 도로, 방역 등 부대시설을 개선하여 돼지와 젓소의 표준화 사육수준을 높인다.

가축수산 우량품종 사업: 가축수산 우량품종 육종보급소를 건설하고, 우량 품종자원 보호와 품종 질량 측정 시설을 개선하여 가축수산 우량품종 육종보급 수준을 높인다.

유지작물 생산을 확대한다. 식량작물 생산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기초 위에서, 대두, 유채 등 주요 유지작물 생산 확대에 노력하여 식물성 식용유의 자급률을 안정시킨다. 동북지역의 기름함유량이 높은 대두, 장강(長江)유역의 유채 생산기지를 지속적으로 건설한다. 남방 지역에서 겨울철 휴경지를 유채 생산에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지도한다. 유지작물 주산지의 농지 수리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우량 품종 유지작물의 선별적 육종을 가속화하며, 생산성과 기름 함유량이 높은 신품종을 확대 보급하여 대두, 유채, 땅콩 등 유지작물의 단수를 제고한

다. 2010년까지 유지작물의 단수를 2006년보다 약 6%가량 제고하고, 유지작물의 기름함유율은 평균 2% 포인트 제고한다. 희귀 유지작물을 적극 육성하고, 참깨, 해바라기 등의 작물 생산을 확대하는 한편 면화씨를 식용유 생산에 충분히 이용한다.

목(木)과 식용유산업을 발전시킨다. 산지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목과 식용유산업을 발전시켜 특색있고, 비교우위가 있으며 새로운 목과 식용유의 생산기지를 건설한다. 우량 품종을 적극 육성하고 도입하여 동백나무, 올리브, 호두, 밤 등 목과 식용작물 품종의 품질과 단수를 제고한다. 목과 식용유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목과 식용작물 상품의 정제 및 가공을 촉진하여 목과 식용유 공급을 확대한다.

다. 국제적 협력 강화

식량 수출입체계를 개선한다. 국제시장을 적극 이용하여 국내 수급을 조절한다. 국내 식량 자급수준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전제에서 국제시장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수출입을 조절한다. 식량 수출입에서 국유무역기업의 역할을 계속해서 발휘하도록 한다.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일부 중요 식량 생산국들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농업(식량과 유지작물) 협력관계를 체결한다. 농업의 “해외진출”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국내 농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며,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식량 개발수입 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식량안보 보장 능력을 제고한다.

라. 식량 유통체계 개혁

식량 유통체계 개혁을 강화한다. 현대적인 식량 유통산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식량 유통시장 주체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국유식량기업 개혁을 강화하여 국유식량기업의 합병 및 재건을 적극 추진하고, 식량 수매·저장·가공 관련 일부 국유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식량유통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식량 수매·판매·가공 등의 과정에서 대규모 기간기업(龍頭企業)으로 하여금 식량 계약생산의 확대를 장려하여 식량산업화 발전을 촉진한다. 농민전문합작조직과 농촌 중개인을 육성하여 농민들에게 식량 생산과 판매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각종 중개조직으로 하여금 농민들을 대상으로 시장마케팅, 정보서비스와 기술교육훈련을 전개하도록 하여 농민들의 시장화 의식을 제고한다. 식량협회 등 중개조직이 자율적으로 시장질서 보호에 충분한 역할을 하도록 한다.

식량시장체계를 건전화한다. 주요 식량작물의 지역적, 전문적 도매시장과 대·중도시의 완제품 식량 및 유지작물 도매시장을 중점적으로 건설하고 발전시킨다. 식량의 통일적 배송과 전자상거래를 발전시킨다. 소도시의 식량 및 유지작물 공급망과 농촌의 식량거래시장을 적극 발전시킨다. 식량 선물시장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식량기업과 농민전문합작조직이 선물시장을 통해 리스크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국적으로 식량 유통과 관련한 공공정보망을 구축하여 인터넷 상에서의 식량교역을 촉진한다.

식량 물류체계 건설을 강화한다. 현대적인 식량물류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식량물류 “4산화” 개혁을 촉진한다. 전국적으로 식량 물류유통망 구축을 가속화하고, 동북지역 식량 유출, 황회해(黃淮海)지역의 밀 유출, 장강 중·하류지역 쌀 유출과 옥수수 유입, 화동(華東) 및 화남(華南)연해지역 식량 유입, 북경·천진지역 식량 유입 등 6대 지역을 포괄하는 식량물류유통망을 중점적으로 보완 및 건설한다. 교통 중심지와 식량 주요 집산지에 전국 식량물류망의 중간 경유지와 식량 물류기지를 건설한다. 대규모 광역 식량 물류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철로와 해운을 연결하는 운송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식량 수집—출하—운송 네트워크를 개선한다. 식량 물류장비 수준과 정보화 수준을 제고한다.

마. 식량 비축체계 개선

식량 비축통제체계를 개선한다. 중앙의 전략적 특별 비축과 조절용 주기성 비축을 상호 결합하고, 중앙 비축과 지방 비축을 상호 결합시키는 한편 정부 비축과 기업의 상업용 최저 비축을 상호 결합한 식량 및 유지작물의 비축통제체계를 개선하여 국가의 거시적 통제능력을 강화하고 국가 식량안보를 보장한다. (1)중앙의 전략적 특별 비축은 주로 심각한 자연재해나 돌발 사태로 인한 공급부족 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2)중앙의 조절용 주기성 비축은 주로 중앙 정부가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보호성 구매방안으로 이용되며, 흉작시 식량 공급을 조절하기도 한다. (3)지방 비축은 주로 지역적 수급 불균형, 돌발 사태로 인한 식량의 긴급 수요를 해결하는데 이용된다. 각 성(자치구, 시) 비축량은 “해당 생산지역의 3개월 분의 소비량을 유지하고, 소비지역의 6개월 분의 소비량을 유지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의 식량행정 주관부서가 결정하며 중앙 비축과 연계시킨다. (4)식량 수매가 공판매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은 반드시 식량 및 유지작물의 최저 비축 의무를 지며, 구체적인 기준은 성급 인민정부가 정한다. 식량 수매 및 판매 기업으로 하여금 농민 및 식량을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을 위해 대리 수매·판매·저장 업무를 수행하도록 적극 장려한다. 농민들의 식량 저장기술을 제고한다.

비축 지역의 배치와 품종구조를 최적화한다. 중앙 비축 식량 및 유지작물의 지역적 배치를 점차 최적화되도록 조절하고, 주요 소비지역, 서부의 식량 부족지역과 빈곤지역을 위주로 중점 배치한다. 중요 중간 물류 경유지, 식량 집산지를 충분히 이용하고, 대·중 규모 도시의 안정적인 식량공급 보장 능력을 강화한다. “식용 식량안보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기타 용도의 식량도 함께 관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중앙 비축 식량과 지방 비축 식량의 품종구조를 최적화하여 밀과 쌀의 비축률을 70% 이상으로 유지하고, 쌀과 대두의 비축률을 제고한다. 중앙과 지방의 식물성 식용유 비축을 점차 확대한다. 중요 대·중 규모 도시의 완제품 식량 및 유지작물의 비축을 증대시켜 식량 및 유지작물 시장의 긴급 수요에 대비하도록 한다.

비축식량 관리시스템을 건전화한다. 중앙 비축식량의 수직적 관리체계 건설을 강화한다. 중앙 비축식량의 입고-방출의 순환시스템을 건전화한다. 소비지 비축식량의 순환과 생산지 식량 수매를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사업시스템을 구축한다. 비축 식량의 관리감독시스템을 개선하여 정확한 수량, 우수한 품질 및 안전 비축을 보장한다. 비축식량 저장고의 기반시설 건설을 강화하여 식량 비축 환경을 개선하고, 식량 저장기술 응용수준을 제고하여 비축식량의 안전을 보장한다.

바. 식량 가공체계 개선

식량 및 유지작물 가공업의 규모화, 집약화 방향으로의 발전을 유도한다. “안전, 품질, 영양, 편리”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전통식품의 공업화 생산을 촉진하고, “우수하고(優) 새롭고(新) 특별한(特)” 상품의 비율을 높인다. 식량 및 유지작물의 식품가공 부산물의 종합적 이용을 촉진하여 자원 이용률과 부가가치 효과를 높인다. 식량과 유지작물 가공기업으로 하여금 품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브랜드 개발에 힘쓰도록 하여 식량과 유지작물 식품가공업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도록 한다.

사료가공업을 적극 발전시킨다. 옥수수 생산 증대로 축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료 공급을 충족시킨다. 사료 생산구조를 최적화하고, 사료배합 기술을 개선하는 한편 농축사료, 보충사료 및 혼합사료 발전을 가속화하고, 농축사료와 혼합사료의 비중을 높여 안전하면서 품질이 우수하고 효율이 높은 사료 생산체계를 수립한다. 벼짚과 옥수수대 등의 자원을 적극 이용하여 사료용 식량의 부담을 완화시킨다.

식량안보를 보장하는 전제에서, 식량의 정제 및 가공업을 발전시킨다. 바이오연료 생산은 비식량작물 이용 방침을 견지하고, “식량작물의 경작지 확보와 충돌하지 않고, 식용 식량 확보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준수하며, 식량을 원료로 한 정제 및 가공업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식량 가공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도이념을 제정하거나 보완하고, 식량의 정제 및 가공에 대한 거시적 조정과 계획 수립을 강화한다. 국무원의 투자관리 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서는 옥수수 정제 및 가공사업을 개시하거나 확대할 수 없도록 통제한다.

◆ 식량 유통 및 가공부문의 중점 추진사업

현대적인 식량 물류체계 건설: 동북지역 식량 유출, 황회해지역 밀 유출, 장강 중·하류 지역 쌀 유출 및 옥수수 유입, 화북 연해지역 식량 유입, 화남지역 식량 유입, 북경·천진지역 식량 유입 등 6대 지역을 포괄하는 광역 물류유통망을 건설하거나 보수한다.

식량유지작물 비축 저장시설 건설 및 보수: 일부 비축 식용유 저장고(탱크), 중점 중·대 도시의 완제품 식량 및 유지작물 저장고를 중점 건설하거나 보수한다.

농가비축 확대: 주요 식량 주산지와 서부지역의 일부 농가를 지원하여 표준화된 소형 식량저장고를 설치하고 표준화된 저장 장비를 배치하여 농가단위의 저장 및 처리 조건을 개선하는 한편 저장기술을 보급하여 식량 생산 후의 손실률을 줄인다.

신형 사료의 개발 및 이용: 국가 식량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목축업의 규모화, 집약화 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옥수수대, 볏짚 등을 이용한 신형 사료를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배합사료와 전문사료의 비율을 제고한다.

식품 생산장비 자체 개발: 식품 가공 및 포장 관련 설비제조업체 가운데 기반이 탄탄하고 시장 전망이 좋으며 기술수준이 높고 관련 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 지원하며, 유명 브랜드를 개발하여 국내외 시장 점유율을 제고한다.

식량유지작물 가공기술 개선: 기존 식량가공기업이 생산성, 품종, 자원 이용 및 관리기술 등을 통합 조정하도록 장려한다. 일부 중·대형 식량 및 유지작물 가공기업을 지원하여 기술을 개선하도록 하고, 선진적인 기술장비를 보급하거나 도입을 촉진하여 식량 및 유지작물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실현하고 손실을 줄이며, 생산 효율을 높인다.

식량유지작물 관측경보 및 정보서비스체계 확립: 기존의 식량 및 유지작물 시장정보 자원을 통합·조정하고, 식량 및 유지작물의 생산, 소비, 가공, 판매, 수출입, 비축, 시장수급, 가격을 포함한 관측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적기에 식량 및 유지작물의 수급 실태와 변화 추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사전적인 통제 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식량 및 유지작물의 시장 수급을 정확하게 예측하도록 한다.

1.6. 식량안보를 위한 주요 정책과 조치

가. 식량안보 책임 강화

식량안보의 보장은 줄곧 국가의 안정적 통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각 관련부문은 사상을 통일시키고 인식수준을 높여 식량안보사업을 매우 중시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별로 식량안보 책임제를 도입하고, ‘식량성(省)장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성급 인민정부는 현지 농경지와 수자원 보호, 식량 생산, 유통, 비축과 시장 조절 사업을 전면적으로 책임진다. 주산지는 식량 생산능력을 한층 제고하여 전국에 주요 상품식량을 공급한다. 주산지는 기존 식량자급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는 지역은 균형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는 생산 수준을 점차 회복하거나 식량 생산능력을 제고한다. 농경지와 기본(절대) 농지 보호, 식량작물 파종면적의 안정적 확보, 지방의 식량 비축량 확보와 식량위험기금 충당을 위한 지방 할당 자금 확보 등의 임무를 각 성(자치구, 시)이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성급 인민정부 실적평가시스템에 반영하여, 효과적인 식량안보 관리감독 및 실적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무원의 관련 부문은 전국의 농경지와 수자원을 보호하고, 식량생산의 균형을 책임지며, 식량 수출입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주산지의 식량 생산 증대를 지원하고, 중앙 정부의 식량 비축을 실시하며 가격을 조절한다. 또한 기존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각 지역, 부문, 농민들이 식량 생산과 발전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독려한다.

식량 수매·판매기업 및 식량가공기업은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식량 수매·판매기업은 필수 식량 비축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따라 현지 식량행정 관리부문에 식량 구매, 소비, 비축 등의 기본적 수치를 보고하는 임무를 이행한다. 식량을 다루는 모든 경영자는 식량 긴급 조달임무를 반드시 책임져야 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국가의 통일적 안배와 조정을 따른다.

나. 생산자원 보호

농가토지도급경영제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농업경영체제의 혁신을 가속화한다. 법률에 근거하여 토지도급경영권의 유동을 촉진하며,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규모화 경영에 적합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발전시키며, 토지의 규모화, 집약화 경영을 촉진하여 토지 생산효율을 제고한다.

성급 인민정부의 농경지 보호목표 책임제를 실시하는 한편 할당된 경지보호 임무를 철저히 집행하고 절대농지 면적의 감소를 막고 용도변경을 제한하며 토질을 제고하도록 한다.

토지 이용 총괄계획, 도시 총괄계획, 촌과 진의 계획 추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토지 이용 연간 계획의 관리를 강화하고, 비농업용 건설용지 규모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토지의 집약절약 이용을 추진한다.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공청회 및 공개제도를 철저히 실시하여 사회적 감독을 강화한다. 농경지 점유와 보충의 균형제도를 철저히 실시하고, 보충 토지의 등급에 평가와 심사를 강화하고, 성(省)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점유와 보충을 실시하는 것을 제한한다.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과 안배제도를 완비하고, 토지 수익의 분배시스템을 건전화한다. 휴경에 대한 처벌제도를 수립한다. 국가의 토지관리감독제도를 건전화하고, 토지 관련법을 엄격히 집행하여 토지 관련 위법행위를 철저히 막는다.

초원 등 비농경지 자원의 보호 및 건설을 강화한다. 초지보호제도를 수립하고, 기본 초지를 지정하는 한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기본 초지를 점유·이용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다. 지역을 구분하여 방목, 휴경 및 방목금지를 실시하는 제도를 수립하여 초지 공급과 목축업 수요 간 균형을 점차 실현한다. 초지 생태환경 보호와 건설을 강화하는 한편 천연 초지의 방목을 금지하고 초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초원의 퇴화와 사막화를 방지한다. 남방 지역 초지자원 보호와 개발 및 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수역과 삼림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다. 농업에 대한 과학기술 지원 강화

정부가 주도하는 다원화된 농업기술 연구투자시스템을 만들어 농업(식량) 과학기술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국가의 중요 과학기술전문사업, 과학기술지원계획, 863계획, 973계획 등을 농업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농업과학기술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상품화하여 자금으로 전환시키고, 농업기술 혁신 결과를 축적하고 개량하여 보급을 확대한다.

건전한 농업과학기술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농업과학기술진보를 촉진한다. 국가 농업과학기술연구단지, 지역 과학기술연구센터의 혁신능력을 강화하고, 현대 농산업기술체계 건설을 추진하여 농업지역별 혁신능력을 제고한다. 국가 농업기술 보급기관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연구기관과 대학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농업과학기술 성과 보급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한다. 농업과학기술연구원의 개혁을 심화하고, 과학기술 혁신 인센티브시스템을 수립하는 한편 농업과학기술연구기관과 대학들로 하여금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과 보급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농업 관련 기업, 농업전문합작경제조직으로 하여금 농업 기술혁신과 보급 활동을 전개하

도록 하고, 농민들에게 과학기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격려·지도한다. 개발된 과학기술을 농가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보급 사업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중요 기술의 보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과학기술 성과를 촌 혹은 농가에서 도입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시스템과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찰한다. 농촌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농민 과학기술 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하며, 농민들의 과학기술 습득과 응용에 대한 의욕을 불러일으켜 농민들의 식량 재배기술을 제고한다. 농업 과학기술의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혁신능력을 강화한다.

라. 농업투자 규모 확대

식량 생산에 대한 투자규모를 확대한다. 농업 기반시설을 강화하고, 삼농부문에 대한 국민소득 배분 및 국가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농민 소득을 증대시킨다. 각급 인민정부는 식량 비축량을 적절히 조정하고, 증산에 주력한다는 원칙에 따라, 농업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정부의 대 농업 지원 및 투자구조를 최적화하고, 식량 종합생산능력 제고를 주요 목표로 하여 농지 수리시설 등 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국가는 기본 농지정리, 토지 재개간, 농업 기상재해 관측정보시스템 구축, 농작물 병충해 방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각종 농업관련 투자는 식량주산지, 식량주산지 현(縣), 유지작물 주산지 현 및 기본 농지 보호 중점지역에 집중되도록 한다. 대규모 식량 재배 농가와 전업 농가를 적극 지원하여 식량 생산을 발전시킨다.

금융의 농촌, 농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농촌 금융서비스체계를 점차 건전화하고, 농업정책성 대출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식량 및 유지작물 생산자와 대규모 목축업 농가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담보방식을 개발하고, 담보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업 재생산에 필요한 자금 수요를 보장해준다.

식량 보조금과 인센티브 정책을 개선한다. 식량직불금, 농자재종합직불금, 우량종자 보조금과 농기계구매보조금정책을 개선하고, 중앙 재정의 식량 재배농가에 대한 보조금 규모를 매년 큰 폭으로 확대한다. 식량최저수매가정책을 개선하고, 식량가격을 점차 조정하는 한편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여 식량 재배농가들이 커다란 이익을 얻도록 한다.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목표가격 보조금제도를 연구하고, 시장화 추세에 부합하고 중국 국정에 적합한 신행 식량가격지원제도를 수립하여 식량 생산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한다. 중앙은 식량(유지작물) 주산지 현(縣)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동북지역의 대두, 장강유역의 유채 및 목(木)과 식용유 생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농업정책성 보

험정책을 개선하고, 주요 식량작물의 위협회피, 손실보전시스템과 재해 발생 후 농지 회복을 위한 긴급보조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한다.

식량위험기금제도를 개선한다. 식량 생산 및 판매 구조변화에 따라, 식량위험기금제도를 개선하고, 식량주산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식량 생산과 소비의 연계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식량 주요 소비지의 주산지에 대한 건전한 이익보상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산지의 식량 생산발전을 지원한다. 철도와 교통부문은 광역 식량 운송에 대한 조직화와 지도 및 협조를 강화한다. 식량 주요 소비지는 소비지의 식량기업으로 하여금 생산지에 식량 생산기지를 조성하도록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생산지에서 식량 생산, 구매에 참여하여 소비지로 운송하도록 한다. 생산지 식량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지에 식량 판매망을 구축하도록 장려하여 소비지의 식량 공급을 보장한다. 주산지 식량기업이 소비지에 물류배송센터와 저장고시설을 건설하도록 주요 소비지의 지방 인민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분산된 식량 물류시설 건설에 투자를 확대한다. 여러 경로의 사회자본을 동원하여 식량 물류시설을 건설하고, 식량 물류의 “4산화(四散化)”개혁을 적극 추진한다. 식량의 거시적 조정에 이바지하는 중요 물류유통망과 중간 물류경유지에서의 분산 포장, 분산 출하, 분산 저장, 분산 운반 및 정보검색 등 시설 건설을 각급 인민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마. 식량수급의 거시조정 강화

식량 통계제도를 건전화한다. 식량 통계 조사수단을 개선한다. 식량 생산, 소비, 수출입, 시장, 비축, 품질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식량 관측경보시스템과 시장정보교환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식량의 시장조절 부문 간 협력팀을 구성하여 효율성이 높고 탄력적인 식량 조절시스템을 구축한다.

식량 긴급조달시스템을 건전화하고 개선한다. 《국가식량긴급예비방안(國家糧食應急預案)》 각 항목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고, 합리적인 지역 배치를 실시하며 효율성이 높고 협력적인 식량 긴급조달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전국 중대 도시와 기타 중점지역의 식량 가공, 공급 및 비축과 운송 등 긴급시설에 대한 건설과 유지보수를 강화하여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한다. 긴급조달 네트워크에 포함되는 가공기업과 판매기업에 대하여 지방 인민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식량 및 유지작물의 긴급 보장능력을 강화한다. 특수 계층에 대한 식량 공급 보장제도를 개선하여 빈곤층과 저소득 계층의 식량 수요를 보장한다. 물가변동과

상호 연계된 도시와 농촌의 최저생활 기준의 동태적 조절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시와 농촌 저소득 계층의 생활수준이 물가상승으로 인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한다.

식량 유통산업 정책을 개선한다. 식량 시장진입제도를 한층 더 개선하고, 국내 식량 및 유지작물의 수매, 판매, 저장, 운송, 가공 등 영역의 산업정책을 수립하여 관리방법을 개선한다.

식량 행정관리체계 건설을 가속화한다. 식량 행정 관련법 집행, 관리감독 및 통계조사 업무의 실시를 건전화하여 식량의 거시적 조정 및 관리 수요를 보장한다.

바. 식량 절약

자원 절약형 사회 건설 추세에 따라 선전과 교육을 강화하고, 전 국민의 식량안보 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 전체가 식량을 귀중히 여기고 낭비를 막는 건전한 풍토를 조성한다. 식량의 수매, 저장 및 운송방식을 개선하고, 농가에 과학적인 식량 저장기술을 보급하여 식량 생산 후의 손실을 줄인다. 과학적 식량 이용을 적극 제창하고, 식량 및 유지작물의 불합리한 가공 전환을 통제하여 식량의 종합이용률과 사료 전환수준을 제고한다. 과학적 식사, 건강한 소비를 유도하고, 식량 및 유지작물의 불합리한 소비를 억제하는 한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식사구조 형성을 촉진하여 국민의 생활수준과 영양수준을 제고한다. 식당, 음식점 등 요식업계가 “녹색음식, 식량 절약”의 문명 규범을 수립하여 음식절약제도를 수립한다. 식량 이용 시 절약을 장려하고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한다.

사. 식량관련 법률체계 구축

《농업법》, 《토지관리법》, 《초지법》, 《식량유통관리조례》, 《중앙비축식량관리조례》 등 법률 법규의 집행을 강화한다. 식량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식량 품질과 위생안전을 보장하여 정상적인 식량 유통질서를 유지한다. 《식량안보법》을 제정하여 공포하고, 중앙과 지방의 비축식량 관리, 규범화된 경영과 교역 행위 등 방면의 관련 법규를 제정 혹은 수정한다.

아. 전문 계획의 수립 및 실시

식량 생산, 유통, 비축, 가공 등 방면의 전문 계획을 수립하고, 본 《요강》의 실행을 촉진

하는 한편 본 《요강》을 통일 강령으로 하여 각각의 전문 계획이 통일적으로 연계된 계획체계를 구축한다. 각 지역과 각 유관부문은 본 《요강》과 각각의 전문 계획의 요구에 따라 조직적으로 실천에 옮긴다.

◆ 향후 중점 추진 계획

1. 전국 식량 5천만 톤 증산 계획(2009-2020년)은 발전개혁위원회가 책임지고 농업부, 수리부(水利部), 교통운수부, 환경보호부 등의 부문과 협력하여 수립한다.
2. 농경지보호와 토지정리 및 재개간 계획은 국토자원부가 책임지고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수립한다.
3. 수자원 보호와 개발이용 계획은 수리부가 책임지고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수립한다.
4. 농업 및 식량 과학기술발전 계획은 과기부가 책임지고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수립한다.
5. 식량 절약형 축산업 발전 계획은 농업부가 책임지고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수립한다.
6. 유지작물과 식물성 식용유 발전 계획은 발전개혁위원회가 책임지고 농업부, 국가식량국, 상무부, 공업·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 임업국 등의 부문과 협력하여 수립한다.
7. 현대 식량 물류 발전 계획은 발전개혁위원회가 책임지고 국가식량국 등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수립한다.
8. 식량 비축체계건설 계획은 발전개혁위원회가 책임지고 국가식량국, 재정부, 중국저비량관리총공사(中國儲備糧管理總公社) 등 관련 부문(기구)과 협력하여 수립한다.
9. 식량 가공업 발전 계획은 공업·정보화부가 책임지고 국가식량국, 농업부 등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수립한다.
10. 주민의 과학적이고 건강한 식량 및 유지작물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 조치는 국가식량국이 책임지고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제정한다.

2. 《농촌개혁 발전 추진에 관한 몇 가지 중대 문제의 결정》²⁷

중국 공산당은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현재 처해진 현실과 우리의 임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한지 30주년이 되는 이 시기에, 우리는 농촌개혁의 찬란한 여정과 고귀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되돌아보고, 당 전체가 사회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여,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에 박차를 가해, 도시와 농촌을 통합 발전시켜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의 정신을 바탕으로 과학발전관을 실천하고 ‘샤오강사회(小康社會)’건설이라는 위대한 목표를 실현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이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전체회의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농촌의 개혁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2.1. 새로운 단계의 농촌개혁의 의의

삼농문제(농업, 농촌, 농민문제)는 당과 국가발전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 혁명·건설·개혁이라는 각각의 역사적 시기에 우리 당은 마르크스주의 기본 원리를 구체적·실질적으로 중국의 현실에 결부시켜 항상 삼농문제를 중시하고 진지하게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하여 신(新)민주주의 혁명 노선과 사회주의 사업 발전의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할 수 있었다.

1978년 중국 공산당 제11기 3중전회에서는 당과 국가의 주요 임무를 경제부흥으로 정하고, 개혁·개방이라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 우리 당은 국내외 발전 상황을 파악하고 농민의 창조정신을 받들어 가장 먼저 농촌의 개혁을 시행하였다. 또한 이것이 국가 전체의 개혁으로 이어지게 하여, 국민들이 ‘개혁발전’이라는 장엄한 서사시를 쓸 수 있도록 이끌었다. 개혁개방정책 추진과정에서 우리 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마오쩌둥(毛澤東)사상·덩샤오핑(鄧小平)이론·3개대표론(三個代表論)이 중요한 지도사상이라는 사실을 변함없이 견지하였다. 그리하여 과학발전관을 관철시켜, 낡은 전통이나 관습에서 벗어나 진리를 추구하고 시대에 발맞추어 농촌개혁을 끊임없이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농촌에 엄청난 변화가 일게

27 2008년 10월 12일 중국 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08.10.9~13)에서 심의, 통과된 보고서 《中共中央關於推進農村改革發展若干重大問題的決定》을 번역하였음.

하였다. 먼저 인민공사를 폐지하고, 토지도급경영제도를 바탕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연결되어 있는 쌍층경영제도를 구축하였다. 농산물시장 확대·농업세 폐지·직접지불제를 실시하여 중국 국내 상황에 적합하면서 사회생산력 향상에도 이바지하는 농촌경제체제를 확립하였다. 둘째, 식량 생산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농산물 공급량이 날로 풍부해졌으며, 농민 소득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또 빈곤구제 개발정책이 분명한 성과를 내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13억 인구의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향진기업(鄉鎮企業)의 등장, 소도시의 놀라운 발전, 농촌시장의 번영, 농촌 노동력의 대규모 취업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또 수많은 농민공(農民工)이 산업인력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아 중국특색의 산업화·도시화·농업현대화 추진에 박차를 가했고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산업과 농업의 유대 관계를 끈끈히 할 수 있게 했다. 넷째, 농촌의 사회주의 민주정치 확립과 정신문명의 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공공사업 발전을 가속화했다. 많은 농민의 사상·윤리의식과 과학·문화 및 건강의 질이 두드러지게 향상되었다. 마지막으로 농촌 내의 공산당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농촌에서 공산당이 핵심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해 당의 집권 기반을 튼튼히 하였다. 농촌개혁 발전이라는 위대한 과제는 수많은 농민의 적극성을 크게 고취시키고, 농촌의 사회생산력을 크게 발전시켰으며, 많은 농민의 물질문화 수준을 크게 개선시켰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농촌개혁 발전의 위대한 실천은 중국의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는데 창조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 생활수준을 먹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단계에서 전체적 ‘샤오강사회(小康社會)’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 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요소를 극복해내고 사회 전체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실한 기초를 세울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을 개척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이론을 형성해 나가는 데 고귀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게 했다.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삼농문제 해결을 당이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정하고 농업을 골자로 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개혁의 방향 및 중국특색의 농업현대화 노선을 견지해 나가야 한다. 이와 동시에 농민의 물질적 이익과 민주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 때 농촌의 사회생산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농촌 경제사회를 전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현재 국제정세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중국의 개혁발전은 중요한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중요하고도 전략적인 기회를 잘 포착·이용하여, 전면적 ‘샤오강사회’건설이라는 위대한 목표를 실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가속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낡은 사상과 관습을 타파하여 개혁개방정책 견지·과학발전 추진·조화로운 사회 발전 촉진에 부합하는 농촌개혁 발전을 한결같이 추진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낡은 사상과 관습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촌개혁 발전이라는 위대한 과제와 결부시켜 과감하게 연구하고 용감하게 개척하여 새로운 이념과 노선으로 농촌 발전이라는 과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이는 당의 이론을 개혁하고 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데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한다. 개혁개방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촌개혁이라는 핵심 과제를 먼저 해결하여 도시와 농촌의 통합발전에서 큰 성과를 거둬야 한다. 또 농촌의 발전을 추진하는 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며, 나아가 경제사회발전에도 큰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다. 과학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발전이 선행되어, 국가의 식량안보와 주요 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식량증산·농민소득 증대·농촌 번영을 촉진하여 중국의 경제사회가 전체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조화로운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농촌의 생활안정이라는 큰 목표를 실현하여 농촌사회의 관리제도를 재정비하고, 사회평등과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평안한 생활을 보장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통치 안정을 위한 튼튼한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은 새로운 변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리고 중국 농업은 국제 협력 및 경쟁에 참여하는데 있어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즉 중국은 농업개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특히 도농 이원화 구조가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먼저 농촌 경제체계가 아직 완비되어있지 않고, 농업의 생산관리 조직화 정도도 매우 낮다. 또 농산물시장 체계와 농업서비스체계 및 국가의 농업 지원보호체계 역시 완비되지 않아, 도농의 경제사회 발전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둘째, 농업발전 방식이 여전히 집약적이지 않으며, 농업의 기초인프라와 기술장비도 여전히 낙후되어 있다. 농경지가 줄어들고 있고, 인구·자원·환경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확대되고 있으며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다.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는 식량공급 문제로 인한 갈등요인이 두드러지고 있어 국가의 식량안보와 주요 농산물의 공급 균형을 이루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셋째, 농촌의 사회사업과 공공서비스 수준이 낮고 지역발전 수준과 도농 소득격차가 크기 때문에 농촌의 낙후된 모습을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 넷째, 농촌사회의 이익구조가 변화하여, 일부 지방 농촌의 하부조직이 약해지고 느슨해지고 있다. 따라서 농촌의 민주법제 확립, 하부조직 개혁, 관리 강화가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농업의 기초가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강화해야 하고, 농촌의 발전수준이 아직도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농민소

득 중대에는 아직도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농민소득 중대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미리 위기에 대응하고 각별히 신경 써서 농촌을 잘살게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모든 당원들은 농업이 세상을 편안히 하고 민심을 안정시키는 전략 산업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농업의 현대화가 없다면 국가의 현대화도 없을 것이며, 농촌의 번영과 안정이 없다면 국가의 번영과 안정도 없을 것이다. 또한 농민이 '샤오캉사회'를 누릴 수 없다면 중국 국민 전체의 '샤오캉'도 없을 것이다. 우리 나라는 이미 전체적으로 산업 발전이 농업 발전을 이끌고 도시 발전이 농촌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단계에 진입해 있다. 즉 전통적인 농업발전 방식을 조속히 개선하고 중국특색의 농업현대화 노선을 견지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들어서 있다. 또 도농 이원화 구조를 타파하고 도농 경제사회 통합발전이라는 새로운 구도를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다. 우리는 반드시 중국의 사회주의 형성 초기 단계의 상황과 발전 단계의 특징을 잘 감안하고, 농촌개혁 발전의 새로운 형세에 적응하여, 수많은 농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회를 잘 포착하고 이용하여 중국특색의 농업현대화의 길을 개척하고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2. 농촌개혁 추진을 위한 지도사상, 목표, 임무, 중요 원칙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중국이 농촌개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정신을 관철시키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 또 덩샤오핑의 이론과 3개 대표론을 주요 지도사상으로 하여 심도있게 과학발전관을 실천해야 한다. 또한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이라는 전략적 목표, 중국특색의 농업현대화 노선 지향이라는 기본 방향, 도농 경제사회 통합발전이라는 신(新)구도 형성에 필요한 궁극적인 목표를 통해 산업이 농업발전을 촉진·도시가 농촌 발전 지원·많이 지원하고 적게 거두어 들이는 세가지 방침을 견지한다. 그리고 농촌구조의 혁신, 농업 기초역량 강화, 농민소득 증대, 농민의 이익 보장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조화로운 농촌을 만들어야 하고, 많은 농민들이 적극성·주동성·창조성을 발휘하도록 해 신속하게 농촌 경제사회 발전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리 당은 제17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전면적으로 '샤오캉사회'를 건설하고, 발전된 생산환경·풍족한 생활·문화소양과 청결함을 갖춘 민주적 사회주의 신농촌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2020년까지 농촌개혁 발전을 위한 기본 목표와 임무는 다음과 같다. 먼저 농촌경제체제를 더욱 완비시키고, 도농 경제사회 통합발전

구조를 기본적으로 확립하는 것이다. 둘째, 농업현대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종합생산능력을 현저하게 제고하는 한편, 국가의 식량안보와 주요 농산물의 공급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농민들의 평균 소득을 2008년 대비 2배 늘리고, 소비수준을 크게 향상시켜야 하며, 절대빈곤 현상을 없애야 한다. 넷째, 농촌 하층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고, 농촌주민의 자치제도를 더욱 완비하여, 농민의 민주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도농의 기본적 공공서비스 수준을 균등화 하여 농촌 문화를 한층 발전시키고, 농민이 기본적인 문화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농촌에 사는 이들 모두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농촌의 기초생활보장, 기본적 의료보장제도를 재정비하여 농촌 사회보장체계를 완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원절약형, 친환경적인 농업생산체계를 구축하여 농촌 주민의 거주 및 생태환경을 뚜렷하게 개선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

①반드시 농업의 기본적 지위를 강화하고 튼튼히 한다. 십억이 넘는 인구의 먹는 문제를 항상 나라를 잘 다스리고 안정시키는 제일의 일로 여긴다. 또 식량은 기본적으로 자급자족한다는 방침에 입각하여 국가차원에서 농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확대하고, 과학기술로 농업을 진흥시키는 전략을 실시하여 농업현대화를 가속화하고 농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킨다. 이를 통해 경제발전 추진·조화로운 사회 건설·국가안보 수호에 튼튼한 초석을 마련한다.

②반드시 농민의 권익을 확실히 보장한다. 수많은 농민의 근본 이익을 잘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을 늘 농촌 업무의 출발점으로 인식해야 한다. 농민의 뜻을 존중하며 농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가장 직접적이면서 현실적인 이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농민의 정치·경제·문화·사회 권익을 보장하고, 농민의 종합적 자질을 높여 농민 전체의 발전을 촉진한다. 또한 농민의 주체적 역할과 창조적 정신을 잘 발휘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하여 많은 농민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주의 신(新)농촌을 건설하도록 한다.

③반드시 농촌의 사회생산력을 부단히 발전시켜 개혁과 혁신이 항상 농촌 발전의 근본적인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끊임없이 농촌의 개혁과 제도혁신을 추진하고 개혁을 단행할 때는 과학적으로 해야 하며, 개혁 추진 시 조정 능력을 강화시킨다. 또한 자원을 분배할 때 시장의 기본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고, 농업과 농촌 발전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지도력을 개선하고 강화한다. 또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부합되는 농촌경제체계를 재정비하고 농촌의 사회생산력을 발전시키는데 적합하지 않는 생산관계와 상부구조를 조정하여 농촌의 경제사회 발전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④반드시 통합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경제사회를 발전시킨다. 새로운 형태의 공업-농업,

도시-농촌 관계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을 현대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목표로 인식해야 한다. 산업화·도시화·농업현대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공업이 농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도시가 농촌의 발전을 이끄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한다. 또 국민소득의 분배구조를 조정하고 농업지원정책(强農惠農政策)을 공고히 한다. 국가의 기초인프라 건설과 사회사업의 중심을 농촌에 두고 도시와 농촌의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균등화시켜 도시와 농촌, 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수 많은 농민이 평등하게 현대화 과정에 참여하여 개혁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⑤반드시 공산당이 주축이 되어 농촌을 관리한다. 사실에 입각하여 농촌에 대한 공산당의 기본 정책을 견지하고 농촌의 기층조직과 정권을 구성하는 데 힘쓰며 농촌 관리체제와 방식을 완비한다. 또 당원과 농민들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당이 농촌 집권의 기초를 튼튼히 하여, 농촌개혁 발전을 추진하는데 모든 힘을 합칠 수 있도록 한다.

2.3. 농업제도의 확립

농촌의 발전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고 중국특색의 농업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와 농촌을 통합적으로 발전시킨다. 농촌체제 개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 농촌 경제를 한층 더 활성화 시키고, 농촌 발전의 외부 환경을 개선하여 농촌 발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1) 농촌의 기본 경영제도를 안정시키고 개선한다. 토지도급경영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쌍층경영제도는 사회주의의 시장경제체제와 농업생산에 부합하는 농촌의 기본적 경영제도이다. 이는 당 농촌정책의 기초이자 한결같이 견지해 나가야 하는 내용이다. 농민에게 더욱 충분하고 보장성이 강한 토지도급경영권을 부여하겠지만 현재의 토지도급 관계는 계속 안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변화가 있어서는 안된다. 농업경영구조를 개혁하고 농업의 경영방식 변화에 박차를 가한다. 소규모 농가경영방식은 선진적 기술과 생산수단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 기술과 자본 등 생산요소에 대한 투자를 늘려 농업집약화 수준을 높인다. 통일 경영방식을 통해 농가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 다원화·다층화·다양한 형식의 경영서비스체제를 갖춘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래서 집단경제를 발전시키고 집단조직의 서비스기능을 강화시켜 새로운 형태의 농민협동조직을 육성한다. 또 농업의 사회서비스조직을 발전시키고 기업과 농민이 긴밀한 이익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장려해 농촌의 조직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농민전업합작사(農民專業合作社, 이하 농업협동조합)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업협동조합은 농민을 섬기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민주적으로 관리한다는 기본적인 요구에 따라 발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농민이 시장경쟁력을 갖춘 국내외 농업경영조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집단 산림권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국유 산림장과 중요한 국유 산림지역의 산림재산권 제도 개혁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국유농장체제를 개혁하고, 초원지대의 토지도급경영제도를 개선하고 안정화한다.

(2) 농촌 토지관리제도를 재정비한다. 토지제도는 농촌의 기본적 제도이다. 재산권인정, 용도변경억제, 절약 및 집약, 엄격한 관리의 원칙에 따라 농촌의 토지 관리제도를 한층 더 완벽한다. 가장 엄격한 경작지 보호제도를 시행하고, 각계 각층이 모두 책임을 다하여 12,060만 ha의 경작지 레드라인을 엄수한다. 농경지를 영구 확정하고, 토지보호 및 보상제도를 만든다 기본적으로 농경지의 총량은 변함없이 유지하고 그 용도 역시 바뀌지 않도록 하고 농경지의 질을 제고한다. 또한 토지의 개량·개간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작지에 대해서는 '선보상 후점유' 방식을 취하고 행정구역 넘어서는 보상과 점유 행위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그리고 농촌 토지의 재산권·등기·증서발급 업무를 제대로 수행한다. 토지도급경영권의 내용을 다시 규정하고, 농민의 토지 도급시 점유·사용·수익 등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한다. 토지도급경영권 유동에 있어서 관리와 서비스 내용을 강화하고 완벽한 토지도급경영권 유동시장을 구축한다. 자원·유상의 원칙에 의거해 농민이 도급전환·임대·상호교환·양도·주식 등의 형태로 토지도급경영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 규모를 갖춘 여러 형식의 경영방식을 발전시킨다.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는 전업기업농·가족농장·농업협동조합 등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경영 주체를 육성할 수 있다. 토지도급경영권의 유동에 있어서 토지의 집단소유라는 특징과 토지의 용도는 바뀌어서는 안되며 농민의 권리와 이익에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가장 엄격한 절약형 토지사용제도를 실시하여, 도시와 농촌의 건설용지의 전체 규모를 엄격히 통제한다. 농촌의 택지제도를 완벽하여 엄격히 택지를 관리하고 농가의 택지관련 재산권을 법으로 보장한다. 농촌 주택지 및 토지정리소가 절약한 토지는 우선적으로 농경지로 개간하고, 건설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반드시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하도록 하고 당해 년도 건설용지 계획에 포함시켜 집단 건설용지로 이용되도록 한다. 토지수용제도를 개혁해 건설용지의 공익성과 사익성 여부를 엄격히 구분해 토지수용 범위를 점차 축소하고 토지수용의 보상체계를 완벽한다. 법에 의거해 농촌의 집단토지를 수용하고 동일지역은 동일시가라는 원칙에 입각해 농촌 집단조직과 농민에게 충분한 액수로 합리적 보상을 실시한다. 또한 토지를 수용당한 농민들의 취업·주거·사회보장 문제를 해결한다. 토지이용계

획으로 확정된 소도시 건설용지 이외에도 농촌 집단토지를 수용하여 비공익성 건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민들이 법에 의거해 여러 가지 형식으로 개발과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민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한다. 도시와 농촌의 단일화된 건설용지 거래시장을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합법적으로 취득한 농촌 집단경영 건설용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일되고 형식을 갖춘 토지거래시장을 통해 공개적이고 합법적 형태로 토지사용권을 거래하도록 하여 토지계획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국유토지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한다. 관련 법률과 법규 및 그에 상응하는 정책으로 규범화된 농촌 토지관리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3) 농업에 대한 지원 및 보호제도를 재정비한다. 농업관련 보장제도를 재정비하고, 재정지출·고정자산투자·신용대출구조를 조정한다. 각 지방정부는 농업에 대한 재정지출 증가 폭을 수입 증가 폭보다 높이고 중앙정부 역시 농촌의 기초 인프라건설과 사회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린다. 또 중앙정부가 토지 양도 및 경작지 점유세 등 새로 거두어 들이는 수입을 우선적으로 농업부문에 사용하고 비율을 높여야 한다. 중앙정부가 중서부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성이 짙은 프로젝트에 대한 현과 현 이하 정부의 자금 출자 규모를 점차 줄여 나간다. 농업에 대한 투자 경로를 다양화하고 투자 항목을 조정해 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자금 사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농업부문의 보조금제도를 완비한다. 범위를 확대하고, 기준을 높이고 방법을 재정비한다. 특히 식량 증산과 소득 증대를 위해 더 많이 지원하고 해마다 식량 생산 보조금을 대폭 확대한다. 농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된 농자재종합직불금 제도를 재정비한다. 농산물 가격보호제도를 튼튼히 하고, 농산물 시장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강화한다. 식량최저수매가격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주요 농산물의 가격보호 방식을 개선한다. 주요 농산물의 비축에 힘쓰고 농산물의 수출입조절 메커니즘을 고도화 하며, 농산물 가격의 합리적 수준을 유지한다. 식량 등 주요 농산물 가격형성 구조를 완비하고 가격차를 바로 잡아, 시장가격이 생산량 증가와 수입증대에 충분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농업생태환경 보상제도를 완비하여 경작지·수역·산림·초원·습지 등 자연자원과 농업관련 자원 보호에 유리한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4) 현대적인 농촌금융제도를 구축한다. 금융은 현대 농촌경제의 핵심이다. 농촌 금융제도를 개혁하여 농촌이 금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상업적 금융·협력적 금융·정책적 금융을 모두 아우르는 농촌 금융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는 반드시 자금이 충분하고 기능이 완벽하며 서비스도 잘 되어 있고 안전하게 운영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농촌 금융정책을 강화하고 융자 경로를 확대하는 한편 재정과 세수(稅收) 및 통화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세수감면 및 보조금 정책을 실시하고, 더 많은 신용대출

자금과 사회자금이 농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각 금융기관은 적극적으로 농촌개혁 발전을 지원하도록 한다. 농업은행이 농업서비스의 근간이라는 기본 방침을 견지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농촌의 서비스 네트워크를 안정·발전시킨다. 농업발전은행의 농업지원 영역을 확대하고 정책적 금융이 농업개발과 농촌의 기초인프라 건설에 투자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신용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우체국저축은행의 농업 관련 업무를 확대한다. 현(縣)내 은행업이나 금융기관의 저축 자금은 주로 해당 지역의 대출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다. 농촌신용사의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현(縣) 단위의 법인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며 이들이 농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데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농촌 금융기관과 농촌 서비스 업무가 중심인 지역 내 중소은행을 발전시킨다.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소액 대출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농촌 특성과 필요에 부합하는 소규모 금융서비스의 발전을 적극 장려한다. 농촌의 소규모 금융기관이 기존의 대형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끌어올 수 있도록 허락한다. 자격을 갖춘 농업협동조합의 신용업무를 허락한다. 민간 대부업체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농촌 신용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의 지원과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며 시장기제에 의해 움직이는 농촌 신용대출담보체계를 수립한다. 농촌의 담보물 범위를 효율적으로 확대한다. 농촌의 보험사업을 발전시키고 정책적인 농업보험제도를 완비하며 농업재보험 및 리스크 분산기제를 건립한다. 또한 농산물 선물시장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5) 도시와 농촌의 경제사회 통합발전 체계를 구축한다. 빠른 시일 내에 도농 발전계획·산업배치·기초인프라 건설·공공서비스 균등화 측면에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공공자원이 도농 간에 균등하게 배치되도록 하고 생산요소가 도농 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도농 경제사회가 통합 발전하도록 한다. 토지이용과 도농 발전계획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소도시 및 마을 건설·농경지 보호·산업집중·마을배치·생태보존 등을 합리적으로 실시한다. 도농의 산업을 통합적으로 발전시키고, 농촌의 산업구조를 고도화 시킨다. 농촌의 서비스업과 향진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도시의 자금, 기술, 인력, 관리방식 등이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도농의 기초인프라 건설과 공공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발전시킨다. 전반적으로 재정 규모를 늘려 농촌의 공공사업을 추진을 보장하고, 도농 간 단일화된 공공서비스제도를 점진적으로 구축한다. 도시와 농촌의 노동 및 취업을 통합 발전시킨다. 도시와 농촌의 단일화된 노동시장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농민들이 거주지 이외 지역에서도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민공이 귀향하여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민공의 권익보호에 힘쓴다. 점진적으로 농민공의 임금과 자녀의 취학·공공보건·거주지 임대 및 매매에서 도시 주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농민공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생산과정에서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며 농민공의 산업재해·의료·노후연금의 혜택 범위를 확대하여 농민공이 노후연금제도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한다. 도시와 농촌 사회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호적제도 개혁을 단행하고 농민들이 중소도시에서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여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거주하는 농민들이 단계적으로 도시주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 유동인구에 대한 서비스 및 관리체제의 혁신을 단행한다. 현 지역의 자주권을 확대하고 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발전 수준을 제고한다. 성이 직접적으로 현의 재정을 관리하는 제도개혁을 추진한다. 우선적으로 농업이 발전한 현을 개혁대상으로 한다.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는 법률에 의거하여 성이 직접 현을 관리하는 제도 시행을 검토한다. 중국특색의 도시화 노선을 견지한다. 대도시 혹은 중소도시가 농촌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한다. 경제발전 속도가 빠르고 인구의 수용력 큰 농촌 도시에 그에 상응하는 법적 행정관리 권한을 부여한다. 대도시 혹은 중소도시와 농촌도시가 서로 조화로운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화와 신농촌 건설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한다. 이로써 도시와 농촌의 통합개혁을 적극 추진한다.

(6) 농촌의 민주관리제도를 재정비한다. 당이 지도하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확고히 하며 법치를 실현한다. 국민참여 확대·정보공개 추진·의사결정과정 재정비·권력의 감독기능 강화를 핵심내용으로 기층 정권을 수립하고 농촌 주민의 자치범위를 확대하여 농민이 현실적으로 더욱 많은 민주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도시와 농촌의 인구 비례에 따라 점진적으로 전국인민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현 단위의 농민 인민대표 비율을 확대한다. 농촌 종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본적으로 2012년까지 농촌 내 기층조직의 개혁을 완성하고 농촌의 정부·사회 관리 기능과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에 힘쓴다. 농민의 정치참여의식을 적극적으로 고취시킬 수 있는 농촌 통치구조를 구축하며 정책내용을 공개하고 법에 따라 농민의 알권리·참여권·표현권·감독권을 보장한다. 농촌 내 공산당의 지도하에 활기가 넘치는 농촌 자치조직을 재정비한다. 직접선거 및 공정선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민주선거제도를 실시한다. 또 촌민회의·촌민대표회의·농민의사회를 주요 형식으로 하는 민주적인 정책결정체계를 갖춘다. 또 농촌의 정책공개·재정감독·주민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주적 관리·감독제도를 실시해 농촌의 자치제도를 제도화·규범화·절차화시킨다. 농촌의 법률제도를 구축한다. 농업과 관련된 법률 및 법규를 완비하고 법에 따라 행정능력을 강화시키며 농업과 관련된 법 집행 감독 및 사법적 보호 수준을 강화시킨다. 농촌관련 법과 제도의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실시하여 농민의 법률의식을 높이고 법에 따라

농촌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을 서비스성·공익성·상호 보완성이 강한 사회조직으로 육성시켜 사회 자치기능을 강화한다. 다양한 조치를 통해 기층조직의 재정 동원능력을 강화하여 일부 행정촌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점차 해결하고 향촌 채무 문제를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농민부담 관리감독 업무를 잘 시행하고 농촌 공익사업 관련 메커니즘을 완비한다.

2.4. 농업현대화, 농업 생산능력 제고

농업현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높은 생산성·우수한 품질·고효율·환경·안전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농업의 발전방식을 빠르게 전환하는 한편 농업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혁신을 꾀해야 한다. 또 농업의 기계장비율을 제고하고 농업의 산업체계를 완벽히 갖추는 한편 토지생산성·자원 이용률·노동생산성을 제고하고 농업의 리스크 대응능력·국제경쟁력·지속가능한 발전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1) 국가의 식량안보를 확보한다. 식량안보는 어떤 시기를 막론하고 소홀히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장기적으로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문제다. 식량의 공급과 수요를 잘 조절하고 충분한 비축능력과 통제능력, 효율적 운영 방식을 갖춘 식량안보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식량 생산을 발전시키는 것을 농업현대화의 우선 과제로서 파종면적을 확대하고 품종구조를 개선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단수를 제고하여 종합적인 생산능력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야 한다. 각 지역에서는 식량산업의 발전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여야 하며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비축 임무를 다하여 국가 식량안보의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전략적으로 식량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국가차원에서 식량의 핵심 생산지역과 예비 생산지역을 건설하고, 5천만 톤 식량증산 능력제고 계획을 실시한다. 올해부터 현을 중심으로 계획을 적극 실천한다. 식량 생산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은 주로 주산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주산지의 이익보상제도를 수립한다. 식량생산량이 많은 현에 대한 재정 지원과 식량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식량증산·농민소득 증대·재정지출 확대를 병행시켜 농민들의 식량재배의 적극성을 고취시킨다. 식량위험기금 정책을 개선하여 점차 주산지의 자금 동원을 취소해 나간다.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는 지역과 주소비지에서 식량을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현을 육성하고, 지역 내 경지면적이 줄어들지 않고 식량자급률이 하락하지 않도록 한다. 시장개방을 견지하고 유통을 적극 활성화하며 생산과 판매의 연계를 강화한다. 사회 전체의 식량절약 의식을 제고하고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식량절약 조치를 실시한다. 식량 영역에서 국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세계 식량공급에 기여한다.

(2) 농업구조를 조정한다.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여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품질과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현대적인 농산업체계를 구축한다. 산업배치 계획을 잘 추진하고 지역 농업발전의 중점사항을 과학적으로 확정하는 한편 우수하고 특색 있는 산업지대를 형성하여 고공·유통·저장·수송 시설 건설이 비교우위지역에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유지작물 생산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여 식용 식물유의 자급 수준을 높인다. 비교우위 생산지역에 면화, 당류작물, 감자 등 주요 작물의 재배를 집중시키는 한편 채소, 과일, 차, 화훼 등 원예작물의 집약화 생산, 시설재배를 추진한다. 또한 각 지역 상황에 맞고 특색이 있는 산업과 농촌 관광업을 발전시킨다. 목축업을 발전시키고 규모화를 촉진하는 한편 품종개량과 전염병 예방과 통제를 강화한다. 수산물 양식을 발전시키고 원양어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임업을 발전시키고 산림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한다. 농업의 산업화경영을 발전시키고 농산물 가공업의 구조를 업그레이드시킨다. 또한 대규모 기간기업의 적극 지원하여 지명도 있는 브랜드를 육성한다. 주요 농산물의 생산량이 많은 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농산물 가공업의 발전을 위한 세금우대정책을 실시한다. 농업의 표준화 및 농산물 품질안전 업무를 강화하고 산지 환경, 투입재 사용, 생산과정, 품질의 전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또한 농산물 생산·구매·저장 및 수송·가공·판매 등 각 단계의 품질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불합격 농산물의 시장진입을 근절한다. 녹색식품과 유기식품 생산을 적극 장려하고 농산물의 상표 등록과 지리적 원산지 표시제도를 강화한다. 또한 대만(臺灣)과의 농업협력을 강화한다.

(3) 농업기술의 혁신을 가속화한다. 농업발전의 근간은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시작된다. 세계 과학기술 발전의 흐름에 순응하고 농업현대화 건설을 위해 농업기술의 혁신을 추진하고 농업기술 집약화·노동과정의 기계화·생산경영의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촉진한다. 농업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농업기술 혁신 기금을 조성하여 기초적 연구, 프론티어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중요 영역과 핵심기술에서 중요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농업기술 R&D를 강화하고 바이오 기술·우수 품종 배양·중산 재배기술·농업용수 절약·전염병 예방과 통제·재해 방지 및 감소 등 영역의 기술혁신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GMO신품종 육종 연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응용 가치가 있는 우량 품종을 조속히 개발한다. 농업의 규모화, 시설화 등의 조건에 부응하여 다기능적·지능적·경제적 농업설비를 조속히 개발하고, 농작업, 시설재배, 사양 및 양식, 고차가공, 저장 및 수송 등 각 과정의 기술혁신에서 새로운 성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농업 정보서비스 기술 발전을 추진하여, 정보 수집·

농작업·정보관리·농촌 원격디지털화 및 화상화·기상예측 및 예보와 재해정보 등의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한다. 과학기술체계 개혁을 본격 추진하여 농업기술 혁신체계와 현대 농산 업기술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며, 공익성을 띤 농업분야 과학연구기관과 농업전문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농업분야 중요 연구 프로젝트·중요 학문·연구기지를 중심으로 기술 혁신팀 신설을 강화하고, 농업기술 인재 특히 지도력을 갖춘 인재를 적극 육성한다. 농업분야 기술인재 육성을 통해 농업기술 보급, 대 농민 농업기술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농업분야 의 기술발전 성과를 다른 영역에도 확대한다. 즉 산학연, 농업과학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대학교·과학연구기관과 농업협동조합·대규모 기간기업·농가 간 다양한 형식의 기술협력을 추진한다. 국가 하이테크농산업 시범지역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국유농장이 선진적 기술 운영과 농업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시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4) 농업의 기초인프라 건설을 강화한다. 농경지 수리시설을 핵심으로 하는 농업 기초 인프라는 농업현대화를 실현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대규모 토지정리를 실시하여 구획을 잘 정리하고 통합적으로 토지를 배치하며 소구획 전답을 통합한다. 또 비옥도가 낮은 농경지를 개조하고 농민 스스로가 토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토질을 측정해 그에 맞게 과학 적으로 배합해 비료를 주는 방법을 보급하고, 보호성 경작방법을 확대 보급하여 농경지의 질을 개선하고 높고 안정된 생산량을 보장하는 농경지의 비율을 확대해 나간다. 기초 수리시 설 건설을 전개하여 큰 강과 하천 및 호수의 치수 사업을 강화하고 중대형 핵심 수리프로젝 트를 집중 추진하며 중대규모 관개지역의 배수 관개 펌프시설의 개조, 수원 건설을 강화하여 2020년까지 대형 관개지역의 보수 및 정비와 절수 개조공사를 기본적으로 완성한다. 오염되 고 시설이 낙후된 저수지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2010년 말까지 중대형 및 핵심 저수지를 보수 임무를 완성한다. 투자시스템을 혁신하여 장려와 보조 등의 형식으로 농민들의 소형 수리시설 건설, 소규모 하천 유역의 종합치수 등의 건설 항목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절수 관개시설을 보급하고 한지농업(旱地農業) 시범사업을 전개한다. 농공업의 발전을 통해 농어 기계화를 적극 추진한다. 우량품종 번식 체계와 농산물 도매시장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현대적 식량 물류체계와 신선농산물의 냉동 물류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5) 새로운 형태의 농업사회화 서비스체계를 구축한다. 공공서비스 기관을 중심으로 협동 경제조직을 기초로 하여 대규모 기간기업이 주축이 되고 그 밖의 사회적 역량을 보충하는 형태로 공익성·경영성 서비스가 결합되고 전문적 서비스와 종합적 서비스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형태의 농업사회화 서비스체계를 구축한다. 농업의 공공서비스 능력을 강화하 고 관리체제를 개선하며 관계자들의 소양을 제고하여 3년 내에 전국적으로 향(진) 단위의

농업기술보급·동식물 전염병 예방 및 통제·농산물 품질 관리감독 등의 공공서비스 기관을 건설하고 점차 촌 단위의 서비스기관을 건설한다. 농업협동조합·전문서비스회사·전문기술 협회·대규모 기간기업 등이 다양한 형식의 생산 및 경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한다. 농촌 시장을 개척하고 유통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농산물 시장체계를 완비하고 농업 정보수집 및 분산체계를 개선한다. 농산물의 현대적 유통 방식을 발전시키고 운송과 판매 단계의 유통마진을 줄인다. 장기적으로 녹색통도(綠色通道)정책을 실행하고 유통비용이 낮고 운영효율이 높은 농산물 판매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농자재 공급을 보장하고, 농촌 시장질서를 정비하고 규범화하며 위해 행위를 엄격히 처벌한다.

(6)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한다. 절약형, 순환형, 환경친화형 농업을 발전시키고 생태 환경보호를 강화한다. 임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천연림 보호사업 실행 기한을 연장한다. 퇴경환림 정책을 정비하고 성과를 공고히 하는 한편 조림사업을 전개하여 산림비율을 높인다. 초지조성 및 보호 사업을 전개하여 목축지를 초지로 환원하고 초지의 관개화를 추진하여 초지의 생태환경을 복원한다. 수자원보호를 강화하여 수중 생물자원의 보호에 힘쓴다. 중점 지역의 수토유실 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사막화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자연보호 구역 건설을 강화한다. 희귀 종과 희귀자원을 보호하고 국외 동식물의 전염병 유입과 유해 동식물의 반입을 제한한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산림, 초지, 수토 보호 등 생태수익 보상기금을 조성하고 보상 기준을 점차 강화한다. 식량작물을 원료로 하지 않는 바이오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농업 및 임업 부산물과 폐기물을 에너지화·자원화하여 이용한다. 에너지절약 및 이산화탄소배출 감소 기술을 보급하고 농촌지역의 산업오염·생활오염·농업오염 방지에 힘쓴다.

(7)농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한다. 노동집약형·기술집약형 상품을 수출하고, 구조적으로 부족한 상품을 적당히 수입한다는 원칙에 따라 농산물 수출입의 전략적인 계획과 통제 구조를 재정비하고, 국제시장에 대한 연구와 정보서비스 능력을 강화한다. 농산물 수출입 검역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수출 우위 상품의 부가가치와 품질안전 수준을 제고한다.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여 농업현대화를 촉진한다. WTO 규칙에 부합하는 외국자본의 농업생산 및 농자재산업 투자제도를 건전화하고, 외국 자본이 국내 농기업을 사들일 때 필요한 안전한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대외 농업협력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농업관련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며, 농산물의 국제적인 생산·판매·가공·저장·수송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제 농산물 무역 규범과 글로벌 기준을 제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무역 질서를 구축한다.

2.5. 농촌 공공투자 확대, 농촌 사회의 발전 촉진

사회주의 신(新)농촌을 건설하고 도농 경제사회 통합발전 메카니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농촌에 대한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농촌의 공공사업을 발전시켜 많은 농민들이 교육과 노동·의료·양로·주거 등에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농촌 문화를 번영 및 발전시킨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체계를 구축하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이론체계로 농촌 당원들을 무장시키고 농민을 교육시켜 농민들의 애국주의·집단주의·사회주의 사상을 공고히 한다. 모든 농촌지역에서 TV와 라디오를 보고 들을 수 있게 하며 문화 정보자원을 공유하는 한편 향·진 단위 종합문화센터, 촌(村) 단위 문화센터를 건설하고, 영화 상영, 농촌도서관 신설 등 문화사업을 전개하여 안정된 농촌의 문화보장 메카니즘을 구축하고 완성된 농촌 공공문화 서비스체계를 형성한다. 농촌을 소재로 한 문화상품을 창조·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민이 즐겁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활동을 전개하여 문화·과학·보건을 두루 갖춘 ‘삼하향(三下乡, 중국정부에서 추진하는 문화·과학·보건 분야의 농촌지원활동 프로그램)’제도를 장기적이며 효과적으로 실시한다. 또 농민 스스로 공연 단체와 기타 문화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시의 문화관련 기관이 농촌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농민공들이 풍부한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교양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민이 과학을 숭상하고, 신용과 법을 잘 지키도록 한다. 또 미신을 멀리하고, 지역 풍속을 잘 지키며, 주민의 기본적 도덕규범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남녀가 평등하고 노인을 공경하고 아이를 사랑하는 사회,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고 열심히 일해서 부를 축적하며 가난한자를 돕고 곤란한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사회적 기풍을 형성해 나간다. 농촌의 유형 및 무형의 문화유산과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명소들을 보호한다. 또한 농촌 체육사업을 발전시켜 농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2) 농촌의 교육사업을 제대로 실시한다. 농촌 교육 발전, 교육 평등 촉진, 농민의 과학문화적 자질 함양을 통해 문화적이고 기술을 이해하며 경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농민을 배양한다. 농촌의무교육 보급 성과를 공고히 하고 의무교육의 질을 높이며, 무상 의무교육 정책과 비용지원체계를 완비하여 경제적으로 곤란한 가정의 아동과 부모와 떨어져 사는 아동, 특히 여자 아이들이 평등하게 취학하여 학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촌지역 아이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도시와 농촌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을 촉진한다. 농촌지역의 고등교육 보급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중등 직업교육을 발전시키고 이를 점진적으로 무상화한다. 현

단위의 직업교육 훈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 농민 기술 훈련을 강화하여 실용적인 농촌인재를 육성한다. 빈곤 지역과 소수 민족 거주지의 농촌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대학의 대 농촌 인력 지원 및 서비스 능력을 강화하여 농업관련 학과와 전공을 설치하고 학생들이 농촌 현장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한 졸업생에게는 학비와 학비대출금을 보상해주는 한편 대학원 입학 및 교사 임용과정에서 우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농촌지역의 교사에 대한 대우를 보장하고 업무 환경을 개선한다. 농촌지역 교사의 육성 및 훈련제도를 완비하여 교사의 소양을 높인다. 도시와 농촌의 교사가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시 학교 교사들이 농촌에 파견되어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지역의 취학 전 교육·특수교육·평생교육을 발전시킨다. 원격교육을 강화하여 우수한 교육자료를 농촌지역에 공급한다.

(3)농촌의 의료보건사업 발전을 촉진한다. 신형 농촌의료제도를 발전시키고 공고히 하며, 자금 조달 기준과 재정 보조 수준을 제고하여 중병은 입원치료를 위주로 보장하고 외래치료에 대한 보장도 실시한다. 농촌의 의료구제제도를 완비한다. 정부 주도로 도시와 농촌의 의료보건자원을 정비하고 현 단위 병원-향·진 단위 보건원-촌 단위 보건소의 세 단계의 농촌 의료보건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농민들에게 안전하면서도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촌의 보건 인재들을 적극 육성하고 이들을 무상으로 훈련시킨다. 농촌지역 의사들의 보조금 지급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도시지역 의사들이 농촌을 지원하는 제도를 완비한다. 농촌의 무료 공공보건 서비스와 무료 방역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풍토병과 전염병에 대한 예방을 강화한다. 농촌지역의약품 배송·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중의학과 민족의학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 애국보건 캠페인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건강교육을 중시한다. 농촌지역 여성과 아이들의 보건을 강화하고 입원 분만 보조정책을 점진적으로 실시한다. 정부의 가족계획 정책을 견지하여 농촌의 저출산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장려금 및 보조금 제도를 실시하여 출생인구의 성비(性比) 불균형 현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4) 농촌의 사회보장제도를 완비한다. 수혜자 확대·기초생활보장·다양한 계층·지속가능이라는 원칙에 의거하여 농촌의 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하는데 박차를 가한다. 개인부담·집단보조·정부지원의 상호 결합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농촌사회 양로보험제도를 실시한다. 도시와 농촌지역 양로보험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토지를 수용당한 농민들의 사회보장을 확고히 하여 선 보장 후 토지를 수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 농촌의 최저생활보장제도를 완비한다. 중앙정부와 성(省)정부의 재정 보조를 강화하여 보장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장 기준과 규모를 지속

적으로 높여 나간다. 농촌의 ‘오보공양(五保供养—중국 노인복지정책)’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부양 수준이 현지 농민의 평균 생활수준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농촌지역의 재해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를 완비한다. 보훈가족과 신체장애 등으로 퇴역한 군인 등을 위한 보훈 정책을 잘 실시한다. 노인·장애인·고아·생계 곤란자·재해피해자 지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사업과 자선사업을 발전시킨다. 농촌의 고령화 서비스를 발전시킨다. 농촌의 장애 예방 및 장애인 재활 치료를 강화하여, 농촌지역 장애인사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5) 농촌의 기초시설 건설 및 환경 조성을 강화한다. 농촌을 농민들의 터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농민의 생산 및 생활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향, 진, 촌 건설계획을 과학적으로 제정한다. 농촌의 식수안전사업을 실시하여 5년 안에 식수 안전문제를 해결한다. 농촌지역 도로 건설을 강화하여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 말에 향, 진의 콘크리트 도로를 건설을 기본적으로 완료하고 행정촌의 콘크리트 도로 건설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교통자원을 서로 원활히 연결하고, 편리하고 빠른 여객 운송 네트워크를 점차 구축해 나간다. 농촌의 에너지 건설을 촉진하여 전기공급망을 확대하는 한편 메탄가스, 바이오매스 이용, 수력발전, 풍력발전, 태양 에너지 등을 이용하는 재생에너지 기술을 보급하여 청결하고 경제적인 농촌 에너지체계를 구축한다. 농촌 청결사업을 추진하여 수도·주방·화장실·축사 환경을 개선하고 쓰레기 집중처리를 실시하여 농촌의 위생조건과 거주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한다. 방송네트워크, 전신네트워크, 인터넷의 3대 네트워크를 융합·보급하여 대 농민 정보화 서비스 작용을 적극 발휘하도록 한다. 농촌의 우체국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공공시설 보호체계를 완비하여 종합적인 이용 효율을 제고한다.

(6) 농촌의 빈곤구제 및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국가의 빈곤퇴치 전략 및 정책체계를 완비하고 개발형 빈곤구제 방침을 견지하여 농촌 최저생활보장제도와 빈곤구제 개발정책을 효과적으로 접목시킨다. 새로운 빈곤구제 기준을 정해 농촌의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빈곤구제 정책을 실시한다. 농촌 빈곤인구의 자아개발 능력을 제고하고, 노동능력이 없거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빈곤 인구에게 원조사업을 실시한다. 혁명 유적지·소수민족 지역·변경지역·빈곤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당과 정부의 지정형 빈곤구제 및 동·서부지역의 빈곤구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학교·과학연구기관·군대·사회 각계각층이 빈곤구제 개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빈곤퇴치 영역의 국제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7) 농촌의 재해방지 능력을 강화한다. 기상재해·지질재해·지진의 모니터링 및 경보 능력을 강화하고, 예보 수준을 제고한다. 각종 재해예방 대책을 완비하고, 전문 역량을 강화시키며, 응급구조 능력을 제고한다. 또한 재해방지 관련 지식을 적극 홍보·보급하고, 재해 대책 능력 및 농민 스스로의 재해예방 능력과 자기 구제능력을 제고한다. 홍수·배수·가뭄의 모니

터링 및 정보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농촌지역의 위험 가옥을 보수한다. 농촌의 도로·전기·수도·통신설비 등의 재해 대응 능력을 제고한다. 또한 농촌지역의 학교·병원 등 공공시설을 튼튼하게 건축하고 안전 기준과 책임을 준수한다. 사천성 원촨지진(汶川地震) 피해지역 농촌의 재건을 위해 사회 전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맞춤형 복구지원사업을 전개하여 농업생산과 농촌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킨다. 재해지역의 생태환경을 시급히 복구한다.

(8) 농촌의 사회관리 능력을 강화한다. 농민을 위한, 농민에 의한 방침을 견지하고 농촌 사회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농촌 지역사회 건설에 힘쓰고 농촌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한다. 당과 정부가 주도하는 농민 권익보호 메카니즘을 구축하고 농촌사회의 민심을 전달할 수 있는 경로를 더욱 확대하여 지역주민과 정부 간 소통을 원활히 한다. 이를 통해 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해 문제 발생 시 절차에 따라 갈등과 분쟁을 해결한다. 또한 농촌의 많은 간부들이 농촌 현장에 내려가 하방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여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을 기층단위에서 그리고 맹아단계에서 해결하도록 한다. 농촌의 응급관리체계를 완비하고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당의 종교에 대한 기본 방침을 관철하고 법률에 따라 종교 업무를 관리한다. 종교와 종교세력을 이용하여 농촌의 공공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억제하는 한편 사이비 종교 조직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사회악 세력을 근절한다.

2.6. 당의 지도력 개선 및 강화(생략)

V. 농 업 통 계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 1992~2008.11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출액	전년대비 성장률(%)	대 세계 수출 총액	점유율 (%)	대 중국 수출량	전년대비 성장률(%)	대 세계 수출 총량	점유율 (%)
1996	155.9	-2.8	3,412.9	4.6	147.3	-7.1	1,735.1	8.5
1997	200.7	28.7	3,346.9	6.0	239.2	62.3	1,893.4	12.6
1998	174.6	-13.0	2,999.0	5.8	259.2	8.4	2,026.0	12.8
1999	149.3	-14.5	3,198.2	4.7	197.0	-24.0	1,830.0	10.8
2000	201.7	35.1	3,012.4	6.7	271.2	37.7	1,860.2	14.6
2001	164.4	-18.5	2,851.5	5.8	221.1	-18.5	1,880.4	11.8
2002	178.2	8.4	2,801.3	6.4	206.5	-6.6	1,865.5	11.1
2003	237.1	33.0	2,990.6	7.9	245.7	19.0	1,874.8	13.1
2004	338.2	42.7	3,365.3	10.1	297.9	21.3	1,898.8	15.7
2005	339.8	0.5	3,415.8	9.9	267.0	-10.4	1,894.4	14.1
2006	335.6	-1.2	3,394.8	9.9	246.4	-7.7	1,802.0	13.7
2007	452.1	34.7	3,759.3	12.0	374.9	52.1	2,051.0	18.3
2008.1	50.1	24.6	336.9	14.9	23.0	11.0	168.7	13.6
2008.2	80.4	32.9	607.6	13.2	49.1	32.1	324.7	15.1
2008.3	121.0	36.3	967.2	12.5	86.4	40.4	498.9	17.3
2008.4	167.6	40.3	1,351.1	12.4	125.7	43.0	686.2	18.3
2008.5	211.9	38.0	1,710.9	12.4	160.0	38.2	861.8	18.6
2008.6	245.1	23.1	2,061.0	11.9	183.2	15.1	1,010.8	18.1
2008.7	282.5	16.3	2,408.0	11.7	207.8	4.2	1,192.1	17.4
2008.8	314.7	8.5	2,717.1	11.6	228.3	-6.7	1,340.6	17.0
2008.9	358.1	8.2	3,019.7	11.9	255.4	-8.5	1,508.6	16.9
2008.10	415.6	11.2	3,503.9	11.9	297.5	-4.4	1,716.5	17.3
2008.11	463.3	13.9	3,892.1	11.9	329.2	-2.9	1,915.1	17.2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 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05r1.jsp

2.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 1992~2008.11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입액	전년대비 성장률(%)	대 세계 수입 총액	점유율 (%)	대 중국 수입량	전년대비 성장률(%)	대 세계 수입 총량	점유율 (%)
1996	1,003.0	38.2	11,875.3	8.4	2,069.4	25.6	34,073.8	6.1
1997	1,528.6	52.4	11,255.1	13.6	5,520.8	166.8	33,270.2	16.6
1998	945.8	-38.1	6,971.6	13.6	3,839.6	-30.5	26,830.0	14.3
1999	1,154.1	22.0	8,563.8	13.5	3,348.7	-12.8	32,127.1	10.4
2000	1,867.9	61.9	9,818.5	19.0	8,722.6	160.5	33,543.8	26.0
2001	1,719.6	-7.9	10,079.2	17.1	5,504.9	-36.9	34,588.9	15.9
2002	2,321.3	35.0	11,471.5	20.2	9,316.9	69.2	37,017.2	25.2
2003	2,775.7	19.6	12,185.2	22.8	11,477.5	23.2	36,292.1	31.6
2004	2,421.6	-12.8	13,484.1	18.0	5,090.6	-55.6	35,540.7	14.3
2005	3,155.0	30.3	14,275.7	22.1	9,061.2	78.0	35,806.5	25.3
2006	3,236.1	2.6	16,100.9	20.1	6,220.3	-31.4	36,872.6	16.9
2007	4,173.4	29.0	19,242.3	21.7	8,723.5	40.2	38,025.3	22.9
2008.1	386.5	-14.9	1,870.2	20.7	499.8	-53.5	3,140.9	15.9
2008.2	688.7	-20.0	3,534.8	19.5	964.8	-54.8	6,434.7	15.0
2008.3	1,015.3	-18.9	5,379.2	18.9	1,406.7	-55.7	9,741.3	14.4
2008.4	1,345.4	-14.8	7,446.1	18.1	1,831.3	-52.5	13,335.8	13.7
2008.5	1,684.7	-11.8	9,385.4	17.9	2,260.4	-49.9	16,558.5	13.7
2008.6	1,994.6	-10.0	11,191.4	17.8	2,630.2	-48.5	19,700.0	13.4
2008.7	2,309.1	-8.1	13,148.4	17.6	3,007.5	-47.4	22,941.6	13.1
2008.8	2,596.9	-8.5	14,953.8	17.3	3,445.0	-46.1	25,830.3	12.9
2008.9	2,863.1	-7.5	16,772.9	17.1	3,841.0	-44.6	30,820.9	12.5
2008.10	3,101.8	-10.0	19,958.6	15.5	4,172.0	-45.4	36,739.3	11.4
2008.11	3,343.3	-12.1	18,487.0	18.1	4,511.5	-44.9	33,973.8	13.3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 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05r1.jsp)

3. 한국의 대 중국 농산물 수출, 1992~2008.11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출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출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량	점유율 ² (%)
1996	27.0	17.3	1,156.3	2.3	27.8	18.9	899.8	3.1
1997	46.6	23.2	1,187.9	3.9	68.4	28.6	978.8	7.0
1998	39.0	22.3	1,002.2	3.9	64.2	24.8	1,048.2	6.1
1999	37.9	25.4	1,003.4	3.8	69.0	35.0	982.7	7.0
2000	59.0	29.2	1,133.5	5.2	91.6	33.8	1,043.1	8.8
2001	68.4	41.6	1,251.9	5.5	114.2	51.6	1,178.1	9.7
2002	95.6	53.7	1,374.5	7.0	125.2	60.6	1,239.2	10.1
2003	116.8	49.3	1,563.2	7.5	144.5	58.8	1,242.9	11.6
2004	151.0	44.6	1,758.5	8.6	157.4	52.8	1,258.9	12.5
2005	184.5	54.3	1,898.9	9.7	169.0	63.3	1,293.5	13.1
2006	216.4	64.5	2,008.2	10.8	172.6	70.1	1,263.9	13.7
2007	257.4	56.9	2,222.5	11.6	208.8	55.7	1,336.5	15.6
2008.1	32.8	65.4	186.0	17.6	11.6	50.2	100.5	11.5
2008.2	48.5	60.4	334.7	14.5	25.9	52.7	193.3	13.4
2008.3	71.6	59.2	554.1	12.9	45.3	52.4	306.7	14.8
2008.4	93.7	55.9	776.4	12.1	58.8	46.8	422.4	13.9
2008.5	115.5	52.1	984.4	11.7	71.7	44.8	526.7	13.6
2008.6	135.8	55.4	1,203.5	11.3	83.3	45.5	623.3	13.4
2008.7	157.4	55.7	1,396.4	11.3	98.8	47.5	745.5	13.3
2008.8	176.1	56.0	1,582.1	11.1	112.9	49.5	848.6	13.3
2008.9	197.6	55.1	1,814.5	10.9	126.9	56.3	963.4	13.2
2008.10	222.9	53.6	2,038.1	10.9	145.8	49.0	1,091.0	13.4
2008.11	250.5	54.0	2,267.0	11.0	160.5	48.8	1,219.5	13.2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농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

4. 한국의 대 중국 농산물 수입, 1992~2008.11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입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입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량	점유율 ² (%)
1996	528.9	52.7	6,867.0	7.7	1,205.6	58.3	22,840.9	5.3
1997	933.5	61.1	6,284.7	14.9	4,457.5	80.7	21,613.5	20.6
1998	621.6	65.7	4,663.9	13.3	3,275.2	85.3	20,841.7	15.7
1999	551.6	47.8	4,681.3	11.8	2,382.3	71.1	22,206.9	10.7
2000	1,152.0	61.7	5,104.5	22.6	7,706.0	88.3	23,113.9	33.3
2001	846.1	49.2	5,325.3	15.9	4,388.8	79.7	23,247.0	18.9
2002	1,265.9	54.5	5,701.5	22.2	8,099.1	86.9	24,376.0	33.2
2003	1,725.5	62.2	6,212.7	27.8	10,354.4	90.2	24,301.0	42.6
2004	1,125.2	46.5	7,444.6	15.1	3,824.6	75.1	24,317.4	15.7
2005	1,757.0	55.7	7,397.4	23.8	7,815.5	86.3	24,765.5	31.6
2006	1,550.8	47.9	8,117.2	19.1	4,668.8	75.1	25,142.1	18.6
2007	2,375.2	56.9	10,089.0	23.5	7,320.3	83.9	25,973.9	28.2
2008.1	196.8	50.9	1,018.6	19.3	387.2	77.5	2,227.3	17.4
2008.2	382.0	55.5	2,038.7	18.7	775.9	80.4	4,571.9	17.0
2008.3	565.5	55.7	3,105.8	18.2	1,126.2	80.1	6,859.2	16.4
2008.4	735.2	54.6	4,389.8	16.7	1,437.5	78.5	9,490.9	15.1
2008.5	919.9	54.6	5,563.0	16.5	1,767.0	78.2	11,790.9	15.0
2008.6	1,079.9	54.1	6,649.1	16.2	2,035.7	77.4	14,042.6	14.5
2008.7	1,248.9	54.1	7,835.4	15.9	2,321.6	77.2	16,301.3	14.2
2008.8	1,385.9	53.5	8,879.2	15.6	2,556.2	76.9	18,301.3	14.0
2008.9	1,513.3	52.9	9,863.2	15.3	2,809.6	73.1	20,310.1	13.8
2008.10	1,640.0	52.9	10,862.1	15.1	3,048.0	73.1	22,365.3	13.6
2008.11	1,773.2	53.0	11,726.5	15.1	3,286.2	72.8	24,062.9	13.7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농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

5. 한국의 대 중국 축산물 수출, 1992~2008.11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출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출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량	점유율 ² (%)
1996	0.7	0.4	260.0	0.3	0.4	0.3	99.0	0.4
1997	1.9	1.0	319.9	0.6	1.0	0.4	125.1	0.8
1998	2.6	1.5	388.5	0.7	1.3	0.5	169.1	0.8
1999	3.1	2.1	407.8	0.8	1.2	0.6	167.4	0.7
2000	3.1	1.6	121.0	2.6	1.0	0.4	86.3	1.1
2001	3.8	2.3	117.8	3.2	1.0	0.5	110.1	0.9
2002	3.1	1.7	98.5	3.1	1.0	0.5	82.9	1.2
2003	3.3	1.4	119.5	2.8	1.4	0.6	92.6	1.5
2004	3.7	1.1	162.7	2.3	2.3	0.8	85.8	2.6
2005	6.2	1.8	172.7	3.6	6.1	2.3	95.9	6.3
2006	5.3	1.6	172.2	3.1	1.6	0.6	87.1	1.8
2007	6.8	1.5	181.0	3.7	2.0	0.5	93.0	2.2
2008.1	0.7	1.3	16.7	3.9	0.1	0.5	8.4	1.2
2008.2	1.2	1.4	31.5	3.7	0.2	0.4	16.0	1.3
2008.3	2.4	2.0	49.0	4.9	0.5	0.6	24.2	2.1
2008.4	3.9	2.3	65.7	6.0	0.8	0.6	32.3	2.5
2008.5	4.3	2.0	80.5	5.3	0.9	0.6	39.9	2.3
2008.6	5.4	2.2	96.2	5.6	1.2	0.7	46.7	2.6
2008.7	6.7	2.4	114.5	5.9	1.5	0.7	55.2	2.7
2008.8	7.8	2.5	132.9	5.9	1.9	0.8	62.5	3.0
2008.9	8.7	2.4	150.9	5.8	2.1	0.8	71.4	2.9
2008.10	10.8	2.6	172.5	6.3	2.6	0.9	80.7	3.2
2008.11	12.1	2.6	192.4	6.3	2.9	0.9	88.3	3.3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축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

6. 한국의 대 중국 축산물 수입, 1992~2008.11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입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입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량	점유율 ² (%)
1996	40.8	4.1	1,240.1	3.3	15.6	0.8	518.6	3.0
1997	47.8	3.1	1,324.4	3.6	22.5	0.4	520.9	4.3
1998	13.8	1.5	756.0	1.8	7.2	0.2	348.9	2.1
1999	15.1	1.3	1,245.3	1.2	7.2	0.2	653.9	1.1
2000	23.4	1.3	1,676.2	1.4	12.3	0.1	771.7	1.6
2001	32.3	1.9	1,466.3	2.2	19.2	0.3	705.7	2.7
2002	43.0	1.9	1,948.5	2.2	19.0	0.2	902.1	2.1
2003	38.5	1.4	2,115.6	1.8	21.5	0.2	883.6	2.4
2004	38.3	1.6	1,755.4	2.2	23.4	0.5	711.9	3.3
2005	71.2	2.3	2,360.5	3.0	39.9	0.4	888.0	4.5
2006	93.5	2.9	2,748.5	3.4	48.8	0.8	1,065.1	4.6
2007	100.5	2.4	3,235.3	3.1	48.6	0.6	1,092.3	4.4
2008.1	11.0	2.9	286.4	3.8	5.0	1.0	88.8	5.6
2008.2	18.0	2.6	495.9	3.6	7.8	0.8	155.3	5.0
2008.3	27.1	2.7	758.2	3.6	11.6	0.8	242.5	4.8
2008.4	37.3	2.8	1,016.6	3.7	15.7	0.9	325.9	4.8
2008.5	44.6	2.6	1,269.4	3.5	19.3	0.9	405.4	4.8
2008.6	50.1	2.5	1,507.1	3.3	21.8	0.8	480.2	4.5
2008.7	57.0	2.5	1,763.1	3.2	24.6	0.8	555.1	4.4
2008.8	63.4	2.4	2,005.7	3.2	27.4	0.8	629.5	4.4
2008.9	69.4	2.4	2,248.0	3.1	29.6	0.8	693.8	4.3
2008.10	74.1	2.4	2,503.9	3.0	31.4	0.8	765.9	4.1
2008.11	79.7	2.4	2,718.4	2.9	33.1	0.7	825.7	4.0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축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

7. 한국의 대 중국 임산물 수출, 1992~2008.11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출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출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량	점유율 ² (%)
1996	60.3	38.7	404.1	14.9	67.7	46	289.7	23.4
1997	37.3	18.6	344.9	10.8	37.3	15.6	279.2	13.4
1998	35.7	20.4	244.4	14.6	55.1	21.2	217.5	25.3
1999	49.3	33.0	268.7	18.3	73.6	37.3	204.2	36.0
2000	55.5	27.5	254.5	21.8	85.5	31.5	197.3	43.3
2001	36.5	22.2	210.0	17.4	52.1	23.6	157.0	33.2
2002	31.2	17.5	166.9	18.7	36.0	17.4	113.1	31.8
2003	46.0	19.4	177.1	26.0	43.9	17.9	114.1	38.4
2004	59.0	17.4	163.9	36.0	69.9	23.5	146.4	47.8
2005	40.5	11.9	150.0	27.0	26.3	9.9	92.1	28.6
2006	37.7	11.2	124.0	30.4	27.1	11	82.6	32.8
2007	30.4	6.7	128.3	23.7	21.1	5.6	84.5	25.0
2008.1	0.8	1.5	6.5	11.8	0.6	2.7	6.1	9.8
2008.2	1.7	2.1	11.7	14.3	1.7	3.5	10.6	16.0
2008.3	2.6	2.1	18.8	13.7	2.8	3.2	17.4	16.1
2008.4	4.2	2.5	29.3	14.2	4.3	3.4	24.1	17.8
2008.5	6.1	2.9	39.9	15.2	5.4	3.4	30.1	17.9
2008.6	8.1	3.3	47.9	16.9	6.2	3.4	35.0	17.7
2008.7	10.4	3.7	58.9	17.7	7.6	3.7	41.4	18.4
2008.8	11.7	3.7	65.5	17.9	8.5	3.7	45.9	18.5
2008.9	22.1	6.2	84.7	26.1	15.4	6.0	56.9	27.0
2008.10	28.7	6.9	101.9	28.2	20.4	6.9	66.0	30.9
2008.11	30.1	6.5	111.0	27.1	21.6	6.6	72.6	29.8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임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

8. 한국의 대 중국 임산물 수입, 1992~2008.11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입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입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량	점유율 ² (%)
1996	226.4	22.6	2,748.7	8.2	773.6	37.4	10,206.4	7.6
1997	275.2	18.0	2,595.3	10.6	923.5	16.7	10,607.1	8.7
1998	113.1	12.0	967.2	11.7	445.5	11.6	5,261.3	8.5
1999	180.9	15.7	1,478.2	12.2	666.4	19.9	8,524.7	7.8
2000	217.1	11.6	1,652.8	13.1	726.1	8.3	8,915.1	8.1
2001	219.9	12.8	1,656.7	13.3	629.7	11.4	9,581.0	6.6
2002	292.6	12.6	1,934.3	15.1	705.5	7.6	10,544.2	6.7
2003	297.7	10.7	1,892.9	15.7	636.4	5.5	9,861.9	6.5
2004	347.7	14.4	2,019.9	17.2	745.0	14.6	9,221.6	8.1
2005	388.3	12.3	2,130.7	18.2	696.0	7.7	8,882.4	7.8
2006	554.8	17.1	2,461.6	22.5	939.0	15.1	9,272.3	10.1
2007	625.0	15.0	2,858.2	21.9	810.8	9.3	9,553.7	8.5
2008.1	56.6	14.6	247.0	22.9	60.1	12.0	700.4	8.6
2008.2	93.7	13.6	477.8	19.6	106.1	11.0	1,509.8	7.0
2008.3	145.5	14.3	738.0	19.7	164.4	11.7	2,347.5	7.0
2008.4	204.1	15.2	988.9	20.6	238.2	13.0	3,116.3	7.6
2008.5	255.7	15.2	1,238.7	20.6	294.4	13.0	3,864.6	7.6
2008.6	308.9	15.5	1,481.5	20.9	349.4	13.3	4,590.0	7.6
2008.7	366.0	15.9	1,749.9	20.9	402.4	13.4	5,409.3	7.4
2008.8	448.6	16.1	1,994.2	22.5	417.4	13.5	6,121.7	6.8
2008.9	175.7	16.6	2,259.3	21.1	537.4	14.0	6,879.3	7.8
2008.10	518.0	16.7	2,487.9	20.8	580.2	13.9	7,636.5	7.6
2008.11	550.7	16.5	2,671.2	20.6	610.8	13.5	8,251.1	7.4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임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

9. 한국의 대 중국 수산물 수출, 1992~2008.11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출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출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량	점유율 ² (%)
1996	68.0	43.6	1,592.5	4.3	51.4	34.9	446.7	11.5
1997	114.9	57.3	1,494.2	7.7	132.5	55.4	510.3	26.0
1998	97.4	55.8	1,363.9	7.1	138.7	53.5	591.2	23.5
1999	59.1	39.6	1,518.4	3.9	53.2	27.0	475.7	11.2
2000	84.2	41.7	1,503.3	5.6	93.2	34.4	533.5	17.5
2001	55.8	33.9	1,271.8	4.4	53.7	24.3	435.2	12.3
2002	48.4	27.1	1,161.3	4.2	44.3	21.5	430.3	10.3
2003	71.0	30.0	1,130.8	6.3	55.9	22.8	425.2	13.1
2004	124.6	36.8	1,280.2	9.7	68.3	22.9	407.8	16.8
2005	108.6	32.0	1,194.3	9.1	65.7	24.6	412.9	15.9
2006	76.1	22.7	1,090.4	7.0	45.1	18.3	368.5	12.3
2007	157.5	34.8	1,227.5	12.8	143.0	38.1	537.0	26.6
2008.1	15.9	31.8	127.8	12.5	10.7	46.6	53.6	20.0
2008.2	29.0	36.1	229.8	12.6	21.3	43.4	104.7	20.3
2008.3	44.4	36.7	345.4	12.9	37.9	43.8	150.7	25.2
2008.4	65.9	39.3	479.7	13.7	61.8	49.2	207.5	29.8
2008.5	86.0	40.6	606.1	14.2	82.0	51.3	265.1	30.9
2008.6	95.8	39.1	713.3	13.4	92.5	50.5	305.8	30.2
2008.7	107.9	38.2	838.2	12.9	99.8	48.0	349.9	28.5
2008.8	119.0	37.8	936.6	12.7	105.0	46.0	383.6	27.4
2008.9	129.8	36.2	1,041.7	12.5	110.9	43.4	416.9	26.6
2008.10	153.2	36.9	1,191.4	12.9	128.8	43.3	478.8	26.9
2008.11	170.6	36.8	1,321.7	12.9	144.3	43.8	534.6	27.0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수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

10. 한국의 대 중국 수산물 수입, 1992~2008.11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입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입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량	점유율 ² (%)
1996	206.9	20.6	1,019.6	20.3	74.7	3.6	507.9	14.7
1997	272.1	17.8	1,050.7	25.9	117.3	2.1	528.8	22.2
1998	197.3	20.9	584.4	33.8	111.7	2.9	378.2	29.5
1999	406.6	35.2	1,159.1	35.1	292.8	8.7	741.6	39.5
2000	475.4	25.5	1,385.0	34.3	278.3	3.2	743.2	37.4
2001	621.4	36.1	1,630.9	38.1	467.3	8.5	1,055.2	44.3
2002	719.8	31.0	1,887.2	38.1	493.4	5.3	1,194.9	41.3
2003	714.1	25.7	1,964.2	36.4	465.2	4.1	1,245.5	37.3
2004	910.5	37.6	2,264.3	40.2	497.7	9.8	1,289.8	38.6
2005	938.5	29.7	2,387.2	39.3	509.8	5.6	1,270.5	40.1
2006	1,036.9	32.0	2,773.6	37.4	563.7	9.1	1,393.1	40.5
2007	1,072.7	25.7	3,059.8	35.1	543.9	6.2	1,405.4	38.7
2008.1	122.0	31.6	318.3	38.4	101.9	18.3	379.0	26.9
2008.2	195.0	28.3	522.4	37.3	145.0	14.0	757.4	19.1
2008.3	277.2	27.3	777.1	35.7	180.3	12.8	972.2	18.5
2008.4	368.8	27.4	1,050.8	35.1	218.7	11.9	1,323.8	16.5
2008.5	464.5	27.6	1,314.4	35.3	260.5	11.5	1,591.6	16.4
2008.6	555.7	27.9	1,553.7	35.8	314.6	12.0	1,929.0	16.3
2008.7	637.1	27.6	1,800.0	35.4	360.9	11.6	2,716.7	16.6
2008.8	722.8	27.9	2,074.8	34.8	412.8	12.0	2,613.4	15.7
2008.9	804.7	28.1	2,402.3	33.5	464.3	12.0	2,937.7	15.8
2008.10	869.7	28.0	2,663.2	33.0	512.4	12.3	3,206.0	16.0
2008.11	939.7	28.1	2,842.5	33.1	581.4	12.9	3,599.6	16.2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수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

11.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지수(월별), 2005~2007

년 월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채담자”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기준대비	전년 동기대비	전월대비	기준대비	전년 동기대비	전월대비
2005. 1	123.2	105.6	105.7	121.0	107.7	106.8
2	132.1	112.6	107.2	131.4	114.9	108.6
3	127.0	106.2	96.1	125.6	109.0	95.6
4	124.6	102.4	98.1	122.9	104.6	97.9
5	123.5	101.6	99.1	121.5	103.5	98.9
6	121.4	99.7	98.3	119.3	100.9	98.2
7	125.8	101.9	103.6	124.4	103.3	104.3
8	126.9	100.4	100.9	125.5	101.1	100.9
9	127.0	101.5	100.1	125.6	102.2	100.1
10	124.2	103.8	97.8	122.3	105.0	97.4
11	122.8	106.1	98.9	120.8	107.7	98.8
12	125.9	108.0	102.5	124.7	110.1	103.2
2006. 1	134.8	109.4	107.1	135.3	111.8	108.5
2	133.7	101.2	99.2	134.0	102.0	99.0
3	130.5	102.8	97.6	129.5	103.1	96.6
4	132.6	106.4	101.6	132.0	107.4	101.9
5	130.6	105.7	98.5	129.4	106.5	98.0
6	126.2	104.0	96.6	124.1	104.0	95.9
7	124.6	99.0	98.7	122.3	98.3	98.5
8	129.2	101.8	103.7	127.6	101.7	104.3
9	133.7	105.3	103.5	133.0	105.9	104.2
10	125.6	101.1	93.9	123.2	100.7	92.6
11	125.9	102.5	100.2	123.3	102.1	100.1
12	132.4	105.2	105.2	130.6	104.7	105.9
2007. 1	134.3	99.6	101.4	132.9	98.2	101.8
2	136.0	101.7	101.3	134.4	100.3	101.1
3	136.6	104.7	100.4	135.1	104.3	100.5
4	136.0	102.6	99.6	134.3	101.7	99.4
5	136.8	104.7	100.6	135.2	104.5	100.7
6	143.5	113.7	104.9	142.6	114.9	105.5
7	148.0	118.8	103.1	147.8	120.9	103.6
8	151.6	117.3	102.4	151.9	119.0	102.8
9	150.1	112.3	99.0	150.0	112.8	98.7
10	149.8	119.3	99.8	149.7	121.5	99.8
11	149.6	118.8	99.9	148.9	120.8	99.5
12	152.1	114.9	101.7	151.4	115.9	101.7

주: 기준대비지수는 2000년=100, 전년동기대비지수는 전년=100, 전월대비지수는 전월=100.

자료: 農業部. “全國農產品批發價格指數－月度指數”(http://www.agri.gov.cn/xxfb)

12.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지수(월별), 2008.1~12.

년 월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채람자”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기준대비	전년 동기대비	전월대비	기준대비	전년 동기대비	전월대비
2008. 1	161.0	119.9	105.9	161.7	121.7	106.8
2	174.2	128.1	108.2	176.8	131.5	109.3
3	168.8	123.6	96.9	168.4	124.6	95.2
4	168.9	124.2	100.1	168.5	125.5	100.1
5	163.3	119.4	96.7	161.6	119.5	95.9
6	160.9	112.1	98.5	158.4	111.1	98.0
7	162.8	110.0	101.2	160.3	108.5	101.2
8	162.0	107.0	99.6	160.3	105.5	100.0
9	160.7	107.1	99.1	159.3	106.2	99.4
10	153.6	102.5	95.6	151.2	101.0	94.9
11	147.5	98.6	96.0	144.8	97.2	95.8

주: 기준대비지수는 2000년=100, 전년동기대비지수는 전년=100, 전월대비지수는 전월=100.

자료: 農業部. “全國農產品批發價格指數－月度指數”(http://www.agri.gov.cn/xxfb)

13.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지수(일별), 2008.1~3

날짜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채람자”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날짜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채람자”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1. 3	155.0	154.7	2.19	172.5	174.9
1. 4	155.2	155.0	2.20	171.3	173.3
1. 5	154.7	154.4	2.21	171.8	174.1
1. 6	155.5	155.4	2.22	172.0	174.1
1. 7	155.0	154.6	2.25	170.8	172.6
1. 8	154.5	154.0	2.26	171.9	173.6
1. 9	155.6	155.3	2.27	170.6	172.1
1.10	154.4	153.8	2.28	170.4	171.7
1.11	155.8	155.5	2.29	171.4	173.0
1.14	157.6	157.7	3. 3	169.8	171.0
1.15	158.7	159.0	3. 4	169.2	170.2
1.16	158.2	158.4	3. 5	170.0	170.3
1.17	159.2	159.5	3. 6	169.3	169.2
1.18	159.1	159.5	3. 7	169.4	169.3
1.21	162.2	163.2	3.10	169.6	169.4
1.22	161.7	162.6	3.11	169.6	169.2
1.23	163.9	165.1	3.12	169.8	169.3
1.24	163.4	164.6	3.13	169.3	168.8
1.25	164.4	165.7	3.14	169.2	168.5
1.28	174.8	178.1	3.17	168.3	167.4
1.29	176.0	179.6	3.18	168.1	167.2
1.30	175.7	179.3	3.19	168.6	167.5
1.31	177.3	181.1	3.20	168.9	167.9
2. 1	181.5	185.9	3.21	168.2	167.3
2. 2	179.8	184.0	3.24	168.0	167.1
2.12	180.0	184.0	3.25	167.9	167.6
2.13	178.1	182.0	3.26	168.0	167.5
2.14	176.5	179.8	3.27	167.6	167.1
2.15	175.1	178.1	3.28	167.5	166.9
2.18	173.2	175.7	3.31	168.1	167.8

주: 기준연도 2000년=100

자료: 農業部. “全國農產品批發價格指數－日度指數”(http://www.agri.gov.cn/xxfb)

14.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지수(일별), 2008.4~6

날짜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채람자”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날짜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채람자”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4. 1	168.3	168.1	5.16	163.7	161.4
4. 2	171.0	171.2	5.19	163.7	161.4
4. 3	170.1	170.3	5.20	164.1	162.1
4. 4	169.9	170.1	5.21	163.3	161.1
4. 7	170.5	170.8	5.22	163.0	160.9
4. 8	170.2	170.5	5.23	163.5	161.5
4. 9	170.4	170.6	5.26	162.9	160.6
4.10	171.3	170.5	5.27	161.2	158.6
4.11	169.6	169.0	5.28	160.7	158.0
4.14	169.2	168.4	5.29	161.2	158.7
4.15	169.0	167.8	5.30	160.6	157.9
4.16	168.9	167.8	6. 2	159.8	157.0
4.17	168.7	168.3	6. 3	161.0	158.4
4.18	168.3	167.5	6. 4	160.5	157.6
4.21	168.6	167.9	6. 5	161.3	158.8
4.22	168.1	167.3	6. 6	161.6	159.3
4.23	167.9	167.2	6. 9	160.0	157.4
4.24	167.1	166.2	6.10	160.9	158.5
4.28	166.6	166.5	6.11	160.4	157.9
4.29	166.8	166.5	6.12	160.2	157.6
4.30	166.7	166.5	6.13	160.3	157.8
5. 1	166.1	165.6	6.16	160.1	157.0
5. 2	164.7	164.0	6.17	160.9	158.5
5. 5	165.2	164.7	6.18	160.8	158.3
5. 6	164.5	163.8	6.19	161.0	158.5
5. 7	164.0	163.0	6.20	160.8	158.5
5. 8	164.0	163.1	6.23	161.5	158.9
5. 9	163.6	162.5	6.24	161.5	159.1
5.12	163.1	161.8	6.25	162.1	159.9
5.13	162.9	161.7	6.26	161.4	159.0
5.14	163.2	161.5	6.27	161.4	158.9
5.15	163.7	162.0	6.30	161.5	159.0

주: 기준연도 2000년=100

자료: 農業部. “全國農產品批發價格指數－日度指數”(http://www.agri.gov.cn/xxfb)

15.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지수(일별), 2008.7~9

날짜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채람자”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날짜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채람자”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7. 1	162.1	159.0	8.14	161.1	159.0
7. 2	162.0	159.7	8.15	161.7	159.6
7. 3	162.5	160.0	8.18	153.6	159.6
7. 4	162.8	160.3	8.19	162.3	160.6
7. 7	163.4	161.0	8.20	163.1	161.5
7. 8	162.0	159.3	8.21	162.1	160.5
7. 9	161.9	159.2	8.22	162.4	160.7
7.10	161.7	158.9	8.25	161.5	159.7
7.11	161.9	159.1	8.26	164.9	160.8
7.14	161.8	159.1	8.27	163.9	160.8
7.15	163.0	160.5	8.28	164.2	160.3
7.16	162.9	160.4	8.29	164.3	160.3
7.17	162.1	159.5	9. 1	165.4	161.9
7.18	163.1	160.7	9. 2	163.7	162.4
7.21	163.8	161.5	9. 3	163.8	162.5
7.22	164.2	161.9	9. 4	156.3	163.0
7.23	163.5	161.1	9. 5	163.9	162.7
7.24	163.8	161.6	9. 8	162.1	160.5
7.25	163.7	161.4	9. 9	161.3	159.5
7.28	163.5	161.2	9.10	162.1	160.5
7.29	162.8	160.4	9.11	162.0	160.4
7.30	163.4	161.1	9.12	161.1	159.3
7.31	162.7	160.4	9.15	160.9	159.2
8. 1	163.4	161.1	9.16	161.2	159.4
8. 4	162.5	160.4	9.17	160.9	159.0
8. 5	162.7	160.7	9.18	159.1	157.0
8. 6	162.6	160.6	9.19	159.1	156.9
8. 7	162.8	160.9	9.22	158.9	156.7
8. 8	162.2	160.3	9.23	158.9	157.0
8.11	161.5	159.5	9.24	158.0	155.9
8.12	162.1	160.0	9.25	157.7	155.7
8.13	160.9	158.7	9.26	158.3	156.4

주: 기준연도 2000년=100

자료: 農業部. “全國農產品批發價格指數－日度指數”(http://www.agri.gov.cn/xxfb)

16.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지수(일별), 2008.10~2009.1

날짜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채람자”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날짜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채람자”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10. 6	157.8	155.9	11.27	147.1	144.1
10. 7	157.5	155.5	11.28	147.2	144.2
10. 8	156.4	154.3	12. 1	147.8	144.9
10. 9	156.8	154.8	12. 2	148.0	145.2
10.10	156.4	154.4	12. 3	148.4	145.5
10.13	156.1	153.9	12. 4	147.8	144.8
10.14	155.8	153.7	12. 5	148.5	145.8
10.15	154.3	152.0	12. 8	149.0	146.2
10.16	155.1	152.9	12. 9	149.0	146.0
10.17	154.7	152.4	12.10	149.7	146.8
10.20	153.6	151.0	12.11	149.3	146.4
10.21	153.5	151.0	12.12	149.8	146.7
10.22	152.6	150.0	12.15	150.5	147.6
10.23	151.5	148.6	12.16	150.7	147.9
10.24	151.3	148.4	12.17	149.9	146.9
10.27	150.3	147.5	12.18	150.5	147.6
10.28	150.5	147.7	12.19	150.5	147.7
10.29	149.3	146.3	12.22	151.6	149.0
10.30	150.3	147.6	12.23	152.0	149.6
10.31	149.1	146.2	12.24	152.1	149.6
11. 3	148.0	144.9	12.25	152.6	150.2
11. 4	147.9	144.7	12.30	152.9	150.6
11. 5	149.0	146.0	12.31	153.3	151.1
11. 6	147.6	144.4	1. 1	154.1	151.6
11. 7	148.3	145.3	1. 2	153.8	151.3
11.10	141.0	144.9	1. 5	154.2	151.6
11.11	148.2	145.1	1. 6	159.2	157.8
11.12	147.8	144.7	1. 7	155.3	152.9
11.13	147.8	144.8	1. 8	155.7	153.4
11.14	147.6	144.6	1. 9	156	153.8
11.17	147.8	144.7	1.12	157.5	155.6
11.18	148.1	145.2	1.13	158.3	156.6
11.19	148.2	145.2	1.14	159.10	157.60
11.20	148.2	145.4	1.15	159.90	158.60
11.21	147.7	144.7	1.16	159.40	158.60
11.24	146.9	143.8	1.17	159.80	159.00
11.25	147.4	144.3	1.18	160.80	160.20
11.26	147.3	144.3			

주: 기준연도 2000년=100

자료: 農業部. “全國農產品批發價格指數－日度指數”(http://www.agri.gov.cn/xxfb)

☐ 09-2008-04

중국농업동향(겨울호) 제1권 제4호/통권4호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9. 1. 30.

발 행 2009. 1. 30.

발행인 오세익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문원사

02-739-3911~5 E-mail: munwonsa@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